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2009. 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2009. 9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2008년은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추가 경정예산이 한차례 편성되는 등, 국가재정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 해입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2008년도 결산심사를 밀착 지원하고자 정부 결산과 관련된 쟁점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발간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중에서 결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 보고서 발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보고서 상의 153개 주제는 크게 ‘총량 분석’, ‘중점 분석’, ‘쟁점사업 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주제의 제목과 핵심내용을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첫째, ‘총량 분석’에서는 2008년도 재정 및 경제운용의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분석’에서는 범정부적 관점 및 핵심주제별로 사업을 분석하여 담았으며, ‘국회예산처·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 분석’, ‘기금 수익률 분석’,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 미흡사업 분석’ 등 23개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사업 분석’은 주요 개별사업들을 분석한 내용이며,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 집행결과 점검’,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예산의 연례적 과다·과소 편성’,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상의 문제점’, ‘국방분야 인건비 비중의 과다’ 등 128개 주제를 위원회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08년도 결산심사 시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심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제1부 총량 분석

- 1. 경제운용의 성과 3
- 2. 재정운용의 성과 4

제2부 증점 분석

- 1. 국회예산처·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9
- 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실태분석 14
- 3.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실태분석 20
-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25
- 5. 경상경비·사업비 예산절감 및 활용 실태분석 30
- 6.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분석 35
- 7.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40
- 8.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흡사업 분석 43
- 9. 결산 성과정보 분석 47
- 10.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49
- 11. 기금 수익률 분석 50
- 12.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분석 54
- 13.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55
- 1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57
- 15. 재정용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60
- 16.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62
-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분석 64
- 18. 특별교부세 지역별 자원배분 내역 분석 70
- 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석 74

20.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분석	78
21. 유가환급금 분석	83
22. 공기업 외화부채 분석	85
23. 공기업 지분증권 분석	86

제3부 쟁점사업 분석

기획재정 / 89

1. 정책연구 용역 관리 강화 필요	91
2. 정부출자기관의 배당률 상향조정 등 이익잉여금 관리 필요	92
3.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	94
4.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의 부채 조기 상환 검토 필요	95
5. 관세청 가산금 수납액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96
6. 원자재 비축사업의 적정재고 부족	97

지식경제 / 99

1.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괄 전용 및 기술료 활용 부적절	101
2. 수출보험기금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계약체결한도 설정 필요	102
3. 전력산업기반기금 842억원 자산운용 손실과 자산운용지침 위반	103
4.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104
5. 부적정한 예산 전용을 통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의 신규 추진	105
6. 신용보증기관 예산 절감 계획의 미래보증 수요 예측 미비	106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에너지원별 투자 비중 부적절	107
8.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 집행결과 점검	108
9.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110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111

국토해양 / 113

1.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용·조정에 의한 사업 변경 115
2.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부진 117
3.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119
4.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부진 121
5. 광양항 3단계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부진 123
6.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부적절한 전용 124
7.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126
8.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실집행실적 저조 128
9.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129
10.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전용 130
11.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용자실적 부진 131
12.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의 사업비 추계 부정확 132
13.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있어 안정적인 자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133
14.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연 대책 마련 필요 134

농림수산식품 / 135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경편성의 부적절 137
2.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138
3. 농촌활력증진사업 실행계획 부실로 인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139
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성과 저조 140
5. 정책자금·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 손실보전료의 법적근거 없는 정부출연 141
6.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과제 유사중복 문제 142
7. 국가어항개발사업에 있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143

교육과학기술 / 145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정산과정 및 집행문제 147
2. 유아교육비 기준재정수요액 과다추계 및 불투명한 산정과정 149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변경과 집행부진 150
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비효율적인 사업비 운영 153
5.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 제고 필요 154

6.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의 운영비 집행비중 과다 등	156
7. 출연연구기관의 임의적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발생 문제	157
8. 생명공학육성 관련 예산의 투입위주 관리 부적절	158
9. 양성자가속기 구축 사업의 지방비 분담 과다	159
10.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예결산 내역의 국회 보고 필요	16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61

1. 국회에서 삭감된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의 전용을 통한 증액	163
2. U-AT 통섭 사업의 추진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실관리 우려	164
3. 체육진흥투표권 등 공익사업 적립금의 운용 부적절	165
4. 영화 관련 유통지원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미집행	168
5.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의 기금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등	169
6.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171
7. 고건축물보수정비 사업의 예산 목적외 사용 및 과다한 이월	172

보건복지가족 /173

1.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예산 연례적 과다·과소 편성	175
2.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부진	177
3.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결여	180
4. 도우미 사업예산의 수요예측 부정확 및 예비비 배정 이후 지원조건 강화	183
5.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일반회계사업과 차별성 미흡	184
6.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 취약	185
7. 노인장기요양 비용의 지방 부담 가중	188
8.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의 초과지출	189
9. 국민연금 기금운용 감독소홀, 부적절한 사업선정, 일부급여비 불용 과다	190
10. 체계적인 보건의료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필요	193
11. 공무원연금기금 국고보전금 과소계상 및 금융부문 운용수익률 저조	194
12.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	196
13. 의약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필요	199

환경노동 /201

1. 환경 예산의 구조적·재정적 불안정성 문제 203
2. 지방상수도사업 운용체계의 비효율성 206
3. 하수도사업 추진방식의 비효율성 208
4. 비점오염원 관리 부실 210
5. 폐기물관리사업 추진기반 정비부실 212
6. 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방식의 비체계성 214
7.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상의 문제점 216
8. 고용보험기금 사업 수행체계 정비 미흡 219
9. 직업방송 송출사업의 성과 저조 등 221
10. 고용보험기금 사업 부정수급 문제 223
11. 산재보험기금 재정 불안정 및 사업성과 저조 225
12.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의 성과 미흡 227
13. 근로자장학사업의 이중수혜자 발생 문제 228
14.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관리 체계화 필요 229

여성 /231

1.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구축사업의 제반문제 233
2.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관련사업의 비효율성 235
3.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지원장치 미흡 237
4.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타당성 미흡 238

국방 /241

1. 국방중기예산계획의 연례적인 과다편성에 따른 국방예산의 비정상적 운용 243
2. 군수정보체계사업의 200억원 예산낭비 245
3. 국방연구개발비의 축소와 정책후퇴 246
4. 국방분야 인건비 비중의 과다 247
5. 장교증원의 타당성 미흡 248
6.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산관리체계 부실 249
7. 국방 취업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 250
8.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의 연례적 부족 251
9. 시뮬레이터사업의 중소방산업체 차별 252

10.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중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별회계 포함 필요	253
--	-----

외교통상통일 /255

1. 외교통상부 수입대체경비 과소계상 및 목적 외 사용	257
2.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사업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집행부진	258
3. 국제교류기금의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	259
4. 외교통상부 사업의 국제교류기금 이관 부적정	260
5.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261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사용	262
7. 한글·한국어 보급 관련 사업의 분산 추진 및 지원 미흡	263

정무 /267

1. 국무총리실 예비비 과다 배정	269
2. 고충관련 사업 예산 증가 불구 민원처리 부진	270
3. 전직지원금 지급사업 예산액 과다 계상	271
4.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사업, 보훈중앙병원건립사업 집행 부적정	272
5.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필요	273
6. 신용보증 관련 기금결산 분석	274
7.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의 법령영문화사업 일원화필요	276
8. 금리우대 보증자리론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유사중복	277
9.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과다	278
10.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저조	279

법제사법 /281

1. 기초지자체 중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과다	283
2. 검사보수의 연례적인 소급적용 문제	285
3.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287
4. 법조윤리협의회 심사결과 반영 미흡	289

행정안전 /291

1. 소방인력 확충 미흡	293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점검 미흡	295
3.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 사업의 추진 부적정	296
4. 경찰청 연구개발비 집행부진	297
5.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의 문제점	299
6. 빈집털이 방지 시스템 집행 부적정	300
7.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301
8.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 실집행실적 부진	303
9. 항공마일리지 사용 미흡	304
1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	305
11. U-Korea 선도사업의 유사사업간 중복투자 방지대책 마련 필요	306
12.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사업실적 제고 필요	307

제 1 부

총량 분석

1 경제운용의 성과

□ 2008년도 경제운용의 성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유가 및 곡물가 등의 급등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경제성장 : 당초 목표치 6%, 2007년 실적치 5.1%보다 낮은 2.2% 성장
- 고용여건 악화 : 낮은 실업률(3.2%)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2008년 말 감소 추세로 전환
- 소비자 물가 :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4.7%
 - 생활물가지수는 5.2%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보다 높게 나타남
- 경상수지 : 64억불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로 전환

〈2008년 경제운용목표 및 실적〉

	2007년 실적	2008년 계획	2008년 실적
■ 경제 성장률	5.1%	6.0% 내외	2.2%
■ 취업자 증가	28만명	35만명 내외	14.5만명
■ 소비자 물가	2.5%	3.3% 내외	4.7%
■ 경상 수지	60억불	-70억불 내외	-64억불

자료: 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 3, 한국은행

□ 소득양극화 심화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 전국가구의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38, 2007년 0.344, 2008년 0.348로 계속 증가하여 소득 격차의 심화가 여전히 지속
- 그러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정책이 다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의 개선율이 9%로 OECD 평균(26.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서민층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됨
 -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7쪽

[담당] 정상훈 경제분석관(788-4652)

② 재정운용의 성과

- 통합재정수입은 2008년 250.7조원으로 2007년 대비 2.9% 증가에 그침
 - 조세부담률은 20.8%로 전년대비 감소, 국민부담률은 26.6%로 소폭 상승
 - 실질적인 국민부담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산정시 부담금 징수액(15.3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부담금 반영시 2008년 국민부담률 28.1%)

-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한 조세지출 및 정비 방안
 - 2008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가한 총 29조 6,321억원이며, 국세감면율[국세감면총액/(국세감면총액+국세수입총액)]은 15.1%에 달함
 - 이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인 13.2%를 크게 초과하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 (13.7%,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값 이하)도 초과
 - 조세지출에 대한 정비는 계층간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2008년 조세지출 총액의 70.1%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

- 2008년도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는 전년 대비 13.8% 증가
 - 2007년 증가율인 1.9%와 참여정부 5년 동안(2003~2007)의 연평균 증가율 9.2%보다 높은 수준

- 재정수지의 악화
 - 2008년 재정수지는 유가환급금 지급 및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33.8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11.9조원 흑자
 - 관리대상수지는 전년도 흑자(3.6조원)에서 15.6조원 적자로 전환

- 국가채무는 2008년 안정추세에서 2009년 확대추세로 전환
 - 2008년 국가채무는 308.3조원(GDP 대비 30.1%)으로, 2007년 298.9조원(GDP 대비 30.7%)에 비해 9.4조원 증가
 -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57.7조원 증가한 366.0조원으로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9년 35.6%로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

-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수지관리 목표 및 구체적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 필요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07년	2008년		증감액		2009년
	결산(A)	예산(B)	결산(C)	07년결산 대비(C-A)	08년예산 대비(C-B)	예산
통합재정수입 (GDP 대비)	243.6 (25.0)	247.2 (24.1)	250.7 (24.5)	7.1 (-0.5)	3.5 (0.3)	252.7 (24.6)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GDP 대비)	209.8 (21.5)	230.2 (22.5)	238.8 (23.3)	29.0 (1.8)	8.6 (0.8)	274.7 (26.7)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3.8 (3.5)	17.0 (1.7)	11.9 (1.2)	-21.9 (-2.3)	-5.1 (-0.5)	-22.0 (-2.1)
관리대상 재정수지 (GDP 대비)	3.6 (0.4)	-11.0 (-1.1)	-15.6 (-1.5)	-19.2 (-1.9)	-4.6 (-0.4)	-51.0 (-5.0)
국가채무 (GDP 대비)	298.9 (30.7)	317.1 (32.7)	308.3 (30.1)	9.4 (-0.6)	-8.8 (-2.6)	366.0 (35.6)

주: 2008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며, 2009년 예산은 추경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54쪽

[담당] 정상훈 경제분석관(788-4652)

제 2 부

중점 분석

1 국회예산처·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 분석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정부 결산에 대해 '연례적 집행부진', '연도말(11~12월) 전용감액', '목적 외 사용', '2008년도 예산절감사업', '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최근 3년간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 사업' 등 7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복 지적사업을 분석하였음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 총 155개 사업 3조 1,694억원
- 연도말(11~12월) 전용감액 사업 : 총 763개 사업, 전용감액 4,336억원
- 목적 외 사용 사업 : 총 36개 사업, 2,206억원
- 2008년도 예산절감 사업 : 절감대상 예산액 138조 5,431억원 절감액 2조 5,568억원(절감률 1.84%)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 총 39개 사업, 2조 1,658억원
- 최근 3년간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총 125개 사업, 51조 5,484억원
- 2007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반영 미흡 사업 : 총 66개 사업, 38조 3,146억원

□ 상기 지적사업들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복 지적사업들은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문제 사업

□ 3가지 이상 중복 지적사업 : 10개 부처 14개 사업(31조 3,838억원)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예산액 30조 6,387억 8,300만원이 전액 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1억 2,500만원을 교과부 장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부당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 총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 특별교부금의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상임위·예결위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선정산분(보통교부금분)을 주요 국정과제 추진 용도로 교부하는 등 재원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이 계속됨
- 환경부의 '수도권대기개선대책사업'은 2008년 예산액 2,379억 2,200만원 중 2,182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1억 7,900만원을 불용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은 '08년 예산 수립시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 능력 및 기술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차 출시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특히, 전기이륜차 공급사업은 연례적으로 계획대비 실적 미달(30.7%)
- 수도권 지자체의 실적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교부액 710억 4,400만원 중 69.6%인 495억 1,200만원만 집행
- 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사업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음
-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08년 예산액 1,449억 6,500만원 중 12억원을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비로 전용하고, 1,437억 6,500만원을 집행
 - 출연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년 출연 : 1,437억원)의 연례적인 실적행실적 부진(2006 : 80.5%, 2007 : 78.9%, 2008 : 69.2%)
 - 공급 측면에서의 전자정부사업 진척도에 비해 수요 측면에서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체 민원 중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은 약 24%에 그치고 있는 등 실제 활용실적이 미흡
 - 예산절감 대상 사업에 선정, 72억원 절감 후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신규, 60억원) 등에 사용

〈3가지 이상 중복 지적 사업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지적사항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교과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0,638,783	30,754,78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2007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미흡
	대학구조 개혁지원	50,000	49,879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2007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미흡
환경부	수도권대기 개선대책	237,922	218,282	- 절감대상사업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에코시티 모델시범 사업	2,400	515	- 연례적 집행부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경찰청	교통안전 활동	168,807	165,782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범죄수사 활동	10,415	9,278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사업 추진 - 절감대상 사업
행안부	전자정부 사업지원	144,965	143,765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방사청	홍상어	39,429	2	- 연례적 집행부진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부처명	사업명	2008		지적사항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복지부	장애인생활 시설 기능보강	27,750	7,236	- 연례적 집행부진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2007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미흡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18,851	7,150	- 연례적 집행부진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국가 보훈처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	17,048	9,224	- 연례적 집행부진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수업료 등 국비 보전	7,997	3,332	- 연례적 집행부진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외통부	외교활동비	13,551	16,380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 2007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미흡
해경청	광역위성 통신망구축	6,009	3,163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2가지 이상 중복 지적사업(3가지 이상 중복 지적사업 제외) : 26개 부처 88개 사업(2조 7,718억원)

-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1,650억원을 전액 집행
 -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핵심적 내용인 대학단위 지원방식을 과제별 지원방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목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2008년말 기준 실집행액이 예산액 1,650억원의 69%인 1,135억원에 불과
-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 예산액 1,224억원을 전액 집행
 - 최근 4년간(2005~2008) 지자체 실집행률 평균은 57.5%
 -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이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액 과다
-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 전산센터 운영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1,609억 8,300만원 중 1,469억 9,900만원 집행, 110억 8,400만원 이월, 29억원 불용
 - 절감대상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등 136억 5,100만원을 절감
 - 낙찰차액 95억 6,400만원을 전용하여 서버자원통합구축 사업(예산현액 169억 4,800만원)을 추진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대규모 이월액(110억원) 발생
- 환경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1,289억 9,000만원 중 80억원을 전용하고, 1,209억 9,000만원 집행

- 절감대상 사업으로 80억원을 전용,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에 사용
- 공단폐수처리시설의 폐수유입률(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는 전체 136개소 중 64%인 84개소
- 당초 기본계획이 미승인된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사례 발생

<2가지 이상 중복 지적사업 중 예산액 100억원 이상 사업 사례 : 32개 사업 1조 9,566억원>

부처명	사업명	2008		지적사항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경찰청	피복관리	41,090	38,695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관서신설	34,807	29,746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관서증개축	86,795	97,542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교과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165,000	163,024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관세청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16,505	14,359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절감대상 사업
	조사감시장 비현대화	22,552	22,016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절감대상 사업
국방부	의무시설개선	29,301	16,920	- 연례적 집행부진
	수송활동	67,811	65,497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21,800	16,899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환경시설 개선 및 운영	83,318	76,235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연합토지 관리계획	241,490	145,410	- 연례적 집행부진 - 절감대상 사업
	사유지정리	25,377	16,368	- 연례적 집행부진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국토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122,436	122,436	- 연례적 집행부진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전세임대 경상보조	20,523	8,814	- 연례적 집행부진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139,772	132,298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43,553	36,690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농식품부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42,007	41,491	- 연례적 집행부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부처명	사업명	2008		지적사항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문화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0,460	28,460	- 연례적 집행부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문화관광 자원개발	109,818	103,968	- 연례적 집행부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생태녹색 관광개발	18,831	18,156	- 연례적 집행부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신문유통원 지원	23,020	20,700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문화콘텐츠 진흥원 보조	50,225	45,100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방사청	울산급 BATCH-I	24,923	14,605	- 연례적 집행부진 - 연도말 전용감 발생
	발칸전환 배치	14,992	8,301	- 연례적 집행부진 - 연도말 전용감 발생
복지부	노인생활 시설 기능보강	67,359	24,020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복지부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 설치·지원	24,500	7,000	- 연례적 집행부진 - 절감대상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8,055	32,949	- 연도말 전용감 발생 - 절감대상 사업
여성부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152	13,031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 절감대상 사업
행안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31,143	30,218	- 절감대상 사업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정부통합 전산센터 운영	160,983	146,983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지방행정 정보화	16,100	16,032	- 절감대상 사업 - 연도말 전용감 발생
환경부	공단폐수처 리시설설치	128,990	120,990	- 절감대상 사업 -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업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②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실태분석

• 결산 현황

- 2008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155개 사업이며, 동 사업들의 총예산 3조 1,694억원 중 62.4%인 1조 9,768억원이 집행됨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2008년 예산 혹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2005~2008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함
 - 집행부진 사유로는 사전사업계획미비(51개), 관계부처 간 협의지연(24개), 주민갈등(19개), 용역발주지연(17개) 등이 있음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2008년 결산현황 및 부진사유〉

(단위: 개, 억원, %)

구분	직접사업		보조사업		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실적 저조	예산액대비 집행실적 저조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저조	국고 교부실적 저조		
집행실적부진사업 수	94	13	44	4	155	
총예산액(A)	18,996	306	12,327	54	31,694	
총집행액(B)	10,017	140	9,594	5	19,768	
집행률(B/A)	52.7	45.7	77.8	8.6	62.4	
부 진 사 유	사전사업계획 미비	32	8	10	1	51
	관리감독 불철저	3	-	2	-	5
	주민갈등	5	1	13	-	19
	지방비 부족 및 높은 자부담	-	-	1	-	1
	관계부처 간 협의지연	9	1	13	1	24
	용역발주지연	15	-	2	-	17
	대외협력지연	5	-	-	2	7
	기타	25	3	3	-	31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주요 쟁점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 사업 중 2009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감액된 사업은 58.1%인 90개 사업이며, 전년과 동일 혹은 증액 편성된 사업은 41.9%인 65개 사업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09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직접사업		보조사업		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실적저조	예산액대비 집행실적저조	보조사업자 집행실적저조	국고 교부실적저조	
집행실적부진 사업	94(100.0)	13(100.0)	44(100.0)	4(100.0)	155(100.0)
2009년 예산이 감액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업	53(56.4)	8(61.5)	27(61.4)	2(50.0)	90(58.1)
전년과 동일 혹은 증액 편성된 사업	41(43.6)	5(38.5)	17(38.6)	2(50.0)	65(41.9)

주: ()안의 수치는 집행실적부진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2009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36개 사업이며, 2009년 총 예산액은 2조 7,366억원으로 2009년 7월말 현재 63.5%인 1조 7,369억원을 집행함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09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직접사업	보조사업	계
사업수	85	51	136
총 예산액	13,373	13,993	27,366
집행액	6,927	10,442	17,369
집행률	51.1	75.3	63.5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직접사업의 집행률〉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 평균 집행률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	2009.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법무부	서울동부지검	0.0	5,000	500	0.0
	창원지검진주지청	0.0	500	500	0.0
국가 보훈처	수업료 등 국비보전	49.5	7,997	3,384	52.8
공정 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59.5	600	447	49.2
	카르텔 유발 환경개선	63.1	50	128	82.8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60.8	209	220	59.1
기획 재정부	WCO분담금	62.1	294	371	69.2
	국가회계제도 운영	46.9	300	600	25.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30.5	5,000	25,937	0.0
	경제협력기구활동	45.9	204	35	68.6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58.9	497	273	34.6
국세청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59.7	2,520	370	24.9
	공부징취비	43.2	684	250	22.8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 평균 집행률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	2009.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토지 및 주택조사 지원	59.1	460	260	25.0
	부산지방국세청	32.6	15,400	4,900	44.8
조달청	공무원가관리 시스템 운영	67.8	470	1,400	40.9
	부산비축기지 이전	59.5	339	4,376	7.8
통계청	경제센서스	42.3	277	59	79.7
통일부	남북회담행사	33.3	2050	1,500	9.6
국방부	의무시설개선	69.2	29,310	15,346	49.5
	연합방위력증강	44.5	40,730	26,113	12.2
	군수 지원	61.8	96,670	165,600	41.5
	시설부지 지원	39.8	21,800	24,881	21.9
	병영문화개선	51.5	18,851	8,184	68.6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	52.8	241,490	22,653	7.3
	예수금이자상환	55.8	21,363	21,962	29.5
	훈련장사업	50.7	21,363	3,436	42.2
	도하시추대대 이전사업	25.4	25,300	45,219	29.6
	무건리훈련장	52.2	96,006	75,305	15.1
	사유재산정리	38.2	25,377	30,793	19.9
	복지시설확보사업	48.6	31,041	34,143	32.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사업	35.7	23,584	29,398	4.9
	교육 지원	68.4	1,381	1,257	39.1
방위 사업청	제주해군기지	33.2	17,400	36,011	18.6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64.9	4,582	432	0.4
	활주로재 포장	54.6	15,779	10,104	80.6
	북부전투사령부	6.9	5,713	11,121	68.2
	전자전훈련장비(공군)	0.3	10,064	27,169	37.7
	발칸전환배치	53.9	14,992	2,777	70.1
	홍상어	0.0	39,429	17,466	0.0
	방위산업 이차보전	30.6	3,053	4,320	29.0
행정 안전부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67.4	842	750	35.0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강화	66.7	918	1,136	52.0
경찰청	운전면허시설취득	40.3	1,700	916	75.1
소방 방재청	지역별안전도 진단	67.5	150	150	29.9
교육과학 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이전신축사업	38.7	5,330	8,472	36.5
문화 체육 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59.1	75,000	30,000	5.1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16.7	2,140	5,000	16.6
	유통환경개선용자	21.4	6,000	4,000	49.0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8.4	2,500	3,000	50.0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 평균 집행률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	2009.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16.2	3,000	4,000	0.0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건립	6.6	3,833	4,000	61.1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2.7	5,000	5,000	16.4
	경정훈련원 건립	16.8	4,406	5,448	24.3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12.3	10,048	8,314	22.7
문화 재청	문화재수리기준제청	50.0	427	720	43.0
농림 수산 식품부	부정축산물단속	59.0	68	48	40.5
	생산이력제 도입	59.1	1,300	1,800	63.0
	수입양곡대	58.1	161,113	362,334	41.0
	노후원양어선대체 지원	48.8	2,400	4,000	60.0
산림청	사방사업	66.1	16,293	31,401	66.3
	산림재해복구 지원(융자금)	28.5	2,681	1,800	4.1
	산림재해복구 지원(보상비 등)	58.0	3,359	3,200	0.0
특허청	특허소송 수행사업	60.9	245	178	78.7
보건 복지 가족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	25.6	59,895	102,049	29.6
	국립재활원병상 확충사업	3.7	13,832	17,664	19.9
	우수한약육성 지원	62.1	810	460	42.1
환경부	에코시티모델 시범사업	40.1	2,400	930	25.1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69.5	700	1,026	44.6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69.2	10,000	3,456	45.5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47.4	2,156	1,490	81.5
	종합직업체험관신축	67.4	13,518	11,513	13.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55.7	2,772	1,118	79.5
	민간취업기관 지원	59.1	7,328	12,075	53.1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59.7	4,430	3,800	39.6
	신용보증대위변제	56.8	9,824	17,782	21.4
국토 해양부	보령신항	0.0	1,000	2,000	0.0
	용산공원 조성사업	61.8	1,708	1,875	6.5
	종합물류정보망	20.8	1,362	1,580	36.1
	물류기업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64.5	2,315	2,000	27.9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 조성	31.5	2,000	1,000	20.3
	인천남항건설	40.9	2,390	9,150	76.1
	주거환경개선(기금)	67.3	10,000	10,000	14.0
	오염해역 준설사업	39.8	-	4,600	0.0
해양 경찰청	방제정건조	66.7	3,905	3,983	20.0

주: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2009년 7월말 현재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보조사업의 실적행률〉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	2009.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국가 보훈처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	33.3	6,680	2,646	53.3
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25.2	29,700	29,700	19.6
문화 체육 관광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67.8	4,000	4,000	50.5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42.3	3,000	5,000	12.0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8.8	4,109	4,298	5.6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1.8	11,540	15,522	16.5
	윤이상음악당건립-경남(통영)	2.7	1,200	2,000	0.0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지원	63.4	2,217	2,337	8.2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사업	49.4	28,460	34,195	42.0
	문화관광자원개발	57.2	119,274	154,857	29.6
	생태녹색관광개발	50.3	18,831	28,190	37.1
	남해안 관광벨트	51.2	16,370	16,459	34.4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	60.0	23,741	27,260	53.0
	가고 싶은 섬	7.6	7,650	4,000	18.7
	관광지개발(제주)	27.5	2,650	1,867	15.4
	생활체육공원 조성	57.8	14,034	10,553	45.5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53.4	2,910	1,505	20.3
	남북체육교류	30.2	-	1,000	0.0
	육상진흥센터 지원(대구시)	67.0	2,000	9000	0.0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 조성	51.2	357	600	85.6
방송통신 위원회	쌍무간방송협력협정 이행사업	65.6	1,099	1,993	98.0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14.9	2,089	950	79.3
문화 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66.2	190,029	211,026	54.7
	유교문화관광자원화	45.8	7,206	5,213	50.6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34.1	2,910	5,705	69.5
	지역문화유산개발	61.6	13,372	11,760	66.5
	무형문화재전수 지원사업	50.2	6,360	7,330	36.0
농림 수산 식품부	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사업	7.5	3,000	10,000	7.6
	유통협약, 명령제 지원	53.1	7,642	5,349	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49.9	533,043	67,647	0.0
	농작물재해보험금	0.6	23,000	23,000	0.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66.5	585,000	1,835	60.7
	친환경양식기반구축	57.7	2,200	1,900	32.5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56.5	3,000	2,700	0.0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63.7	354,509	129,800	69.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52.5	22,850	25,550	65.0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8 예산액	2009 예산액	2009.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어업자원서식지조사	66	19,689	54,559	64.4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	35.2	9,120	15,440	33.6
지식 경제부	갈사만진입도로3호선(경남)	20.6	8,150	2,000	49.1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경남)	33.5	8,000	17,000	89.1
	기타기반시설 지원	48.5	47,265	106,635	86.3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전주시)	35.8	1,500	900	44.4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구미시)	29.4	1,790	2,090	93.5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익산시)	7.5	1,000	1,500	54.3
중소 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제주 포함)	53.2	196,766	174,914	50.9
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53.5	1,346	2,000	0.0
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	49.3	5,600	6,673	95.5
국토 해양부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40.6	20,523	32,121	100.0
	국지도 내각-오남(경기도)	55.7	14,765	4,101	67.1
	혼잡도로 유등천좌안도로 (대전광역시)	15.2	10,000	2,500	41.8
	주거환경개선사업	57.2	10,000	110,256	66.1

주: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2009년 예산이 편성된 136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61개 사업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미만으로 저조함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09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직접사업	보조사업	계
사업수	43	18	61
총 예산액	6,088	3,418	9,506
집행액	1,650	551	2,201
집행률	27.1	16.1	23.2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7, 97쪽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③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실태분석

• 예산의 연도말 전용감액 현황

- 정부 47개 부처 일반회계의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액을 조사한 결과, 연도말 전용감 총액: 4,336억원(38개 부처, 763개 사업합계)
 - 8개 부처 연도말 전용감 없음
 - 국토해양부 자료 미제출(2008년도 전용감 총액 7,690억원)

〈38개 정부부처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전용감액	부처명	전용감액	부처명	전용감액
감사원	445	농수산식품부	654	외교통상부	6,855
경찰청	28,466	농촌진흥청	3,307	조달청	357
공정거래위원회	398	문화재청	354	중소기업청	5,897
관세청	1,194	민주평통	3	지식경제부	14,028
교육과학기술부	134,626	방송통신위원회	175	진실위	55
국가보훈처	19,603	방위사업청	99,526	통계청	1,257
국가인권위원회	82	법무부	2,846	해양경찰청	3,753
국민권익위원회	1,323	법제처	63	행정안전부	2,836
국방부	69,755	병무청	591	헌법재판소	80
국세청	2,029	보건복지가족부	18,694	통일부	657
금융위원회	511	소방방재청	289	노동부	3,248
기상청	2,379	식약청	1,459	문화체육 관광부	3,189
기획재정부	2,045	여성부	531	총 합계	433,560

- 연도말 전용감액은 예산을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쓰지 아니하고 연도말(11-12월)에 타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것을 의미함
- 연도말 전용감액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위이므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각 부처별 연도말 전용감액을 고려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조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할 필요가 있음

•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정부부처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1,346억원, 87%), 방위사업청(995억원, 73%), 국방부(698억원, 81%), 경찰청(285억원, 44%) 4개 부처는 ① 연도말 전용감액 ② 연도말 전용감액의 비율 ③ 전용감액의 규모 3가지 모두가 상당히 크므로, 이들 부처들에 대한 특별한 예산관리가 필요함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부처 현황>

(단위: 백만원, %)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경찰청
전용감액	154,231	135,926	86,692	64,957
연도말 전용감액	134,626	99,526	69,755	28,466
비율	87.3	73.2	80.5	43.8

- 국토해양부는 미제출의 고의성이 강하고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연도말 전용감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함
- 방위사업청의 경우 상당액의 연도말 전용감액이 ‘환차손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음

• 10억원 이상 연도말 전용감액 발생 사업

- 10억원 이상 연도말 전용감액 사업: 55개 사업(13개 부처, 합계 3,722억원)
 - 국방부 15개, 방위사업청 9개, 경찰청 6개, 지식경제부 6개, 국가보훈처 5개, 교육과학기술부 4개, 보건복지가족부 4개, 기상청 1개, 중소기업청 1개, 해양경찰청 1개, 행정안전부 1개, 노동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 전용감액 과다 5대 사업
 - ① 세계수준의 선도대학육성 985억원(교육과학기술부), ② T-50/TA-50양산 625억원(방위사업청), ③ 일반대학 인건비 275억원(교육과학기술부), ④ 인건비 223억원(국방부), ⑤ 보훈중앙병원건립 102억원(국가보훈처)

<2008년도 연도말 전용감액 1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연도말 전용감액	연도말 전용감액 사유
경찰청	지방경찰청 인건비	2,142	기타직 보수 부족분 총당
	지방경찰청 인건비	4,049	직급보조비 부족분 총당
	경기청제2청사 신축	2,000	하남서 토지매입비 지원을 위해 전용
	관서 신설	5,105	'08년 예산 절감 및 활용계획과 관련 각 사업별 일정액 절감액을 지방청 지구대 증·개축 비용에 사용
	관서개 보수	2,248	관서별 일정액 절감액을 경찰종합학교 물가인상분 지원
	지방경찰청 인건비	11,331	직급보조비 부족분 총당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대학 인건비	2,639	국립대 강사료 부족 총당
	일반대학 인건비	27,458	국립대 강사료 부족 총당
	산업대학 인건비	4,876	국립대 강사료 부족 총당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민간경상)	98,470	사업계획 변경(수시배정 승인 보조금→출연금)
국가보훈처	6.25자녀수당	1,101	보훈급여금내 보상금간 예산조정
	참전명예수당	2,297	"
	재해보상금	1,241	"
	사립대수업료등 보조	2,614	등록금 인상분 차액 및 취학자녀 감소액 등을 국가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에 사용
	보훈중앙병원건립	10,195	시설철거 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정지연에 따른 잔여예산을 위탁지료 보상금 부족분 에 총당
국방부	의무시설개선	6,723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족분 총당
	장병여비 지원	4,208	- 위탁진료비, 부족분 총당 299억원 - 의약품 및 의료기재 추가소요 지원 786억원 -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족분 총당 3,123억원
	병참물자	1,111	환차손 보존
	난방연료	4,031	상용차량(버스) 구매 부족소요 총당
	장비연료	5,566	"
	수송활동	1,967	환차손 보존
	육군병영생활관	1,819	군관사 개선(절감활용)
	해공군/국직병영생활관	1,268	"
	GOP소초병영생활관	1,387	"
	군관사및아파트	2,496	"
	일반지원시설	3,232	- 군관사 개선(절감활용) 1,908억원 - 협소 병영생활관 개선(절감활용) 1,324억원
	인건비	22,302	방위비분담금 동일사업내 항목별 금액 조정
	시설유지관리	3,272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 2,755억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연도말 전용감액	연도말 전용감액 사유
	공공요금	2,299	- 공공요금부족분 총당 517억원 - 공공요금부족분 총당 1,973억원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326억원
	병영문화개선	1,004	국가패소판결금
기상청	본부인건비	1,399	결원을 미달운영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을 지방청 시설 및 기타 비용 총당
방위 사업청	검독수리-A급	7,961	장보고-II사업 환차손 보전 (장보고-II사업 환차손 380억원)
	전투근무지원정	1,000	장보고-II사업 환차손 보전
	장보고-II급	2,807	장보고-II사업 환차손 보전(사업내 목 전용)
	T-50/TA-50 양산	62,530	- 차기전투기 2차 사업 환차손 63억원 (차기전투기 2차 사업 환차손 147억원) -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사업 환차손 보전 29억원 - 항공승무원아간투시경 사업 환차손 보전 20억원 - F-15K전투기 사업 환차손 보전 485억원 (F-15K전투기 사업 환차손 491억원) - F-15K전투기 사업 시설공사 물가상승 보 전(법정 경비) 28억원
	천마대대창설	2,148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환차손 보전 (차기유도무기사업 환차손 102억원)
	휴대용지대공 유도무기(신공)	2,162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환차손 보전
	발칸전환배치	1,071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환차손 보전
	홍상어	7,548	-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환차손 보전 5억원 - GPS유도폭탄 사업 환차손 보전 55억원 - 지하시설파괴탄 사업 환차손 보전 15억원
	국과연 연구개발	5,094	MS-SAR 사업 환차손 보전
보건 복지 가족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자치단체 경상보조	4,149	예산 절감액을 기초노령연금예산 부족분에 총당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	1,235	예산소요 과대 추정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을 교재교구비(348백만원) 및 차량운영비(887백 만원)로 전용
	차등보육료지원	7,124	- 지원대상 아동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 (계획 월 62만명 → 월별 평균지원 57만명) -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 함에 따라 부족한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전용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3,170	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급 여자치단체경상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중소 기업청	신용보증기관 출연	5,000	정부 예산절감지침에 따른 절감재원을 매출 채권보험계정에 출연
지식 경제부	KINTEX 2단계 건립	1,500	지자체(경기도, 고양시)에서 일부 부담의사 를 밝혀 발생한 예산잔액을 KOTRA KBC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연도말 전용감액	연도말 전용감액 사유
			구축재원에 총당 (절감활용)
	무역조정지원	1,300	한·미 FTA비준 지연으로 수요 미발생액에 따른 예산잔액을 KOTRA KBC구축재원에 총당 (절감활용)
	갈사만 3호선 도로	1,500	환경영향평가 실시('06.7~'07.7월) 공사중단,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연약지반 처리 장기간 소요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을 의곡·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사업 보상비 부족분에 총당(절감활용)
	소사·녹산간 도로	1,200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을 의곡·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사업 보상비 부족분에 총당(절감활용)
	송도 해안도로 확장	3,500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일시 작업 중지, 행정소송, 현장 작업여건 악화, 시공사 자금 압박에 따른 작업 부진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을 의곡·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사업 보상비 부족분에 총당(절감활용)
	동해자유무역지역 개발	2,364	철근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을 동해자유무역지역개발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총당(전용)
해양 경찰청	광역위성통신망 구축	2,600	대체건조함정(11척) 구축 계획변경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을 항공기도입사업 및 불법조업어선 단속용 진압안전장비 비용에 사용
행정 안전부	전자정부사업 지원	1,200	절감재원을 행정전화망 구축사업비에 총당
노동부	직업상담원 인건비	1,120	직업상담원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연금지급금 부족분 총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070	예산절감액을 예술인 공방거리조성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비 부족분에 총당
	합계		372,2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7, 196쪽

[담당] 문종열 예산분석관(788-4639)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 결산현황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2008년도 결산 분석 결과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유형의 목적 외 사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20개 부처 36개 사업 총 2,206억 4,700만원)

• 주요 쟁점

□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 신규사업의 예산을 국회의 심의없이 연도 중에 행정부가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낭비 발생 우려
 - 경찰청은 지방청수사활동 등으로부터 159억 9,2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상 계획에 없던 실종사건전담수사팀 운영을 추진하였음
 - 노동부는 전용 및 조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를 59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였으나, 계좌발급이 2008년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10억원만 집행
 - 중소기업청은 42억 8,200만원을 전용하여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9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3.9%에 불과

〈이·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경찰청	범죄수사활동 등	-	15,992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실종사건전담수사팀 운영을 신규로 추진
	지방청 경무 활동 지원 등	-	2,407	- 예산상 계획에 없던 화성서부서 임시개서를 추진
	경비경찰활동	21,619	58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경비부대 숙소 등 임차료를 집행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2,673	222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동해선 출입사무소 옥외 화장실을 설치
해양 경찰청	항공운영	2,493	161	- 예산상 계획에 없던 항공기 위치 식별장치를 도입
	파·출장소 신축 및 관서 보수	1,782	3,50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방제비축기지 신축을 추진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문화 재청	건조물 문화재 조사연구	1,578	626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송례문 복구 조사연구를 추진
국가 보훈처	신체검사	751	4,005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참전유공자 복지수요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증서교부를 추진
대통 령실	경호장비 시설개선	10,401	4,70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민원안내실 개축, 김포 경호훈련원 개선을 추진
특허청	특허기술동향조사	22,150	497	- 예산상 계획에 없던 'e-연구노트 개발 및 보급'을 추진
	지역지재권 창출지원	4,879	61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범국민 발명인식 제고' 등을 추진
노동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43,553	5,90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를 추진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646	241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분석'을 실시
	건강기능식품 관리	424	38	- 예산상 계획에 없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추진
	식품관리운영	648	74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음식점 잔반 재사용 금지 홍보'를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070	1,16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소 기업청	시장경영혁신 지원	2,719	4,282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을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7,500	399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지원'을 추진
	신기술창업 인프라 조성	11,350	237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온라인 채용박람회 지원'을 추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인프라 조성	17,560	200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지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을 추진
소방 방재청	지식경영 시스템 보강	500	452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소방공무원 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발'을 추진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726	724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재난경보방송 수신용 수신기 개발'을 추진
	민방위시설장 비확충	807	235	- 예산상 계획에 없던 '민방위 경보시스템 확충'을 추진
	재대본 재해 예방활동	328	317	- 예산상 계획에 없던 '재해상황분석 판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사업내용 및 예산과목의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08예산액: 1,650억원, 목적 외 사용액 1,630억 2,400만원)은 국회가 심의·확정할 당시에는 대학단위 지원 및 자율재정 운영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단계에서 해외 연구 인력의 영입과 관련한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임의로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내용 및 예산과목 변경 사업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교육과학 기술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165,000	163,024	- 국회가 결정한 대학 단위 지원 및 자율재정 운영방식이라는 사업내용을 과제단위 지원방식으로 변경 -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12월에 자금이 교부되는 등 사업지연 -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변경

□ 이·전용의 한계 위반

- 전용된 사업들 간 유사성이 없거나,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이용의 한계 위반
 - 법무부는 ‘검찰청 시설운영사업’ 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운영사업’ 등으로 부터 3억 8,900만원을 전용하여 매점매석 행위 단속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전용된 사업들 간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용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은 인건비 중 11억 4,000만원을 정보화사업에 전용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인건비는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임

〈이·전용의 한계 위반 사업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726	181	- 통일여론 조성활동 등 유사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여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추진
법무부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2,811	389	- 검찰청 시설운영 등 유사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여 매점매석행위 단속 경비로 집행
	선진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55,229	279	- 영상녹화과학수사사업 등 유사성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전용
병무청	병무행정 정보화	8,316	1,140	- 인건비는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경비 등으로 전용이 제한되나 이를 위반하여 정보화 사업에 전용
법원 행정처	호적 및 신분 등록업무 전산화	14,505	109	- 자체전용 한계를 위반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의 목적 외 사용

-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그 초과수입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집행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외교 통상부	재외국민 보호 콜센터 운영	782	17	- 콜센터상담사례집 발간 등 초과지출승인액을 용도 외로 사용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1,151	5,814	- 영사전문보조원 인건비 등 초과지출승인액을 용도 외로 사용
	여권발급	58,201	104	- 영사콜센터상담원 인건비 등 초과지출승인액을 용도 외로 사용

□ 융자금의 보조금으로의 전용

- 융자금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과 후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이를 다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상지원 성격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용자금의 보조금으로의 전용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농림 수산 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용자	16,500	1,350	- 원금이 보전되는 용자금을 보조금으로 전용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

-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 수요, 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법률에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때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

부처명	사업명	2008		목적 외 사용 사유
		예산액 (백만원)	목적 외 사용액 (백만원)	
행정 안전부	지방교부세	28,956,700	300	- 부산광역시 북구가 행안부장관의 용도 변경 승인없이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집행
			250	- 전주시가 특별교부세를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
			6	- 울산광역시 중구가 지방의회의원에게 국외여비를 의회비 항목이 아닌 민관협력사업 용도의 특별교부금에서 부당하게 지급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0,638,783	125	-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 1억 2,500 만원을 장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부당지출

● 제도개선 사항

-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을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사례분석”,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 7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5 경상경비·사업비 예산절감 및 활용 실태분석

• 결산현황

- 2008년에는 2조 5,568억원 절감, 절감액 중 1조 1,752억원 활용(46%)
 - 인건비 절감액 2,716억원, 기본경비 절감액 2,515억원, 주요사업비 절감액 2조 335억 7,500만원
 - 종전의 예산절감과 달리 2008년도에는 경상경비 외에 사업비까지 절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재투입하도록 함

• 주요 쟁점

- 절감실적의 과장
 - 예산상 확정된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출연금의 지원대상을 변경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거나 사업시기를 연기하는 등 실제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절감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 중소기업청은 2008년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액 2,700억원 중 20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사업에 15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에 50억원을 전용하였으나,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우선적으로 절감하여야 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출연금의 출연대상만 바뀌었을 뿐 실제 예산지출이 절감된 것도 아님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 38억 3,300만원을 전액 절감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동절기 착공 불가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임
 -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어 있는 여권발급사업에서 29억 3,0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하나,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은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더라도 초과지출승인을 통해서 줄어든 규모 이상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절감을 한다고 하여 실제 지출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79억 3,000만원을 초과지출 승인함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60억 8,800만원이 더 지출됨

〈예산절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8예산	절감액	절감사유
기상청	적설자동관측망 구축	440	152	장비도입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
	안개관측망 구축	115	18	장비도입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
	라디오미터 고층기상관측망 구축	273	271	장비도입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58,201	2,932	수입대체경비 이용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3,729	681	교육기자재 구입을 3개년

				에 걸쳐 추진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897	113	실시설계를 2009년에 실시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3,833	3,833	등절기 착공 불가
소방방재청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	169	100	사업중단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 출연	270,000	20,000	정부출연금 축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3,695	3,829	직능인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 미집행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9,115	742	시설사업 축소
경찰청	교통안전 교육지도 홍보	11,500	1,500	집행부진
특허청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	-	지식재산회계 교재를 차후에 개발하기로 결정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2,584	400	시작품 제작 신청 대비 지원건수 비율 축소
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2,953	296	표본규모 축소

□ 사업계획 변경 과다

- 2008년도 전용액은 전년도보다 4,238억원(64.7%) 증가한 1조 794억원
- 전용액의 41.6%에 달하는 4,485억원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억원, %)

	예산액 (A)	전용액 (B)	전용비율 (B/A)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액(C)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 비율(C/B)
2004	1,201,393	9,199	0.8	2,497	27
2005	1,352,155	10,264	0.8	2,864	27.9
2006	1,469,625	8,075	0.5	1,774	22
2007	1,565,177	6,555	0.4	1,197	18.3
2008	1,795,537	10,793	0.6	4,485	41.6

자료 : 감사원 결산검사보고

□ 국회가 삭감한 예산의 증액

- 일부 부처는 국회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삭감한 사업에 절감예산을 전용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통해 증액한 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8 예산안	국회심의결과	전용을 통한 증액규모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주요시책 홍보	7,232	-3,600	983
	국민독서문화진흥지원	1,842	-200	500
농림수산식품부	바다목장조성	12,500	-300	1,000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추진

-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절감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8 예산	신규사업 관련 전용증액	증액내용	2009 예산
특허청	특허기술동향조사	22,150	497	'e-연구노트' 개발 및 보급	세부사업 분리
	지역지재권 창출지원	4,879	100	범국민 발명인식 제고	6,738
			200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310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646	241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 분석	581
	건강기능식품관리	424	38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단속	294
	식품관리운영	648	74	음식점 잔반 재사용 금지 홍보	1,587
노동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43,553	5,900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직업 훈련	98,516
경찰청	경비경찰활동	21,619	580	경비부대 숙소등임차료	21,869
	범죄수사활동	10,415	867	실종사건 전담수 사팀 장비지원	5,138
	지방청경무활동지원	264,877	1,000	화성서부서 임차료	143,033
해양 경찰청	파출장소 신축 및 관서보수	1,782	3,500	방제비축기지 신 축	4,115
국가 보훈처	신체검사	751	4,005	참전유공자 복지수요 실태조 사, 국가유공자 증 서교부	751
대통령실	경호장비시설개선	10,401	4,700	안내실 개축, 김 포 경 호 훈 련 원 개선	10,127

부처명	사업명	2008 예산	신규사업 관련 전용증액	증액내용	2009 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070	1,038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1,200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보조	7,500	399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지원	11,976
	신기술창업 인프라조성	11,350	237	온라인 채용박람회 지원	18,000
	중소기업인력유입 인프라조성	17,560	200	지역별 채용박람 회 지원	6,000
	시장경영혁신지원	2,719	4,350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	28,710
소방 방재청	재대본 재해예방활동	328	317	재해상황분석 판단시스템 구축	400
	민방위시설장비확충	807	235	민방위 경보시스 템 확충	1,035
	지식경영시스템 보강	500	452	소방공무원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발	-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5,276	724	재난경보방송 수 신용 수신기 개발	4,818
합계		430,255	29,964		364,888

□ 절감예산 활용사업의 집행부진

- 일부 부처의 절감예산 활용사업은 사업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실적이 저조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으로부터 43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의 2008년도 실적행액은 총 사업비 78억 7,700만원(국비 43억 5,000만원, 지방비 34억 7,200만원, 민간부담 5,500만원) 중 3.9%인 3억 900만원에 불과
 - 노동부는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직업훈련, 자활훈련 사업 등의 훈련인원을 축소하고, 59억원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좌발급이 2008년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59억원 중 10억원만 집행되었고, 3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원이 불용

〈절감예산 활용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사례〉

(단위 :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절감예산 활용액	2008년말기준 실집행액	실집행률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4,350	309	7.1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5,900	1,000	16.9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복지수요실태 조사	2,600	0	0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조성	600	0	0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활용시스템 구축	700	387	55.2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구축	400	234	58.5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 화 연구	560	92	16.4
행정안전부	평화벨트 연구용역	385	0	0
	공공디자인 개선	400	0	0

• 시정의견

- 예산절감 대상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그 변경을 최소화하며, 절감한 예산은 불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7, 200쪽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⑥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분석

• 결산 현황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정부 내부의 평가제도
- 2008년도 평가결과 '미흡'사업(일반재정-예산 분야)은 총 39개, 2008년 예산액은 2조 1,658억원, 결산액은 2조 798억원

<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일반재정-예산 분야)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2008예산액	2008집행액	사업수
농림수산식품부	816,823	778,159	8
지식경제부	729,110	722,554	4
문화체육관광부	359,090	342,984	7
국방부	92,490	85,475	2
행정안전부	64,660	63,960	2
보건복지가족부	43,396	28,145	3
농촌진흥청	18,114	17,114	1
교육과학기술부	15,196	15,136	6
노동부	9,115	8,373	1
중소기업청	7,900	8,035	2
문화재청	5,213	5,064	2
국가보훈처	4,645	4,833	1
합계	2,165,752	2,079,832	39

주: 1. 평가단위는 '단위사업' 기준

2. 일부부처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009.5

• 주요 쟁점

□ 예산액 합계가 큰 부처

- ① 농림수산식품부 8,168억원, ② 지식경제부 7,291억원, ③ 문화체육관광부 3,591억원, ④ 국방부 925억원, ⑤ 행정안전부 647억원

□ 사업 개수가 많은 부처

- ① 농림수산식품부 8개, ② 문화체육관광부 7개, ③ 교육과학기술부 6개, ④ 지식경제부 4개, ⑤ 보건복지가족부 3개

□ 예산액 규모가 큰 5대 주요 미흡사업

- ①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융자)사업 6,437억원, ② 농림수산식품부 수

리시설개보수 3,823억원, ③ 농림수산물식품부 재해예방시설지원사업 3,119억원, ④ 문화체육관광부 기초관광자원개발사업 1,624억원, 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시설지원사업 1,068억원

<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일반재정-예산 분야) 중 예산액 규모 상위 5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자율평가 미흡 사유
		예산액	집행액	
지경부 (예특)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용자)	643,650	643,650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 적이 없음
농식 품부 (농특)	수리시설 개보수	382,330*	382,330	-사업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가 미흡
	재해예방 시설지원	311,852*	293,534	-재해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미비
문화부 (균특)	기초관광 자원개발	162,384	155,159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추진, 목표치 설정 미 흡, 집행 부진
	지방체육 시설지원	106,837	101,818	-사업상 발생 문제점 해결 미흡, 성과지표 목 표치의 합리적인 설정 미흡, 예산집행부진

□ 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의 연계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로서, 동 평가에서 미흡사업 평가를 받은 것은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조정 검토 필요

<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자율평가 미흡 사유
		예산액	집행액	
농식 품부 (농특)	수리시설 개보수	380,000	382,330	-사업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가 미흡
	수산인력 양성	7,088	7,310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 실시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42,652	42,990	-매년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미비
	안전한수 산물공급 관리사업	6,526	5,08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합리
	수출입수 산물안정 성관리	5,478	5,208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합리하며, 성과평가 자체 미 실시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자율평가 미흡 사유
		예산액	집행액	
농식품부 (균특)	종자관리	1,354	21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합리
	재해예방 시설지원	311,900	293,534	-재해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미비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42,007	41,491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합리하며, 보조사업 자의 집행실적 부진
소계		816,823	778,159	
지경부 (일반)	무역조정 지원사업	2,000	500	-수요예측 부적절 및 집행실적 미흡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83,290	78,234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미흡 및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 실시
	선진형 무역구제 체제 구축사업	170	170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미흡 및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 실시
지경부 (예특)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용자)	643,650	643,650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 적이 없음
소계		729,110	722,554	
문화 체육 관광부 (일반)	공연예술행 활성화	14,896	14,334	-성과목표 및 지표가 사업목적과 일치되지 않고,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
	종교문화 기반구축	22,720	22,420	-예결위 예결산검토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없이 사업추진, 목표 및 지표가 사업목적과 불일치, 관리감독 미흡
문화 체육 관광부 (균특)	지방문화 산업육성	19,613	19,613	-예산절감 노력 및 성과평가 미흡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0,460	28,460	-예산절감 노력 및 성과평가 미흡
	문화예술행 인기념사 업조성	2,180	1,180	-사업상 발생 문제점 해결 미흡, 성과지표 목 표치의 합리적인 설정 미흡
	지방체육 시설지원	106,837	101,818	-사업상 발생 문제점 해결 미흡, 성과지표 목 표치의 합리적인 설정 미흡, 예산집행부진
	기초관광 자원개발	162,384	155,159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추진, 목표치 설정 미 흡, 집행 부진
소계		359,090	342,984	
국방부 (일반)	환경시설 개선및운영	83,318	76,235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관성 미흡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실적 미흡
	전직지원	9,172	9,240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비합리적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실적 미흡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 실시
소계		92,490	85,475	
행정 안전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35,060	35,060	-'08년도 사업비 351억원을 집행하였으나 환 경영향평가 및 설계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자율평가 미흡 사유
		예산액	집행액	
	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			등으로 실집행은 예산액의 30%인 105억원을 집행함 - 성과지표인 평택시의 인구증가율과 사업추진실적은 성과목표인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부적합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9,600	28,900	-제시한 성과지표로는 계획공정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곤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등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당해 시범사업의 조기추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정하였으나 사업추진 2년째 임을 감안할 때 목표치가 다소 비합리적임
소계		64,660	63,960	
보건 복지 가족 (일반)	정신시설 기능보강	7,187	7,187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절감 실적 없음
	국가시험 운영	963	962	-사업추진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집행효율성 제고실적이 없고, 단순 고객만족도 조사 외에 본 사업에 대한 종합, 심층적인 평가실적 없음
	장사시설 설치	35,246	19,996	-주민반대 등으로 장사시설 공급이 지연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
소계		43,396	28,145	
농촌 진흥청 (균특)	농촌지도 기반조성	18,114	17,114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간 인과관계 불분명,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합리
교육 과학 기술부 (일반)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활성화	1,142	844	-예산절감 노력 부족, 지속적 재정지원 필요성 검토 부족,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 미흡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평생 학습 활성화 지원	6,465	6,465	-예산절감 및 집행효율성 제고노력 부족, 객관적·종합적 사업평가 미흡, 평가결과 환류노력 부족
	고등교육 평가운영 (대학평가 및 운영)	2,500	2,450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이지 못함, 객관적·종합적인 사업평가 미흡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사업	1,279	1,575	-타사업(교과서개발보급)과 일부 유사성 -성과목표치의 비합리적인 설정,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흡
	교수 학습 체제 혁신 사업	2,515	2,515	-성과목표치의 비합리적인 설정,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미흡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해결 미흡, 사업평가 미흡
	초중등 과 학교육 활	1,295	1,287	-성과지표의 비합리적인 설정, 예산절감 실적 미흡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자율평가 미흡 사유
		예산액	집행액	
	동 지원			-성과평가 미흡, 계획된 성과달성 미흡
소계		15,196	15,136	
노동부 (일반)	한국노동 교육원 출 원	9,115	8,373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규모가 부적정하며, 성 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됨 -운영상 미흡한 점으로 성과달성이 불충분
중기청 (일반)	중소기업 중앙회 보조	7,500	7,63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 을 제고한 실적이 없음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400	400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 을 제고한 실적이 없음
소계		7,900	8,035	
문화 재청 (일반)	문 화 재 안 전관리	2,303	2,154	-성과목표치 비합리적 설정, 실적행률 저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남해안관광 벨트개발	2,910	2,910	-성과목표치 비합리적 설정, 실적행률 저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미흡
소계		5,213	5,064	
국가 보훈처	보훈기념	4,645	4,833	-성과목표치 비합리적 설정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 이월액 감안 시 집행률이 86.8%에 불과 -사업효율성 제고로 인한 예산절감 실적 미흡 하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미흡
소계		4,645	4,833	
합계		2,165,752	2,079,8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7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 분석 개요

- 최근 3년간(2006~2008)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반복 지적사항 및 주요 지적사항 중 2008년 결산 심의 시 의미 있는 주요사업을 선정·종합한 결과, 2008년도의 경우 125개 사업, 총 51조 5,484억원(예산액 기준)에 이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시 20조 9,096억원)
- 최근 연례적으로 지적되었던 주요 사업들은 2008년도 결산 심사 시 중점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 중 재정규모가 큰 30대 사업은 다음의 [표] 참조

<최근 3년간(2006~2008)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중 반복·주요 지적사항 중 30대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	사업명	2008 예산액	2008 집행액	주요 지적사항
보훈처 (일반)	보훈급여금	2,310,914	2,351,772	-사업소요액에 비하여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타 사업에서 이·전용 집행 (2007 결산 정무위, 2007, 2008 결산 예결위)
국토부 (주택 기금)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사업	1,537,500	1,015,909	-민간참여 저조로 인한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사업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2005, 2007 결산 국토위)
국토부 (교특)	민자유치사업 지원사업	1,424,241	1,410,845	-민자유치사업 지원사업에서의 최소 운영수입보장 비율 하향조정 필요 (2008 결산 예결위)
통일부 (남북 기금)	남북협력기금사업비	1,104,458	231,205	-남북협력기금사업비 집행 저조 (2007, 2008 결산 상임위, 2008 결산 예결위)
국토부 (교특)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1,008,500	1,006,108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사업의 연례적인 과다 전용 (2007 예산안 예결위, 2008 예산안 국토위)
	도시철도건설사업	751,279	751,279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자체의 실 집행실적 감안 시 조정 필요 (2007, 2008 예산안 국토위, 2007 예산안 예결위)
국토부 (균특)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723,567	731,70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연례적 집행 실적 저조 및 균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 (2008, 2009 예산안 국토해양위, 2008 추경 예산안 예결위)
국토부 (교특)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603,300	594,937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의 전용·사업조정 과다발생 문제 (2005, 2006, 2007 결산 국토위, 2007, 2008 예산안 국토위)

농림부 (쌀기금)	쌀 소득 보 전 변동직불금	533,043	279,122	-과다예산편성 및 운영체제 개선 필요 (2007 결산 농식품위, 2008 예산안 예결위, 2009 예산안 예결위)
국토부 (교특)	부 산 신 항 개 발사업	518,958	517,143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연례적인 전용·조정 과다(2008 결산 예결위)
환경부 (환특)	하 수 처 리 장 설치	458,449	439,557	-집행부진 (2006, 2007 결산 예결위, 2008 예산안 예 결위)
복지부 (일반)	장애수당 지급	327,891	259,120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례적 과다 추 계로 인한 불용 과다 (2007 결산 예결위, 2007 결산 복지위, 2009 예산안 복지위)
중선위 (일반)	국회의원 선거관리	287,298	212,543	홍보경비 및 선거포상금 등 일부 예산이 과다계상되었음(2008 예산안 예결위)
지경부 (일반)	부 품 소 재 산 업경쟁력 향상	278,000	278,000	-신뢰성향상기반구축의 성과 부진 (2009 예산안 예결위, 2007 결산 지경위)
국토부 (교특)	광양항 개발사업	249,707	266,669	-광양항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 른 연례적인 집행부진(2008 결산 예결위)
교과부 (균특)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246,300	246,300	-NURI 사업 5차년도(2008년 6월 1일에 개 시)에 장학금 비중 과다 등 2007년 국회 의 지적사항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2008 예산안 예결위)
행안부 (일반)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사업	244,575	30,578	-근거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위로금 편 성 규모를 감액조정하지 않아 대규모의 예산 불용과 이월이 발생 -근거법률의 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환경부 (환특)	수 도 권 대 기 개선대책	237,922	218,282	-사업성과 미흡 및 사업운영방식 부적절 (2006, 2007 결산 예결위, 2009 예산안 환 노위)
국방부 (복지 기금)	복지기금사업	226,023	197,567	-복지시설 운영비 연례적 과다 계상 문제 (2008, 2009 예산안 예결위)
지경부 (예 특,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94,400	195,306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율 저조 (2007 결산 지경위, 2008 예산안 산자위)
문화 재청 (일반)	문 화 재 보 수 정비	190,029	190,029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문제와 보수정비와 관련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05~2007년 시정요구, 2008,2009 예산안 문방위, 2006, 2007 결산 예결위, 문방위)
국방부 (일반)	정 보 통 신 체 계구축사업	182,256	155,925	-국방정보화 사업 중 정보통신체계 구축 사업의 리스 비율 과다 (2007 결산 예결위, 2009 예산안 예결위)

국토부 (균특)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181,614	207,87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실적행 부진 및 이월액 과다발생 문제(2005,2006 결산 국토위, 2007,2008 예산안 국토위)
경찰청 (일반)	교통안전활동	168,807	165,782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예산을 연례적으로 이월 (2006, 2007 결산 예결위, 2008 예산안 예 결위)
농림부 (양특)	수입양곡대	161,113	133,569	-수입양곡대사업의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제 도정비 필요 (2008 추경 농식품위, 2008 추경 예결위, 2009 예산안 농식품위)
행안부 (일반)	정부통합 전산센터운영	160,983	146,983	-낙찰차액을 전용으로 서버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대규 모 이월액 발생 -향후 예산 전용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 록 적절한 집행시기와 규모에 대한 판단 필요
소방청 (균특)	재해위험 지구 정비	158,253	152,900	지자체의 실적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2007, 2008 예산안 예결위, 2005, 2007결 산 행안위, 2008 예산안 행안위)
행안부 (일반)	전자정부사 업지원	143,765	99,421	-전담기관(정보사회진흥원) 실적행실적 부진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각 단계마다 계 획대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교과부 (일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140,400	137,700	-연례적 예산 전용 (2007 결산 예결위)
노동부 (일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39,772	132,298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일부 항목의 예산 과다 편성 (2006 결산 예결위, 2009 예산안 예결위)

[자료]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검토보고서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8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흡사업 분석

• 2007 결산 시정요구사항 개요

- 국회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66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2008년 12월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사례

- 정부가 제출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14개 부처의 66개 사업(38조 3,146억원)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6,033억원 중 5,949억원 집행
 - 2007년도 결산 심사결과 신규로 추진한 5개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걸쳐 예산전용 또는 사업조정액이 503억 2,900만원에 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거쳐 다음연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예산전용 및 사업간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
 - 그러나, 2008년의 경우에도 예산의 약 22%인 1,325억원이 전용을 통해 변경되는 등 집행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2,780억원이 전액 집행
 - 2007년도 결산 심사결과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사업관리구조가 복잡하므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획관리평가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시정을 요구
 -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부품소재기반구축, 국제협력 및 사업화지원 등은 한국사업기술진흥원에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부품소재기술개발과 관련한 민간투자는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275억 4,300만원 전액 집행
 - 2007년도 결산 심사결과 연도 중에 소득수준과 중증도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81.4%, 실집행률이 40%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 대상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도 2008년 7월에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감소하는 적용대상 노인수를 부정확하게 예측함에 따라 실제 집행자인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예산액의 72.9%인 201억 원에 그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일부 사례〉

부처명	사업명	2008예산액 (단위: 백만원)	2008집행액 (단위: 백만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결과 분석
국토 해양부	산업 단지 진입 도로 지원	603,300	594,937	- 산업단지진 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례 적 예산전용 사업조정 과 다발생	- 향후 예산 편성 시 집 행가능성을 면밀히 검 토하고, 집 행 관리를 철저히 하 여 계획대 로 집행하 겠음	- 연례적으로 예 산전용이 발생 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에도 예산의 약 22%가 전용을 통해 변경됨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에 산 편성과 철저 한 집행관리를 통한 예산계획 변경 최소화 방 안 마련 필요
	혁신도시 건설지원	111,300	110,717 (실집행액 : 25,258)	- 혁신도시 기 반 시 설 설계비 실 집행률 제 고 필요	- 혁신도시별 집행률을 감 인하여 예산 을 탄력적으 로 배정하는 한편, 집행상 황을 수시점 검하고 있음	- 기반시설 설계 지연으로 인해 2008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30%로 여전히 저 조함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단계 별 예산편성과 철 저한 집행관리 필 요
농림 수산 식품부	녹색농 촌체험 마을조 성사업	8,930	8,930	- 체험마을 당 방문객 수와 관광 매 출 액 이 감 소 하 고 있 는 상 황 을 고 려 하 여, 체험마 을을 양적 으로 확대 하기 보다 는 질적으 로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마 을 사무장 채용지원 확 대 등 사후 지원 강화	- 본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획 기적인 조치마련 필요 - 마을 사무장 제 도는 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닌 별도의 사업이므로 직접 적인 대책이 아님
중소 기업청	자산 유동화 지원	40,000	28,100	-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 획을 과다 하게 변경 하고 있는 바, 향후 기	- 동 사업의 수요가 감소 하여 2008년 동 자금을 수출금융자 금으로 변경	-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국회가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연초(2008년 3월)에 예산절감 을 이유로 예산의

부처명	사업명	2008예산액 (단위: 백만원)	2008집행액 (단위: 백만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결과 분석
				금융용계획 수립 시에 는 자금시 장의 동향 등 제반여 건을 충분 히 고려하 여 적정액 을 편성하 고 당초 사 업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집행하였으 나 향후 기 금융용계획 수립 시에는 자금시장 동 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 록 운영할 계획임	25%를 절감하기 로 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저 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식 경제부	부품소 재산업 경쟁력 향상	278,000	278,000	사업관리체계 및 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적정함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일 원화할 것	산업기술 관 련 연구개발 관리기관을 통합	관리기관이 두개로 여전히 이원화되 어 있음
교육과학 기술부	이공분 야 학 술연구 조성사 업	207,595	207,595	기초과학 학 술연구 조 성 사업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 불일치 해 소 사업개 시 전 학진 연구자 간 체결되는 협약서에 과제제출 의무 명시 필요	2009년도 사 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 시 전에 사 업을 기획하 는 등 사업 추진 소요시 간을 단축하 고, 연구성과 물 관리 강 화 조치 시 행	교과위의 지적사항 (예: 연구 결과발 표물 미제출 사유 의 구체화, 논문 제출 서약 도입 등) 이행 미흡 등 전반적인 성과 관리 노력 부족, 일부 세부사업들 은 논문 미제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10%를 넘기도 함
	입학사 정관제 도 입 지원	12,800	15,700	입학사정관제 도의 신청 요건 완화 를 검토하 고, 사정관 의 신분 안 정화방안을 마련	「2009년 입학 사정관제 지 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시 신청요건 및 사정관 신분 안정화 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 반영 예정	현재 입학사정관 신분보장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 부 여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학사정 관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계약직인 등을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의 중 립성·자율성 보장 을 위해서는 미흡 한 조치임

부처명	사업명	2008예산액 (단위: 백만원)	2008집행액 (단위: 백만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결과 분석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체 육인프라조성	18,021	2,459	- 생활체육 인프라조성 사업의 연 례적인 이 월에 대한 대책 필요	- 사업계획수 립시 안허가 및 건설에 소요되는 절 대공기 고려 한 소요예산 산정 등 제 도개선 조치 완료	- 2008년에도 여전 히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여 근본적 인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함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 돌 보미 바 우처 사 업	27,543	20,075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의 대상자 설정시 신 중한 검토 및 철저한 사업 사전 준비 필요 - 노인돌보미바 우처사업의 전용 문제	- 2009년부터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시 행에 따라 사업규모 축 소, 노인돌보 미바우처사 업과 독거노 인생활관리 사 파견사업 의 통합 및 시행부서 일 원화	- 감소하는 적용대 상 노인수를 부정 확하게 예측함으 로써 2008년 실적 행률(72.9%) 저조 - 독거노인생활관 리사 파견사업을 노인돌보미사업과 같이 예산지원방 식을 바우처방식 으로 전환함으로 써 실질적 통합 필요
	지역 복 지서비 스혁신 사업	49,354	38,400	- 지역복지서 비스혁신사 업 실행 률 제고	- 2008년의 경우 수요자 의 높은 선 호로 인해 예산대비 초 과 수요 발 생 등 정상 적으로 집행 되고 있음	- 정부 예측과 달 리 실적행률이 77.8%로 집행실 적 저조 - 사업성이나 투자 효율성이 낮은 일 부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사 기능 조정 필요
노동부	클린 사 업 장 조성지 원사업	110,000	110,000	- 제조업 이 외 업종으 로 지원대 상 확대 -인증 사업장 에 대한 사 후 관 리 를 철저히 하 도록 '제도 개선' 요구	-지원대상을50 인 미만 전 산업으로 확대 -1년에서 3년 으로 사후관 리 강화	-기본보조금(무상) 에 대한 도덕적 해이 초래하므로, 수익자 일부 부담 원칙 적용 검토 필요 -사업 신청대상에 대 한 기준설정 미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2009.7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9] 결산 성과정보 분석

• 분석 개요

□ 성과중심의 국회 결산심사 필요

-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결산부터는 정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성과중심의 국회 결산심사를 위한 역량 제고 필요
 - 2009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2008년 10월)
 -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 예정(2010년 5월)

□ 결산 성과정보 분석의 의의

- 금번 분석은 2008회계연도 정부 성과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년도 국회의 결산심사가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성과보고서의 보다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 예산 집행결과와 성과정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결산 성과정보의 신뢰성 미흡, 성과관리 미실시, 성과실적 저조 등의 사례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쟁점

□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의 차이 과다

-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 연관성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성과정보 신뢰 곤란
- 대표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 2008년 예산현액의 실적행률은 4%인 반면, 성과달성도는 당초 목표 대비 100%
 - 성과지표인 「시범사업 지원 건수」가 투입지표에 불과하고, 예산집행과의 연계성을 결여하여 사업의 신뢰성 있는 성과로 보기 곤란

□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의 불균형

- 연도별 예산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는 연례적으로 동일한 경우 성과정보 신뢰 곤란
- 대표사례 : 환경부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
 - 23억원(2007년) → 61억원(2008년) → 81억원(2009년)으로 예산 증액
 - 성과지표인 「완충녹지 주변지역 주민의 악취개선에 대한 만족도」의 목표치 및 달성실적이 3년 연속 80점으로 동일하여 신뢰하기 곤란

□ 성과달성도 과다 산정

- 예산집행률은 큰 문제가 없으나 성과달성도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도 성과정보 신뢰 곤란
- 대표사례 : 통일부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지급」
 - 성과지표인 「취업증가율」의 성과달성도는 225%로 나타났으나, 측정산식인 「(금년수급증가율/전년입국증가율)×100」은 「고용지원금지급증가율」을 측정하는 식으로서 「취업증가율」의 달성도를 산정하는 데 부적절

□ 성과관리 미실시

- 합리적 사유 없이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들도 상당수 존재
- 대표사례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사업」
 - 2008년 예산현액은 7,007억 2,300만원으로 대규모 출연사업이고, 성과목표인 「국방 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미실시

□ 성과달성도 미흡

- 정부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낮고 성과달성도가 과다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사업추진 지연, 집행부진 등으로 인해 성과달성도가 70% 미만인 사업 존재
- 대표사례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 성과지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2008년 목표치 1,400건 중 62.8%인 879건 달성

● 시정의견

□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 연계성 확보

- 단순 투입지표 또는 추상적 결과지표 설정 지양,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 수준 및 측정산식의 적정성 제고 등을 통해 예산과 성과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 연관성 제고

- 예산집행결과 및 성과실적의 변화와 당해연도 성과정보가 합리적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매년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보다 정확한 성과달성도 산출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수준의 적절성 제고, 성과측정의 과학화 등을 통해 성과 정보의 정확도 제고

□ 빠짐없는 성과관리 체계 확립

- 「국가재정법」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조속히 성과관리 실시 필요

□ 성과부진 사업 관리

- 성과달성도의 과다산정 경향 고려시 성과부진 사업들의 실제 성과달성도는 더 낮은 개연성이 크므로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357쪽

[담당] 남궁인철 사업평가관(788-4683)

10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 결산 현황

- 정부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2009년 5월 기준)에 대해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2013년 이후 매년 1조 4천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 전망

• 주요 쟁점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BTL투자계획 간의 연계 미흡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시설의 조기공급’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 ‘노인요양시설, 학교복합화시설, 군병영시설’ 등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모색 미흡
- 재정운용 및 관리체계 미흡
 - 국회에 한도액을 보고 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중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보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미래 국가재정부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총 28조가 넘는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부부채 관리체계 미흡

• 제도개선 사항

- BTL사업 재정운용 관련 주요정보 국회 제출의무 강화 필요
 - BTL사업 추진 시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개정 보완
 -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사업의 한도액 제출 시 한도액의 범주에 총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BTL사업에 따른 장래 정부부담 관리 체계화
 - 한도액 제출 시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및 타당성과 적격성조사’ 결과 및 ‘BTL시설에 대한 미래 정부지급금 전망’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BTL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의 도모
- 정부지급금의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 BTL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부부채 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담당] 제민 사업평가관(788-4676)

II 기금 수익률 분석

1. 사업성기금의 운용수익률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대상 39개 사업성기금 중 5개의 기금에서는 마이너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보이면서 전년도 대비 수익률이 급감
 - 전력사업기반기금이 가장 낮은 수익률 (-)10.7%를 보였음

〈2008년도 수익률 저조 기금의 운용평잔 및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기금명	2008년도		2007년도		증감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관광진흥개발기금	2,013	-3.1	1,825	6.1	188	-9.2
국민체육진흥기금	6,593	-3.6	4,734	9.6	1,859	-13.2
국제교류기금	2,724	-1.4	2,795	5.6	-71	-7.0
문화예술진흥기금	4,220	-1.6	4,173	7.1	47	-8.7
전력산업기반기금	6,768	-10.7	6,770	6.6	-2	-17.2
(이하생략)						
사업성기금 계	94,814	2.8	108,045	5.8	-13,231	-3.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주요 쟁점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의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 매우 높음
 - 실적배당형상품 투자 비중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71.04%를 제외한 3개의 기금에서 95%를 넘으며, 최저의 수익률을 보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은 98.3%에 달함

〈2008년도 수익률 저조 기금의 여유자금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교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기금 전체
확정형상품	금액	83	80	1,222	116	52,697
	비중	4.12	2.94	28.96	1.71	55.58
실적배당형상품	금액	1,930	2,644	2,997	6,652	42,117
	비중	95.88	97.06	71.04	98.29	44.42

주: 1)확정형상품: 정기예금 등 상품 가입 당시 수익률이 기 확정된 상품

주: 2)실적배당형상품: 수익증권을 통한 주식 또는 채권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항목으로 상품 가입 당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이는 동 사업성기금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안전성 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였음을 보여줌
- 또한, 여유재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목적사업 수행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시정의견**

- 사업성기금은 여유자금 운용 시 안정성에 우선권을 두고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 향후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을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더라도, 상품별 위험을 감안하여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내로 확정형과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적절하게 구성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

2.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확대 필요**

● **결산 현황**

- 39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중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은 2007년도 53.6%, 2008년도 44.4%에 이르고 있음
 -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 여유자금 중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이 50%가 넘는 기금은 10곳에 해당하고 2007년도 기준으로 11곳

〈2007~2008연도 실적배당형상품 투자비중이 높은 기금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				2007년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응급의료기금	-	-	127	100.0	-	-	87	100.0
전력산업기반기금	116	1.7	6,652	98.3	718	10.6	6,052	89.4
국제교류기금	80	2.9	2,644	97.1	188	6.7	2,606	93.3
관광진흥개발기금	83	4.1	1,930	95.9	291	15.9	1,534	84.1
영화발전기금	469	22.2	1,639	77.8	-	-	-	-
정보통신진흥기금	531	23.8	1,701	76.2	923	41.3	1,311	58.7
문화예술진흥기금	1,222	29.0	2,997	71.0	2,353	56.4	1,820	43.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58	30.4	1,049	69.6	358	22.8	1,209	77.2
방송발전기금	801	35.5	1,453	64.5	1,309	67.3	636	32.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26	46.5	145	53.5	124	52.3	113	47.7
국민주택기금	8,937	51.0	8,602	49.0	12,845	31.0	28,593	69.0
임금채권보장기금	1,482	51.2	1,411	48.8	1,177	42.2	1,610	57.8
여성발전기금	64	54.4	54	45.6	81	49.8	82	50.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47	55.3	38	44.7	35	26.2	98	73.8
과학기술진흥기금	1,028	56.5	793	43.5	1,346	48.1	1,454	51.9
(이하 생략)								
사업성기금 총계	52,697	55.6	42,117	44.4	50,148	46.4	57,897	53.6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주요 쟁점**

- 사업성 기금 중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국가재정법 제76조의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 배분전략 및 위험관리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범위를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업성기금은 실적배당형상품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아 자산운용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포함한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50%이상인 기금 중 대부분이 그 비중을 전년도 대비 오히려 증가시켜 위험관리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개선 사항**

-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확대 필요

-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 범위를 여유자금의 총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상품 규모와 총 여유자산 중 투자상품 배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산운용 전략 및 위험관리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3. 금융성기금의 자산운용 문제점- 성과평가의 문제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대상 10개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16조 5,392억 원이고 운용수익률은 5.0%임

- 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이 7.3%로 가장 높았고, 수출보험기금의 수익률이 (-)2.7%로 가장 저조함

- 4개의 기금이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저조

- 수출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4개

- **주요 쟁점**

- 4개 기금의 기준수익률과 운용수익률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회손실이 413.8억원에 달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가장 많은 기회손실 175.2억원을 보임

〈2008년도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보다 낮은 금융성 기금의 운용수익차액 현황〉

(단위: 억원, %)

기금명	연중운용 평균(A)	기준수익률(B)	운용수익률 (C)	운용수익차액 [A×(C-B)]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247	7.43	7.04	-12.7
수출보험기금	16,798	-0.53	-1.2	-112.5
신용보증기금	29,218	7.7	7.31	-113.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5,748	6.02	5.53	-175.2

주: 기준수익률: 각 운용자산(또는 운용상품)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념으로 각 운용자산(또는 운용상품)과 위험이 같거나 유사한 대체투자안(사전에 설정된 대표적 투자자산 또는 투자상품)의 실현수익률로 산정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금융성기금별 자산운용지침에는 성과평가항목이 있어, 기준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사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방법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 각 기금별 기준수익률 산정 방법의 적정성에 의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기준수익률은 다른 기금에 비해 매우 보수적
- 제도개선 사항
 - 자산운용평가지침에 규정된 성과평가 항목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 있음
 - 성과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우와 저조한 경우 향후 자산운용 과정에서 배분전략이나 위험관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자산운용담당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성기금의 기준수익률 산정에 대한 일반화된 규정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금융성기금(특히 신용보증 관련 금융성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특성이 비슷하고, 여유자금의 자산배분도 거의 유사하여 기준수익률에 대한 일반화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

[담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12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분석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대상 60개 기금 중 49개 기금에서 200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변경액은 총 14조 4,219억원으로 나타났음
 - 변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총 17회를 변경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이 13건, 「군인복지기금」이 9건 등임
 - 변경액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3,288억원을 변경하였음

• 주요 쟁점

- 수출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국가재정법」 위반 : 수출보험기금의 수출보험지원 항은 당초 예산 규모 대비 142.1%나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지식경제부는 수출보험지원은 「수출보험법」 제53조의3에 근거한 의무지출이어서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의 4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
 - 의무지출은 지출 근거 및 지출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에 있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임
 - 「수출보험법」 제53조의3의 규정은 보험지급이 의무적 지출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임
 - 「수출보험법」 제53조의3은 수출보험공사의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 작성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할 경우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변경안 제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의무지출과 여유자금 운용의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 필요
 - 의무지출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연금지급 등의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무지출 변경도 국회의 통제권 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와 건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시급한 재정 소요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144쪽

[담당] 서세욱 분석관(788-4625)

13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 결산 현황

-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64개 사업이며, 재정규모는 약 2,844억원으로 2008년도 총지출의 0.11%에 달함
 - 신규 증액 사업의 2008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권 훼손 사례,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사례, 사업계획 수립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음

• 주요 쟁점 및 시정 사항

- 국회의 예산심의권훼손 사례: 국토해양부는 국회 신규 증액 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착수 지연 등의 이유로 전용하여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출하였음
 -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불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국토해양부는 같은 부처내에서도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사업비를 전용하여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우이-신설 경전철,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등)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회 신규 증액사업 중 과다 전용 발생 사례(국토해양부)〉

(단위: 백만원, %)

사업	예산액 (A)	전용 (조정)	이체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부진 사유
						(C/B)	(C/A)	
신지-고금 국도건설	2,000	(-2,000)	-	0	0	0.0	0.0	사업착수 지연
성서5차 지방 산단진입도로	8,000 9,000 (추경)	-11,539	-	5,461	5,360	98.2	31.5	보상협의 지연
원주-제천복 선전철화	5,000	-4,850	-	150	150	100.0	3.0	보상협의 지연
우이-신설 경전철	1,000	-1,000	-	0	0	0.0	0.0	사업착수 지연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1,500	-1,500	-	0	0	0.0	0.0	미집행결정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00	-1,000	-	0	0	0.0	0.0	미집행결정
용문-홍천 단선전철	1,000	-400 (-600)	-	0	0	0.0	0.0	투자후순위
화양-나진 국지도	1,000	-900	-	100	100	100.0	10.0	사업착수 지연
나진-소라 국지도	1,000	-900	-	100	100	100.0	10.0	사업착수 지연

주: 국토해양부의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사례: 국토해양부는 국회 신규 증액 사업들의 예산을 전체 설계비와 선보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결산서에 세부내역이 없어 집행률 계산이 불가능함

- 국회는 일반국도건설사업으로 6개 구간에 70억원, 선보상비 명목으로 40억원, 국도건설 등으로 80억원, 총 190억원을 신규로 증액 반영함
 - 사업예산은 해당 사업용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전체 설계비와 선보상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사업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 세부내역이 없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국회 증액	집행률	비고
일반국도(북면-부곡)	교특	1,000	-	전체 설계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
일반국도(춘천-동면)	교특	1,000	-	
일반국도(오미재터널)	교특	1,000	-	
일반국도(압해-화원)	교특	1,000	-	
일반국도(화양-적금)	교특	2,000	-	
일반국도(포산-서망)	교특	1,000	-	
일반국도 소계		7,000	-	
선보상(영광-해제)	교특	1,000	-	전체 선보상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
선보상(만리포-태안)	교특	1,000	-	
선보상(내서-칠원)	교특	1,000	-	
선보상(태백-미로)	교특	1,000	-	
선보상 소계		4,000	-	-
담양-순창 국도건설	교특	5,000	-	전체 설계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
우회도로(진해귀곡-행암)	교특	1,000	-	
장수IC-서창JCT	교특	1,000	-	
지방도(문경농암-산양)	교특	1,000	-	
국도건설 등 소계		8,000	-	-
합 계		19,000	-	-

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수정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 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집행률 조사

□ 사업계획 조기 수립 필요: 사전사업계획 미비, 용역발주 지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이 저조

- 향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국토해양부 ‘청주산단진입도로’, 환경부 ‘에코시티모델연구’ 등)
 -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부산·광주분관 건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134쪽

[담당] 서세욱 분석관(788-4625)

1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 결산 현황

-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 2조 3,000억원의 37.3%인 8,590억원을 지출
 - 18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조 4,230억원을 불용처리
-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 747억원 전액을 불용처리

〈2008년도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회계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9예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1,000	8,160	7,740	57	14,230	11,000
	목적예비비	12,000	993	850	123		28,885
	- 재해대책비		650	510	123		
	- 선거경비		-	-	-		
	- 인건비부족		-	-	-		
	- 환차손		343	340	-		
특별회계	747	-	-	-	747	630	
(일반회계 전입금)	-	(889)	(888)	(1)	(-)		
합계		23,747	9,154	8,590	180	14,977	40,515

• 주요쟁점

- 법정지출(의무지출)의 예비비 사용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비용으로 예비비 30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
 - 「기초노령연금법」에 연금지급대상자와 연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규모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전용·불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 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예비비를 사용한 항목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과목(세항)	예비비 배정액	전용액	세출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체결(1834)	506	19 △84	3,251	2,173	832
법무부	외국인 체류관리(1233)	342	△291	13,988	13,049	939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지원(2131)	301	20 △20	3,308	2,819	489
	기록물 효율적관리(2531)	500	△4,065	15,078	13,265	1,734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홍보(1231)	150	437 △250	9,885	8,879	1,006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2931)	200	△241	1,903	1,876	109
국가보훈처	보훈기념사업(1347)	310	-	5,453	4,731	722

□ 당초 예산액보다 예비비 배정액이 많은 경우(목적예비비 제외)

-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도 더 많은 예비비를 배정받거나 예비비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 당초 예산의 부정적 편성, 사정의 급변, 정책의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임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배정·사용한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과목(세항)	세출 예산액 ¹⁾	예비비 배정액	세출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국무총리실	건국60년 기념 사업추진(1333)	-	3,797	4,019	3,549	469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1632)	-	3,980	3,980	2,733	1,247
외교통상부	외교전략연구(2031)	437	1,800	2,195	1,821	37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지원(1231)	1,816	2,500	4,311	4,115	96
국토해양부	박람회유치 기반조성(2231)	2,162	14,424	16,585	16,503	82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1238)	-	200,000	200,000	200,000	-

주: 1) 2008년에 신설된 조직으로 결산보고서에 세출예산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의 경우에는 이용 및 이체 순액임

□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지출

- 조직 신·증설, 직제개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음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사용내용)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국무총리실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소요경비	3,797	3,341	-	456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소요경비	346	320	-	26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 소요경비	3,980	2,733	-	1,247

□ 연례적 일반예비비 지출

- 최근 2~3년간 연례적으로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음

〈연례적 일반예비비 배정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사용내용)	2006년	2007년	2008년
국무총리실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소요경비	3,373	1,320	4,14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관련 비용	3,633	3,469	506
	북한이탈주민 지원	-	1,027	1,068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12,386	3,354	4,574
통일부	새터민 지원	-	5,907	19,206
행정안전부	전직대통령 외국방문 경비	-	130	168
국토해양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	7,509	14,424
해양경찰청	합정 유류구입	11,100	-	9,992

□ 재해대책비 배정시일의 적정성 문제

- 재해발생일과 예비비배정일(대통령승인일) 간에 38~45일이 소요
 - 재해대책예비비 배정이 늦어져 신속한 재해복구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시정의견

□ 예비비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의무지출은 법령에 지출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예비비는 사전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
 -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 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
 - 정책변경 등에 기인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도 더 많은 예비비를 배정받거나 예비비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조직개편은 가급적 중장기적인 조직·인력운영 계획을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
- 동일한 사업에서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억제할 필요
 -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은 본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는 노력 필요

□ 재해대책예비비의 배정시일 단축 등 필요

-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배정시일 단축, 개산예비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대책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
- 소방방재청·국토해양부 등 재해관련 부처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최소한의 재해대책비를 일반회계에 건설비 또는 자치단체이전 비목으로 계상하여 재해발생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35쪽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15 재정용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2008년도 재정용자 사업은 총 26조 4,688억원의 예산현액 중 22조 2,390억원이 집행되어 84.0%의 집행률을 보였음
 - 740억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고 4조 1,557억원이 불용
 - 국민연금기금 4.8%, 남북협력기금 6.5%, 영화발전기금 6.7%, 청소년육성기금 25.0%, 응급의료기금 27.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4.0%, 신문발전기금 38.6% 등이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2008년도 재정용자 사업 집행실적>

(단위: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9년 예산
- 기타특별회계	15,986	15,930	5	51	99.6	13,979
- 기 금	248,702	206,460	736	41,506	83.0	247,290
합 계	264,688	222,390	740	41,557	84.0	261,269

주: 1. 용자금 목(450목) 기준

2. 2009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주요 쟁점

- 일부 재정용자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사업은 2007년과 2008년에 0%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용자대상자들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용자대상 적격자가 없어 집행되지 못했음
 -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사업은 2007년 사업이 시작한 이래로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인 파주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 신문발전기금의 구조개선지원사업은 2005년, 2006년, 2008년에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선지원대상자의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라 용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인쇄및편집장비시설도입자금지원사업 역시 지역신문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인한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2005년 이래로 0~3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재정용자 사업 예시>

(단위: 억원, %)

부처	회계/기금	사업명	집행률			
			2005	2006	2007	2008
국토 해양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99.0	98.2	68.6	66.0
		주거환경개선	69.4	63.6	76.0	60.3
기획 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	-	0.0	0.0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	65.7	0.0	0.0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88.6	23.0	77.9	49.3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동절기수급안정	-	-	64.9	50.3
	수산발전기금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31.5	27.8	71.2	64.5
	축산발전기금	마필육성사업	100.0	73.9	54.5	66.2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신문 발전기금	인쇄및편집장비시설도입자 금지원	0.0	3.3	0.0	30.4
	신문발전기금	구조개선및신규사업지원	0.0	0.0	48.6	0.0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비용유자지원	-	-	79.9	23.9
산림청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재해복구지원	-	53.8	7.3	3.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농어촌전화사업용자	67.7	100.0	16.1	32.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교역·경협자금 대출	54.4	62.2	54.8	1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도개선 사항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재정용자 사업은 정책적 목적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필요

-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집행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사업 방식을 보조사업이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용자대상자가 보다 용이하게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용자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여 용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용자안내 공고문의 발송, 지속적인 광고 등을 통하여 용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52쪽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16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 결산 현황

-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총 3조 3,582억원의 예산현액 중 3조 1,895억원이 집행되어 95.0%의 집행률을 보였음
 - 1,574억원이 2009년으로 이월되고 113억원이 불용되었음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방위사업청의 국과연연구개발사업, 농림수산물품부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00%의 집행률을 보였음
 - 국방부의 장비획득사업이 89.6%, 수리부속지원사업이 90.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국토유지보수사업, 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은 각각 98.3%와 98.5%의 집행률을 보였음
 -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은 가장 낮은 82.7%의 집행률을 나타내었음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소관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9년 예산
국토해양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유지보수	4,294	4,222	68	4	98.3	4,977
		국도시설안전	1,433	1,412	18p	3	98.5	1,772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항만시설유지보수	1,359	1,124	187	48	82.7	1,747
국방부	일반회계	장비획득	2,463	2,208	223	33	89.6	2,363
		수리부속지원	11,337	10,234	1,077	26	90.3	10,987
문화재청	일반회계	문화재보수정비	1,916	1,915	0	1	100.0	2,110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국과연연구개발	6,956	6,956	0	0	100.0	-
농림수산물 식품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수리시설개보수	3,823	3,823	0	0	100.0	4,000
합 계			33,582	31,895	1,574	113	95.0	27,956

자료: 각 부처,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주요 쟁점

- 일부 총액계상예산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월액이 크고 이월률이 높은 사업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교특)과 국방부의 장비획득사업, 수리부속구매사업이 있음
 -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교특)은 2008년에 이월액이 181억원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10% 이상의 이월률을 유지하였음
 - 국방부의 장비획득사업은 2007년에는 228억원이 이월되어 12.5%의 이월률을, 2008년에는 223억원이 이월되어 9.1%의 이월률을 보였음
 - 수리부속구매 사업은 편제장비보강 사업과 달리 2008년에 1,07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이월률이 9.5%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총액계상예산사업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국토해양부	국도유지보수	2005	4,956	4,733	95.5	137	2.8	86
		2006	4,724	4,572	96.8	149	3.1	2
		2007	4,605	4,478	97.2	123	2.7	4
		2008	4,294	4,222	98.3	68	1.6	4
	국도시설안전개선	2005	1,271	1,252	98.5	19	1.5	1
		2006	1,480	1,020	69.0	-	-	459
		2007	1,585	1,567	98.9	18	1.1	0
		2008	1,433	1,412	98.5	18	1.3	3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2005	1,383	1,206	87.3	116	8.4	61
		2006	1,322	1,125	85.1	162	13.5	18
		2007	1,429	1,085	75.9	226	15.8	118
		2008	1,274	1,049	82.3	181	14.2	44
국방부	장비획득	2007	1,830	1,581	86.4	228	12.5	17
		2008	2,463	2,208	89.6	223	9.1	33
	수리부속 구매	2005	6,899	6,672	96.7	222	3.2	6
		2006	7,146	6,607	92.4	536	7.5	4
		2007	9,017	8,110	89.9	763	8.5	144
		2008	11,337	10,234	90.3	1,077	9.5	26

자료: 각 부처,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제도개선 사항

□ 연례적인 이월액의 발생은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의미함

-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집행에 대한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계속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시 집행 예상금액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업 집행 시에는 사업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집행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현재 총액계상예산사업은 각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동 시행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63쪽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분석

• 2008년도 균특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 세입결산 : 예산액 7조 8,377억원, 징수결정액 8조 8,415억원, 수납액 8조 2,735억원, 불납결손처리 91억원, 미수납액 5,588억원
 -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7조 6,382억원, 최종 예산액 대비 4,358억원 초과징수
- 세출결산 : 예산현액 8조 2,357억원, 지출액 7조 9,73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4억원, 불용액 4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8%

〈2008년도 균특회계 계정별 세출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개발사업계정	5,767,579	289,533	86,088	6,143,200	5,896,974	219,100	27,126
지역혁신사업계정	1,676,993	22,359	-	1,699,352	1,684,315	327	14,70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93,135	-	-	393,135	392,491	-	644
합계	7,837,707	311,891	86,088	8,235,687	7,973,780	219,427	42,47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09.5

• 균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성 심화

- 균특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균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
 - 2008년도 결산 상, 일반회계 전입금 실적이 4조 9,308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 전체 균특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6%
 - 2009년도 예산 상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65.5%로 더 증가

〈연도별 균특회계 세입 예산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예산	실적	구성비	예산	실적	구성비	예산	구성비
주세 100%	23,785	22,623	34.2%	25,309	28,294	34.2%	26,439	29.1%
일반회계전입금	23,385	23,385	35.4%	48,447	49,308	59.6%	59,492	65.5%
특별회계전입금	15,869	12,981	19.6%	400	300	0.4%	1,747	1.9%
부담금 등	4,969	7,143	10.8%	4,221	4,834	5.8%	3,091	3.4%
합계	68,008	66,132	100.0%	78,377	82,735	100.0%	90,769	100.0%

주: 1. 실적은 각 연도 수납액 기준임

2. 2008년 특별회계전입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09.6)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균특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성 심화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처리한다”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상충
 -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것은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균특회계의 세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성이 심화되면,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재원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일반회계의 사업조정을 통한 균특회계(향후 광특회계) 재원마련 대책 필요
 - 2010년부터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될 예정에 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도 2010년 9.4조원으로 확대될 예정
 - 새로운 세목 또는 부담금의 신설을 통해서 균특회계 세입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균특회계 세입재원으로 귀속시키거나 균특회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균특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국회 결산심의과정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할 필요

● **균특회계 사업의 실적행률 부진**

- 2008년도 균특회계 사업의 실적행률은 86.5%에 불과하였는 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균특회계 집행률 96.8%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2008년도 각 부처 균특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조 2,122억원,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금 주관기관에 교부·배정한 지출액은 7조 9,483억원
 -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의 실제 집행주체인 지자체의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7조 1,038억원이고 실적행률은 86.5%으로서 집행률과 10%이상 낮음
 - 중앙부처 대부분은 지자체 실적행률이 90% 이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사업의 실적행률이 56.4%, 중소기업청 59.0%, 환경부 78.1%, 산림청 76.7%, 행정안전부 87.3% 등의 순으로 실적행률이 낮게 나타났음
 - 실적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주의” 수준의 시정요구 필요
- 국회 시정요구사항 미이행 사업의 재검토 필요
 - 2008년도 균특회계 실적행률 부진사업 중에서 2007년에 실적행률이 저조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지적받은 사업이 다수 발견

- 연례적인 실적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
- 긴요한 사업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실적행률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체계 변경,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실적행률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국회 예결위의 시정요구를 지적받은 균특회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명	2007			2008		
		예산현액	실지출액	실집행률	예산현액	실지출액	실집행률
중소기업청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156,600	77,766	49.7	192,596	69,857	36.3
국토해양부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15,000	1,813	12.1	15,520	6,666	43.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6,584	3,637	55.2	5,500	2,438	44.3
지식경제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50,000	42,053	84.1	61,500	37,605	61.1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14,569	9,203	63.2	18,114	12,240	67.6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21,000	10,607	50.5	47,820	32,836	68.7

자료: 각 부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II-1)」(2009.5), 부처 확인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09.6)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재원없는 세출이월의 부적정

- 2008년도 균특회계 전체 예산현액 8조 2,357억원의 2.7%인 2,19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008년 정부회계 중 일반회계와 양곡관리특별회계 다음으로 이월규모가 큼
- 균특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앙부처 예산담당자들은 균특세수가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2008년도 균특회계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4,358억원 더 많았기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연도말 균특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즉, 재원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을 인정하고 있지만, 재원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회 결산 심사시 수납실적이 충분함에도 재원없는 이월조치를 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산시정조치 상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균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자원배분**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자원배분 내역**

- 전남(5,398억원), 충남(4,336억원), 경남(4,117억원), 경북(3,941억원), 전북(3,309억원)등의 순으로 배정
 - 현재 기획재정부는 시·도별 배분액을 비공개하고 있음
 - [표 4]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시·도 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균특회계 2008년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결과이며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배정한 배분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특별·광역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에 재원이 더 배분되었고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균특재원이 배분되었음

<2008년도 균특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자원배분 및 주요 재정지표 현황>

(단위: 억원, %)

	균특 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	GRDP 증가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전남	5,398	15.1	7,228	12.7	0.278	3.24
충남	4,336	12.1	3,509	6.2	0.644	8.43
경남	4,117	11.5	3,987	7.0	0.703	3.73
경북	3,941	11.0	7,338	12.9	0.447	6.03
전북	3,309	9.3	5,999	10.6	0.333	4.14
강원	2,746	7.7	4,507	7.9	0.531	2.79
경기	2,536	7.1	0	0.0	1.028	8.17
제주	2,340	6.6	6,816	12.0	-	2.92
충북	1,802	5.0	3,404	6.0	0.564	4.87
부산	1,504	4.2	3,557	6.3	0.853	2.62
광주	965	2.7	3,571	6.3	0.659	4.27
울산	744	2.1	1,135	2.0	0.846	5.2
인천	601	1.7	236	0.4	0.985	4.64
대구	563	1.6	3,675	6.5	0.763	2.86
대전	436	1.2	1,771	3.1	0.835	2.2
서울	380	1.1	0	0.0	1.007	2.48
합계	35,718	100.0	56,732	100.0		

- 주: 1. 균특자료는 2008년 결산기준,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기준임.
 2. 균특 시·도별 배분액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획재정부의 배분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03~2007년) 연평균(기하평균) 증가율임.

자료: 균특 배분액은 각 시·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는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5
 GRDP증가율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09.6.

□ 주로 재정력 기준으로 배분, 경제적 성과와 연계 미흡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지역별 배분액과 주요 지방재정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보통교부세와는 양의 상관관계, 재정력지수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증가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음
- 재정력지수가 작을수록(재정력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균특재원이 배분되었고 균특재원배분과 지역경제성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
 - 보통교부세는 각 시도의 재정부족액의 일정부분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낫다는 것을 의미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이 값이 클수록 재정수요에 비해서 수입액이 커서 재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2008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의 지역별 배정은 주로 형평성 안배 차원에서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에 따라 배정,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유의미한 배분 및 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균특회계 예산배정의 결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적 성과를 보았다면 다음연도에 좀더 유리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성과와 예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각 시도 주요 예산 및 경제지표와 균특회계의 상관관계 표>

	균특개발계정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	GRDP증가율
균특개발 계정	1.00	0.67**	-0.70**	0.35
보통교부세	0.67**	1.00	-0.93***	-0.16
재정력지수	-0.70**	-0.93***	1.00	0.05
GRDP증가율	0.35	-0.16	0.05	1.00

주: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각 시도 균특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균특회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과 예산배분

- 2009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균특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
 -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단위사업을 “19+5”의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
 -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
 -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광역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구성
 - 지역개발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의 한도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에서는 기존 재원배분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지역별 배분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적절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 **균특회계 재원배분의 공개 필요**

- 균특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배분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련 재정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바, 지자체별 배분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개선 필요
-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의 미공개로 균특회계 사업의 지역경제, 균형발전 파급효과,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 연계효과 등을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음
- 균특회계의 계정별 세입·세출내역, 지역별 배분내역과 배분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009. 7, 157쪽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8 특별교부세 지역별 자원배분 내역 분석

● 결산현황

- 2008년도 특별교부세의 예산액 및 교부액은 2007년도 정산분 926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94억원, 전년에 비해 1,867억원 증가
 - 교부총액의 50%인 5,197억원은 지역현안수요(특정현안), 나머지 50%인 5,197억원이 재해대책 및 인센티브에 교부
- 지역별(광역·기초단체 합산)로는 경북(1,296억원), 전남(1,170억원), 경남(980억원), 강원(867억원), 충남(843억원) 등의 순으로 배정
 - 광역자치단체 2,696억원(26.0%), 기초자치단체 7,698억원(74.0%) 배정
 - 전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414억원 증, 기초자치단체는 1,452억원이 증가
 - 광역자치단체 : 지역현안수요 1,230억원(45.6%), 재해대책수요 1,068억원(39.6%) 인센티브 398억원(14.8%)
 - 기초자치단체 : 지역현안수요 3,967억원(51.5%), 재해대책수요 3,631억원(47.2%) 인 이 인센티브 101억원(1.3%)

<2008년도 특별교부세 지역별 자원배분내역>

(단위: 백만원, %)

	광역자치단체(A)	기초자치단체(B)	합계(A+B)	비율
경상북도	24,440	105,138	129,078	12.5
전라남도	22,923	94,057	116,980	11.3
경상남도	21,629	76,323	97,952	9.4
강원도	17,312	69,366	86,678	8.3
충청남도	15,488	68,835	84,323	8.1
경기도	6,233	70,590	76,823	7.4
전라북도	16,977	57,259	74,236	7.1
부산광역시	17,508	54,084	71,592	6.9
충청북도	17,951	45,785	63,736	6.1
대구광역시	22,566	30,016	52,582	5.1
인천광역시	15,984	25,625	41,609	4.0
광주광역시	13,710	21,380	35,090	3.4
대전광역시	15,203	17,250	32,453	3.1
서울특별시	7,814	19,501	27,315	2.6
울산광역시	12,396	14,638	27,034	2.6
제주특별자치도	21,430	-	21,430	2.1
합계	269,564	769,847	1,039,411	10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9.5)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특별교부세 기초자치단체별 평균배정액은 33억 4,700만원, 전년 평균 배정액보다 6억원 가량 증가
 - 경북, 충남, 전남, 전북, 광주지역 기초단체에 대한 평균배정액 40억원 이상

● 행정단위수(기초단체수)에 비례하여 특별교부세 배정

- 도시지역 특별 · 광역시 자치구 보다는 농촌지역 도의 시 · 군에 특별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정
 - 농촌지역 특별교부세가 도시지역의 3.2배
-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지역간 형평성 기준보다는 행정단위수(기초단체수)에 비례하여 특별교부세 배정
 - 기초단체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더 많이 배정, 각 시도 기초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특별교부세 배정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음

< 시도별 기초단체수 및 재정자립도와 특별교부세 배정액의 상관관계 >

	2007	2008
기초단체수-특별교부세 배정액	0.68**	0.69**
재정자립도-특별교부세 배정액	-0.14	-0.17

주: **은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9.5)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초자치단체에게 재해복구사업이 아닌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배정
 -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별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대책수요의 미집행 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문제로 재해예방사업에 배정

< 2008년도 특별교부세 단체별, 수요별 배정내역 현황 >

(단위: 백만원, %)

	2007		2008		증감	
	광역(A)	기초(B)	광역(C)	기초(D)	광역(C-A)	기초(D-A)
지역현안	83,556	342,823	123,025	396,679	39,469	53,856
재해대책	116,075	210,405	106,779	363,078	-9,296	152,673
인센티브	28,510	71,390	39,760	10,090	11,250	-61,300
단체별 합계	228,141 (26.8)	624,618 (73.2)	269,564 (26.0)	769,847 (74.0)	41,423	145,229

주: 괄호안은 각 연도 전체 특별교부세 배분액 대비 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9.5

● 연도말 배정과다

- 연도말 배정액의 과다 : 11~12월 배정액이 총배정액의 69%
 - 지역현안수요의 연도말 배정비율이 43.5%, 재해대책수요의 연도말 배정비율은 93.7%, 인센티브는 100%

-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의 연도말 배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는 것을 전제로 사업규모 10억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연도말에 집중되면 연내 집행의 차질과 해당 사업의 이월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특별교부세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상반기 중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지역현안수요는 해당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대책수요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책수요는 해당 연도 초에 교부한다”라고 규정
- 시책수요 이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연초에 예측가능하고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교부시기를 가능한 연도초기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

- 2009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특별교부세의 수요항목에 시책수요가 추가됨

〈2008년도 특별교부세 수요별 연도말 배정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현안	재해대책	인센티브	합계
1월 ~10월 배정액	293,395	29,769	0	323,164
11월 배정액(A)	82,040	16,120	0	98,160
12월 배정액(B)	144,269	423,968	49,850	618,087
총계(C)	519,704	469,857	49,850	1,039,411
연도말배정비율 ((A+B)/C)	43.5	93.7	100.0	68.9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9.5)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특별교부세 용도의 사용의 문제

□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받았으면서도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

- 용도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연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제한하는 벌칙조항 명문화 필요
- 특별교부세는 특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부해 줄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
- 특별교부세 용도의 사용이 지적될 경우 다음연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에 교

부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지방교부세법」 상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

〈특별교부세 용도와 사용 사례〉

자체명	예산낭비 및 국고사장 사유	목적외 사용규모
○○시 ◇◇구	당초 하수관거설치계획으로 특별교부세 배정,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당초 용도와 다른 사업(기설치 하수관거교체)을 추진	300백만원
○○도 ▽▽시	지방행정혁신과 연관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를 콘도회원권 구매로 사용	250백만원
○○시 ◇◇구	지방의회 의원에게 국외여비를 의회비 항목이 아닌 민관협력 사업용도의 특별교부금에서 부당하게 지급	6백만원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 200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009.7, 183쪽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석

• 결산현황

- 2008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27조 6,602억원, 예산현액은 33조 6,361억원, 지출액 33조 77억원,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3,055억원과 3,230억원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1%, 지출액기준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이 16.0조원이 고 특별회계 지출액이 17.0조원

〈2008년도 국고보조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5,407,150	16,219,032	16,032,742	98.9	18,625	167,665
특별회계	12,253,053	17,417,109	16,974,969	97.5	286,837	155,303
합 계	27,660,203	33,636,141	33,007,711	98.1	305,462	322,96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2009.5

- 국고보조사업 주체별 결산액(지출액) : 민간단체보조 10조 9,923억원(33.3%), 자치단체보조 21조 9,201억원(66.4%), 해외보조 953억원(0.3%)

〈2008년도 회계별, 주체별 국고보조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민간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해외보조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일반회계	2,770,888	3,308,799	12,602,550	12,678,917	33,712	45,025
기타특별회계	3,656,910	7,643,097	8,545,120	9,241,185	12,100	50,267
기업특별회계	38,920	40,418	-	-	2	1
합 계	6,466,718	10,992,314	21,147,670	21,920,102	45,814	95,29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2009.5

• 지자체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연

- 국회예산정책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08년도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결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908개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82.5%에 불과
 - 908건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액(배정액)은 3조 7,307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3조 76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983억원, 실집행률은 82.5%
 - 조사대상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16.0%정도가 제때에 집행되지 못함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 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국고보조 사업건수	보조금 교부액(A)	지자체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대전광역시	46	68,829	33,837	29,787	3,226	49.2
서울특별시	7	37,981	19,846	18,039	96	52.3
울산광역시	34	77,807	46,910	30,462	436	60.3
대구광역시	42	56,284	35,802	10,136	523	63.6
충청남도	73	443,396	299,623	143,645	128	67.6
경상북도	55	394,084	291,429	102,655	0	74.0
제주도	84	190,760	143,426	45,471	1,863	75.2
인천광역시	42	64,345	49,902	11,324	79	77.6
광주광역시	42	130,997	104,759	26,135	103	80.0
전라북도	48	330,929	265,316	65,036	577	80.2
충청북도	77	199,601	160,202	38,881	528	80.3
부산광역시	56	210,004	190,128	19,666	185	90.5
경기도	44	257,686	239,457	17,601	628	92.9
강원도	105	292,696	272,266	19,400	523	93.0
전라남도	61	539,842	510,656	7,281	0	94.6
경상남도	92	435,465	413,326	12,757	2,484	94.9
합계	908	3,730,706	3,076,885	598,275	11,380	82.5

주: 1. 각 시·도의 국고보조사업 중 908건의 균특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주로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각 시·도 결산자료(2009.6)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실집행률 80% 미만의 국고보조사업(238건)들의 보조금집행지연 사유를 조사한 결과 “행정절차지연”에 의한 보조금집행지연이 건수(69건, 비율 29.0%)와 교부규모(3,586억원)로는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한 보조금집행 지연사유가 건수로는 58건, 교부규모로는 3,358억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집행 지연이 건수로는 36건, 보조금 교부규모로는 1,658억원
- “설계 및 착공지연”에 의한 국고보조금 집행지연 사유도 건수로는 32건, 교부규모로는 884억원, “민원발생”에 의한 사유도 건수로는 10건에 보조금 규모로는 569억원, “준공시기미도래”에 의한 사유는 건수로는 6건, 보조금 규모로는 541억원

□ 실적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소홀 : 수시배정전환과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도입 필요

-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전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예산이 이월되고 국고가 사장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

- 예산배정 당시 공정률을 파악하여 공정률이 적절하지 못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고 사전계획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 국고보조금의 자금배정을 일정정도 유보하는 방법을 검토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조정할 필요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제도를 의미
 - 동 제도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보고서」를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

□ 국고보조금의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실집행실적의 국회 제출 필요

- 중앙부처의 ‘집행실적’과 지자체의 ‘실집행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 중앙부처의 보조금 교부에 의한 집행률이 매우 높다라도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사전준비부족에 의한 보조금 집행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집행률’보다 낮은 사례가 다수 발견
- 「국가재정법」 제54조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수준의 시정요구 필요.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의 미비

□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미흡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재정여건(재정자립도)과 분야별 지출 비중에 근거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상향지원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
- 「보조금법시행령」상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영유아보육사업지원” 등에 불과
- 여타 유사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사업은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사업간 형평성 및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적용에 문제

□ 법령에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않은 국고보조사업의 과다

-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1,060개 중에서 기준보조율이 「보조금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것은 전체의 8.5%인 90개에 불과한 실정
-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90개 이외에 나머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중앙정부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가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
- 국회의 예결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심사 시 지방비부담률과 부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사실상 불가능
- 국회의 2008년도 결산심의 시 「보조금법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통합보조금의 도입 미비

- 법령에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지 않는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 포괄보조금 형태의 통합보조금을 도입 확대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단위사업 수준의 통합보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업수행 단위가 기초지자체인 경우 총액으로 기초지자체에 관련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가 세부용도와 조건 등을 결정토록 하면 집행의 자율성이 제고
- 통합보조금이 도입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009. 7, 269쪽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20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분석

• 현황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양적 성장(35.9조원→137.5조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분권수준은 오히려 악화
 -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4년 63.9%에서 2009년 53.6%로 하락, 의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 11.2%를 상회
 -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의 체고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양적 성장이 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자 지방정부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 이후 주요 지방재정지표의 변화〉

	1994(A)	2009(B)	증감(B-A)	평균증가율 (1994~2009)
총예산규모	35조 8,831억원	137조 5,349억원	101조 6,518억원	9.4%
1인당예산규모	78만 8천원	283만원	204만 2천원	8.9%
지방세	11조 2,990억원	47조 670억원	35조 7,680억원	10.0%
1인당지방세부담액 (일반회계)	24만 8천원	95만원	70만 2천원	9.4%
자체수입	16조 5,150억원	80조 8,378억원	64조 3,228억원	11.2%
의존수입 (지방이전재원)	10조 5,275억원	53조 85억원	42조 4,810억원	11.4%
재정자립도	63.9%	53.6%	-10.3%p	-
지방채무액	10조 3,154억원	19조 486억원	8조 7,332억원	4.2%
1인당채무액	22만 7천원	39만 2천원	16만 5천원	3.7%

주: 각 연도 당초예산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 심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 악화

□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의 재정경직성 심화

- 경상경비 비율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 모두 20% 수준을 넘고 있고 인건비 비율의 경우 자치구가 25% 수준에 육박, 특히 자치구의 경우 경상경비비율이 최근 3년간 40% 수준 유지(행정안전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 2008. 12)

〈연도별·단체별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현황〉

(단위: %)

		적정기준 ¹⁾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경비비율	전국평균		17.33	18.55	18.63	18.63	18.45
	특·광역시	13%이하	19.13	9.90	11.35	12.18	11.28
	도	10%이하	8.66	8.48	8.79	9.19	9.72
	시	25%이하	23.70	24.52	23.09	23.36	23.25
	군	25%이하	20.79	21.88	23.20	23.26	22.31
자치구	45%이하	43.63	41.82	40.77	40.83	39.14	
인건비비율	전국평균				11.51	11.21	10.79
	특·광역시	8%이하	-	-	6.24	6.47	5.89
	도	8%이하	-	-	5.37	4.83	5.49
	시	15%이하	-	-	14.11	13.81	13.40
	군	15%이하	-	-	14.55	14.23	13.41
자치구	30%이하	-	-	27.15	26.79	24.92	

주: 1) 적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상의 기준을 의미하며, 과거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표별로 제시하는 기준임

2) 인건비비율은 2005년부터 조사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200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 2008.12

- 2009년 당초예산기준으로 군과 자치구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각각 51.4%와 44.8%,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7.2%와 83.7%
- 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자체별 인건비 비중〉

(단위: 억원, %)

	일반회계 예산총계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각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총예산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특별·광역시	325,831	242,769	209,662	13,514	4.1	5.6	6.4
도	358,000	135,210	116,893	15,120	4.2	11.2	12.9
시	359,234	146,100	95,732	33,062	9.2	22.6	34.5
군	210,678	37,459	17,967	19,258	9.1	51.4	107.2
자치구	152,334	56,802	30,416	25,455	16.7	44.8	83.7
합계	1,406,077	618,340	470,670	106,409	7.6	17.2	22.6

주: 인건비 비율이 100%이상인 것은 해당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4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액이 전년 발행액 대비 117.1%가 증가한 4조 4,092억원에 이르고 있고 향후 부족한 지방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검토중임
- 광역자치단체의 향후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필요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발행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2008 발행액(A)	2009		증감액 (B-A)	증감률 (B-A)/A	누적 채무액
		발행한도액	발행계획액 (B)			
광역자치단체 합계	20,310	37,320	44,092	23,782	117.1	129,720

- 주: 1.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발행계획액은 2008년도 말 당초예산편성 기준임.
 2. 기초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고 발행계획액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금액으로서 기준에 의해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음
 4. 누적채무액은 발행계획액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2009. 4

• 자치단체별 재정의 효율성 평가 :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출의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비중인 행사·축제경비 비율과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증가,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7.9%, 2007년 13.5%로 증가폭이 연도별로 커지고 있음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추세〉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3,731	4,600	5,643	6,091	6,912
증가율	-	23.3	22.7	7.9	13.5

자료: 행정안전부

- 2009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정부 전체적으로 행사·축제·민간이전경비의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1% 증가하였고, 특히 행사지원비(31.0%), 민간 행사보조(15.7%) 예산의 증가폭이 컸음
- 지방정부의 행사·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낭비적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

〈2009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민간이전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	2009	증감	증감율
행사지원비	177,327	232,248	54,921	31.0
행사실비보상금	166,036	186,982	20,946	12.6
민간경상보조	6,326,828	6,749,558	422,730	6.7
사회단체경상보조	202,573	153,897	-48,676	-24.0
민간행사보조	484,543	560,665	76,122	15.7
행사·축제·민간이전비용 총계	7,357,307	7,883,350	526,043	7.1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4.

□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건전예산」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운동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는 유효하지 않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인센티브제 도입 :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관할 자치구의 수요자체노력(건전재정운영 등)과 수입자체노력(징수노력 제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지방예산 낭비사례

□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 : 민간이전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의 형식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부적절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원

〈지방자치단체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지자체 명	예산낭비 및 국고사장 사유	예산낭비규모
00군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 보조금명목으로 지원대상 아닌 특정 단체에 보조금 편법 지원	200백만원
00시	「해외산업시찰」 명목의 국외여행경비(민간경상보조)를 보조금 명목과 무관한 사회단체의 관광성 국외여행경비로 지원	103백만원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연도말 예산집행실태」, 2009.4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하나의 과목(통계목)으로 통합하여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을 시정요구 필요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반납하여 국고를 사장해 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
 - OO광역시의 경우 완료된 도시철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1년 이상 미반납하였고, OO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일반 행정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으며, OO도와 OO시의 경우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
- 정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교부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정산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취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지자체는 이를 반납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이자까지 교부하는 것은 아님
-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 부적절한 사업집행 : 지방재정 · 투융자심사 전 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재원조달이 미진하거나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기 투자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됨
 -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투 · 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 2009. 7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㉒ 유가환급금 분석

● 결산 현황

- 유가환급금은 2008년도 유가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상승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시행된 제도임
 - 일정소득(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 형태로 지급
 - 2008년 12월말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에 근로자자영업자 등 총 1,435만 명에게 2조 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

〈유가환급금 2008년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잠정)〉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합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획(A)	843	19,200	443	10,550	364	4,400	1,650	34,150
실 적(B)	742	15,298	344	7,006	349	4,216	1,435	26,520
증감(B-A)	△101	△3,902	△99	△3,544	△15	△184	△215	△7,630
증감율(B/A*100)	88.0	79.7	77.7	66.4	95.9	95.8	87.0	77.7

주 : 1. 계획은 2008년 10월 국세청 추계 기준, 실적은 2008년 12월말 국세청 발표결과(잠정치) 기준.

2. 계획 및 실적치에는 2009년 5월 환급신청과 6월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 (약 80만명 추정)의 인원 및 지급금액이 포함되지 않음 수치임.

● 주요 쟁점

-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가환급금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고 지원효과가 큰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명시적인 정책목표와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상충됨으로써 정책대상의 선별성(targeting) 확보가 미흡하였음
 - 유가환급금의 도입 당시 명시적인 정책목표는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는 중저소득층의 교통비 보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두었음. 그러나 작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운용된 측면이 큼
 -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을 2007년도 소득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달하도록 선정하여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도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시적인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 반면 유가환급금 지원기준을 2008년도 경제활동참여자에 국한함에 따라 2008년도에 실직, 은퇴, 폐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이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 등 집행과정에서의 일부 혼선이 야기

□ 2008년도 유가환급금 지급결과 당초 추정액(3조 4,15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조6,520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임

- 국세청이 추산한 인원 1,650만명과 금액 3조 4,150억원에 비하면 각각 계획 대비 87.0%, 77.7%의 집행률을 보임
- 국세청의 발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8년도 경제활동인구 변동 등 외부적 요인 보다는 주로 추계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추계 근거인 2007년도 기준 소득자료에는 포함되었으나 2008년도에 실업, 은퇴, 폐업, 출국, 사망 등으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약 115만 명)의 지급금액 감소분 등이 당초 추계에서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임
 - 그 밖의 사유로는 2008년도 12개월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 계산 감소분, 순수 미신청자 68만 명 등
- 대규모 재정사업의 소요액 추정은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정책효과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정보이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가환급금과 같이 일정 부분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재정지원 사업을 전액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큼

- 2008년도 유가환급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에게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과 무관하게 유가환급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임
- 조세환급금이 아닌 재정지출의 성격을 갖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도 유가환급금과 같이 조세환급과 재정지출(보조금)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
 - OECD의 경우 ‘Interpretative Guide § 20 and § 21 of the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non-wastable tax credit의 재정지출성격에 의해 세입을 축소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08),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 국세청, 「유가환급금 지급결과(잠정치)」 보도자료 등

[담당] 정지은 경제분석관(788-4666)

22 공기업 외화부채 분석

• 공기업 환관리 현황

- 24개 공기업 중 13개 공기업이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이를 헤지(hedge)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실시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환 위험에 노출
 - 13개 공기업은 외화부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계약
 - 13개 공기업 중 9개 공기업은 외화부채의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100% 파생상품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4개 기관은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파생상품거래를 일부 실시하거나 미실시

•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환 위험에 노출되어 2008년 외화부채와 관련되어 7,304억원의 손실 발생
 -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외화 채권 중 30%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헤지지를 실시하여 2008년에 외화부채 관련하여 △4,591억원의 손실 발생
 - 한국석유공사는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별도의 파생상품거래를 실시하지 않고 이로 인해 2008년에 발생한 외화관련 손익은 총 △1,385억원에 이룸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외화채무(엔화증권) 중 76.93%가 환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2008년과 같이 급격하는 환율 변동 상황에서 △1,328억원의 손실 발생

• 시정의견

- 환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정부는 지침을 두어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 노출에 대해 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환 위험에 노출되어 2008년의 경우 큰 외화 환산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 관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담당] 이은경 사업평가관(788-4671)

㉓ 공기업 지분증권 분석

● 결산 현황

-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과 지분증권 포함한 투자자산은 37조 2,944억원
 -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중 2007년 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29조 8,982억원으로 2003년의 24조 2,171억원에 비하여 5조 6,881억원 증가
 - 공기업 전체의 지분증권 중 한국전력공사의 발전5사를 포함한 지분증권 투자가주를 이룸

● 주요 쟁점사항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의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액은 후순위채권 손실액을 포함하여 7,099억원
 - 매도가능증권에서 817억원의 감액손실 발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1,129억원의 지분법손실 발생
 - 후순위채권에서 4,756억원의 감액손실 발생
 - 기타 지급보증의 확정부채화로 인하여 398억원 손실 발생
-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공기업의 우발채무 가능성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주) 차입금 지급보증 379억원의 대지급 가능성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결손 누적된 동화열전(유) 차입금 관련 지급 보증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칠곡엔바이로(주) 주식을 자회사 차입금 관련 담보 제공

● 시정의견

- 공기업의 사업과 연관성 낮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피투자회사의 지속적 영업악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므로 자회사 경영실적 관리 등 필요
- 공기업의 자회사 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무리한 자회사 보증을 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시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 지분증권 손실 현황 평가」, 2009

[담당] 이은경 사업평가관(788-4671)

제 3 부

쟁점사업 분석

기획재정

1 정책연구 용역 관리 강화 필요

• 결산 현황

- 국회는 2007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비중: 73%) 및 이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음
 - 2008년도 결산 결과 전체 연구과제 4,915건 중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과제는 2,966건으로 60.3%이고, 과제가 당해연도에 완결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된 과제는 1,172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쟁점

-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과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95.2%임
 - 다음으로 법무부 94.2%, 지식경제부 93.2%, 외교통상부 92.6%, 통일부 88.9%의 순서임
- 연구용역 과제 중 이월과제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소방방재청으로 80.7%임
 - 다음으로 보건복지가족부 70.8%, 행정안전부 48.8%, 국토해양부 47.8%, 환경부 35.0%, 농림수산식품부 28.0%, 식품의약품안전청 25.4%의 순서임
 - 이월과제가 많은 이유는 계약시점이 상반기 이후로 늦어졌기 때문이며, 전체 연구과제 중 6월 이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50.5%에 달하는 2,483건임
 - 6월 이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비중이 높은 부처: 관세청(96.3%), 통일부(96.3%), 행정안전부(79.5%), 소방방재청(78.9%), 금융위원회(78.3%), 농촌진흥청(76.6%), 보건복지가족부(70.8%), 여성부(70.0%)

• 시정사항

- 정부는 시정요구를 반영하기위해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상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유찰이 계속되는 연구과제는 중지할 필요가 있고, 계약을 위배하여 이월을 발생시키는 연구수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09.

[담당] 서세욱 분석관(788-4625)

② 정부출자기관의 배당률 상향조정 등 이익잉여금 관리 필요

● 결산 현황

□ 2008년도 정부출자수입은 9,378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6.02%를 차지하여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수입(47.8%)은 국채발행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고, 전년도이월금(40.9%)은 새로운 세원창출을 위한 수입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정부출자수입은 중요한 세원임

〈정부출자기관별 최근 3년간 배당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5 순익	배당율	배당 성향	배당 세입	2006 순익	배당율	배당 성향	배당 세입	2007 순익	배당율	배당 성향	배당 세입
산업은행	24,217	4.80	1634	3,572	21,008	3.63	1424	2,702	20,476	3.64	1465	2,709
한국전력	24,486	23.00	2988	1,776	20,705	20.00	30.00	1,355	15,568	15.00	2999	1,016
기업은행	7,785	8.00	2354	935	10,533	11.00	23.93	1,286	11,679	11.50	2256	1,344
토지공사	6,078	5.20	2071	923	5,831	5.55	23.03	985	9,692	5.72	2951	2,097
주택공사	2,448	0.93	2448	507	1,958	0.68	2627	447	5,601	1.81	2751	1,187
수자원공사	2,188	0.60	1613	317	2,170	0.63	1802	353	1,489	0.42	1753	236
가스공사	2,464	34.60	5001	266	2,405	22.00	32.94	228	3,648	28.00	2787	291
수출입은행	2,245	0.44	6.13	80	1,683	0.51	10.00	101	1,843	0.74	1336	148
조폐공사	115	23.00	1322	15	296	15.00	33.51	99	178	71.33	2650	47
농어촌공사	400	0.20	6.16	25	107	0.09	10.02	11	113	0.1	1124	13
KOTRA	53	35.00	1985	10	82	60.00	22.05	18	111	8.32	12.00	13
감정원	90	25.00	16.68	7	64	18.00	16.94	5	37	9.24	15.01	3
KAMCO	66	1.00	21.60	6	298	3.00	26.16	33	549	5.6	26.49	62
도로공사	526	0.02	6.37	5	586	0.03	10.03	7	538	0.03	11.13	7
유통공사	20	0.60	19.47	4	50	1.50	20.00	10	56	1.28	15.10	8
관광공사	60	1.00	5.44	2	190	15.12	25.84	27	548	25.37	15.00	45
석유공사	2,795	0.60	7.49	1	1,852	0.47	10.06	1	2,067	0.49	11.11	1
한국공항	-	-	-	-	403	0.30	15.56	34	757	0.58	16.02	66
부산항만	-	-	-	-	211	0.07	10.36	22	386	0.14	11.01	42
광물자원공사	-	-	-	-	-	-	-	-	44	0.12	11.06	2
주택금융공사	-	-	-	-	-	-	-	-	99	0.30	12.85	2
물납주식	-	-	-	53	-	-	-	38	-	-	-	39
합 계	76,036	9.65	17.85	8,504	70,432	16.45	19.95	7,762	75,380	9.03	17.98	9,378

주: 평균배당율 및 평균배당성향은 일반회계 배당세입 기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평균

• 주요 쟁점

- 배당실시 근거가 없거나 사내유보를 이유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정부배당 실시 필요
 -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비율 증가는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귀결되어 도덕적 해이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
 - 과다한 사내유보는 유형자산 등 사업확장에 소요되기 보다는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이자수익 등은 직원의 복리증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고 지급근거 없는 수당을 지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0.09%만 정부배당하고 사내유보한 채 성과급 지급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이익금 처리 및 정부배당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음

• 제도개선 사항

- 이익준비금적립비율 인하 등 및 사업확장적립금 엄격히 통제할 필요
 -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익금의 20%이상을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으로 20%이상을 적립하여 이익금의 40%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어,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비율 10%이상보다 과다함
- 정부가 제정한 배당에 관한 기준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완하고, 최저배당성향 도입 등을 통해 이익금의 정부배당 또는 국고납입확대 등 제도개선 요망
 -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은 배당에 관한 기준이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확보 곤란
 -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저배당율(배당금/납입자본금) 또는 최저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규정할 필요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권 검토보고」, 2009.

[담당] 서세욱 분석관(788-4625)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결산 현황

□ 결산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사업은 당초 계획 6,235억원의 91.5%인 5,704억원이 지출되었음

- 그렇지만 용자사업 중 ‘호남권 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수도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건설사업’,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음

•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 사항

□ 용자사업 관리체계 개편 필요

- 공자기금 용자사업 관리체계상 실질적으로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집행하는 기획재정부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 사전·사후평가 및 집행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용자사업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각 소관 부처가 담당하여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용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대출금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 여부 및 대출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대출관리 기능과 용자계정 관리기능이 소관부처와 공자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사후관리 불철저가 우려됨

- 최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자사업의 경우에도 부정 대출이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가 용자 목적에 맞게 지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 노력이 요구됨

□ 용자기관 지급 수수료 인하 필요

- 공자기금이 용자기관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는 대출대상의 유형에 따라 0.5%p~1.5%p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수수료 적용 기준은 대출 대상에 따라 단순하게 결정되고 있는데, 공자기금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 2009.
[담당] 서세욱 분석관(788-4625)

4]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의 부채 조기 상환 검토 필요

• 결산 현황

□ 외국환평형기금의 2008년도 여유자금 규모 전년도 대비 급증

-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12.1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조원 증가하였고, 2008년말의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34.5조원에 달하여 전년도 33.9조원 증가하여 여유자금 규모 급증
 - 여유자금 운용평잔: 연간 보유하고 있었던 금융상품의 일일 잔액을 평균하여 산정
 - 여유자금 운용잔액: 연말에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금융상품의 잔액
- 이는 2008년 중 보유하고 있던 외환의 지속적인 매도에 기인

□ 외국환평형기금의 2008년도 말 자산부채는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

- 자산은 86.2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조원 증가, 부채는 96.0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조원 증가하여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
- 이는 외국환 매도로 인한 여유자금 증가로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부채 상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증감
원화채권	29,994	-	△29,994
외화채권	67,218	51,774	△15,444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800,000	887,819	87,819
차입금 합계	897,212	939,593	42,381

자료: 외국환평형기금 결산보고서 중 대차대조표에서 발취

• 주요 쟁점

□ 과도한 여유자금의 보유는 정부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기금의 여유자금은 향후 외화자산 매입을 위해 일정규모의 여유자금은 필요
- 그러나, 정부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제도개선 사항

□ 여유자금의 부채 조기 상환 검토 필요

- 향후 외화자산 매입에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외평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외평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를 조기상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담당] 정금희 예산분석관(788-4627)

5 관세청 가산금 수납액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 결산 현황

- 가산금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체납 첫 달에는 3%이며 그 후 매1월 경과시마다 1.2%씩 추가되어 최대 5년간 체납액의 총 75% 상당의 체납액이 가산됨
- 2008년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은 51억 9,500만원으로 2007년 33억 4,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5.2%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미수납액이 741억원 1,300만원, 불납결손액도 209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음

• 주요 쟁점

- 2008년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은 5.2%에 불과하며, 2008년에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은 209억 9,000만원으로 체납자 무재산 등을 사유로 결손 처리한 가산금이 200억원을 상회함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05	3,882	92,789	4,021	4.3	73,812	14,956
2006	4,828	110,961	4,332	3.9	81,316	25,313
2007	5,252	108,975	3,348	3.1	78,554	27,073
2008	4,749	100,298	5,195	5.2	74,113	20,990

자료: 관세청

• 제도개선 사항

- 가산금의 수납률 저조와 과도한 불납결손 처리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손실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취득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납결손 처분 이후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6 원자재 비축사업의 적정재고 부족

• 결산 현황

- 2008년도 원자재 비축실적은 7,219억원으로 계획 대비로는 103.1%, 전년 대비로는 99.4% 수준임
 - 주요 구매품목으로는 구리 3,441억원(44,580톤), 알루미늄 2,212억원(78,221톤), 니켈 463억원(1,914톤) 등임
- 2008년도 원자재 방출실적은 6,206억원으로 계획 대비로는 103.4%, 전년 대비로는 108.1% 수준임
 - 주요 방출내용으로는 구리 2,759억원(35,367톤), 알루미늄 2,257억원(71,398톤), 니켈 542억원(2,028톤), 주석 215억원(967톤), 아연 214억원(9,180톤) 등임

• 주요 쟁점

- 2008년 말 원자재별 재고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국내수입수요 기준 적정재고 60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27일분만을 확보하고 있음
 - 실리콘은 12.8일분을, 망간은 12.7일분 만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재고를 제외한 실제 운영재고는 2.8일분과 2.7일분에 불과함
 - 구리와 연피는 각각 22.3일분과 22.8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재고를 제외하면 각각 12.3일분과 12.8일분을 확보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양을 비축하고 있는 알루미늄은 23.9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안전재고를 제외하면 운영재고는 13.9일분에 불과함

• 제도개선 사항

-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 물가안정 등 원자재 비축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적정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방출 또는 비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조달청이 원자재 재고수준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원자재 비축 재원인 회전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조달청의 목표인 2012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회전자금 증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우선 조달청은 2009년 말 까지 주요 원자재를 국내수입수요의 40일분 이상 확보할 계획이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회전자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지식경제

①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괄 전용 및 기술료 활용 부적절

• 결산 현황

-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진흥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략기술개발사업은 7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4,413억 6,600만원임
 - 100억원을 단위사업들 사이에 전용하고, 1,000만원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환차손 보전에 이용하여 4,41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주요 쟁점

- 기획재정부의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에 의하여 단위사업간 전용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였음
 - 7개 단위사업 중 5개 단위사업의 사업비는 약 3%씩 감액하였으며, 2개 단위사업은 약 10%씩 전용 증액하여 집행되었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반도체디스플레이전략기술개발	96,226	-2,940		93,286	93,286	96.9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42,887	-1,350		41,537	41,537	96.9
산업소재전략기술개발	58,400	-1,740		56,660	56,660	97.0
차세대융합전략기술개발	47,696	-1,560		46,136	46,136	96.7
바이오의료기기전략기술개발	64,500	7,000		71,500	71,500	110.9
제조기반전략기술개발	102,846	-2,410	-10	100,426	100,426	97.6
지식서비스전략기술개발	28,811	3,000		31,811	31,811	110.4
합 계	441,366	10,000 -10,000	-10	441,356	441,356	100.0

- 유사성 및 시급성이 부족한 단위사업간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전용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사업비를 일괄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에 기술료 180억원을 추가하여 집행하였음
 - 당초 예산 4,413억 6,600만원에 기술료 180억원을 추가함에 따라 실제 사업에 활용한 예산은 4,593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1%에 이룸
 - 기술료는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술료를 예산사업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의 측정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워지게 됨

• 제도개선 사항 및 시정의견

- 예산사업에 기술료를 추가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료 사업은 세출예산과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pp.49-59.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② 수출보험기금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계약체결한도 설정 필요

• 결산 현황

- 수출보험기금의 2008회계연도 운용 규모는 4조 2,236억원으로 계획보다 1조 9,284억원이 늘어났음
 - 환-이자율 리스크헷지 지원 항목에 당초 대비 197.6% 증가한 2조 3,65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여유자금 회수가 당초 대비 133.4% 늘어난 2조 861억원에 이르는 등 조달 내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주요 쟁점

-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실 및 현금지출 증가로 인하여 중장기자산을 중도매각한 결과 기금규모가 급감하고 운용수익률이 악화됨
 -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2,2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기금배수(=유효계약액/기금조성액)가 47배에 이르러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됨
-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실은 환차손 및 투자자산 중도환매로 인하여 발생
 - 해외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하는 수출자가 가입하는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은 낙찰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수출보험공사가 환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8년 하반기에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서 대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외환거래 청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산을 중도환매하면서 추가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대규모 손실에 의한 가용기금의 축소와 높은 기금배수는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 약화를 초래

• 제도개선 사항 및 시정의견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대한 계약체결한도 설정 및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총한도 및 예비한도로 설정되고 있는 계약체결한도를 개선하여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대해서는 종목별 계약체결한도를 설정하도록 「수출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출보험법」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면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3호에 의한 의무지출에 해당하게 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차입이 가능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pp.60-71.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③ 전력산업기반기금 842억원 자산운용 손실과 자산운용지침 위반

● **결산 현황**

□ 2008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총 수익은 1조 2,494억원, 총비용은 1조 4,128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1,634억원 발생함

● **주요 쟁점**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2008년 펀드 운용에서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지침에서 자산배분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허용된 위험 수준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자금을 수익률 위주로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함
 - 중장기 자금의 99.9%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으며, 펀드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1.6%에 불과한 반면, 혼합형에 49.4%, 주가지수연계펀드(ELF)에 43.7%를 투자하여 2008년 펀드 운용에서 842억원 손실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주가지수연계펀드(ELF)의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동시에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전력산업기반기금 2008년 자금 운용성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잔 액	연평균	손 익	연환산 수익률	비중		
단기자금	11,205	74,262	4,149	5.59	10.97		
중장기 자금	정기예금	0	314	16	5.30	0.05	
	펀드	채권형	0	7,460	199	2.66	1.10
		혼합형	60,000	224,736	-9,320	-4.15	33.20
		ELF	170,000	198,798	-77,117	-38.79	29.37
		기타	0	24,139	2,029	8.41	3.57
	계	230,000	455,132	-84,209	-18.50	67.24	
소 계	230,000	455,446	-84,193	-18.49	67.29		
공자기금	170,000	147,131	7,798	5.30	21.74		
계	411,205	676,839	-72,246	-10.67	100.00		

자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제도개선 사항**

□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지침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군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침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력기반조성센터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담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31)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 결산 현황

- 국·내외 자원 개발사업 예산 1조 6,110억원 가운데 1조 6,109억 9,700만 원을 집행함
 -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유전개발을 위한 한국석유공사 출자예산을 3,647억 원에서 9,647억원으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예산을 3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함

● 주요 쟁점

- 2008년은 유가 및 광물자원의 급등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공사의 출자금 예산을 확대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2008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2008년 해외직접 투자실적은 계획과 비교할 때 저조한 편임
 - 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였고, 2008년에도 3조 3,919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2조 4,756억원에 그침
 - 2007년에는 출자금이 투자실적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용자사업의 용자금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여 오히려 사내에 1,506억원을 유보함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및 재원조달의 계획·실적(2006~2008)〉

(단위: 억원, %)

구분	투자액			출자금		에특 용자		자체 조달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06	7,738	6,197	80.1	1,645	1,645	871	795	5,222	3,757
2007	11,305	2,960	26.2	3,547	3,547	1,513	919	6,245	-1,506
2008	33,919	24,765	73.0	9,647	9,647	1,169	1,709	23,103	13,409

- 주: 1. 2008년도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임.
 2. 에특 용자는 해외자원개발용자사업의 성공불용자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을 의미함.
 3. 2007년 자체조달에서 -1,506억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가 계획보다 미진하여 1,506억원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지식경제부

● 제도개선 사항

-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해외자원개발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담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31)

5 부적정한 예산 전용을 통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의 신규 추진

• 결산 현황

- 시장경영혁신지원(보조)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또는 고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09년 예산은 27억 1,900만원이었으나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2억 8,200만원을 전용 받아 70억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정부는 2008년 42억 8,200만원을 전용하고 6,800만원을 조정하여 총 43억 5,000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 주요 쟁점

-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전용을 실시하여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저해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근거법률, 지원대상, 지원형태, 지원기관 등이 차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두 사업이 같은 프로그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전용
 - 2008년 중 긴급하게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재정법은 전용을 할 때,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의 2008년 실집행액은 전체 사업비의 3.9%인 3억 900만원에 불과하여 2008년에 동 사업을 위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
 - 정부는 2008년 예산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예산에 불과함. 즉, 2008년에 사업비로 지원한 43억 5,000만원은 사실상 2009년에 편성·지원하여도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문화관광형으로 지정된 4개 시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으로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9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

• 제도개선 사항

- 향후 정부는 예산의 전용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그 대부분을 다음해에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정부내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용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담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31)

⑥ 신용보증기관 예산 절감 계획의 미래보증 수요 예측 미비

• 결산 현황

-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08년 예산 2,7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사업에 15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에 50억원 각각 전용하여 지출하였음

• 주요 쟁점

- 동 사업을 예산절감 대상사업에 선정한 것은 부적정함
 -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사업 예산은 보증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유통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는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2009년 예산 편성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국회는 2009년 예산을 1조 1,000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조 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함
-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음
 - 정부는 매출채권 보험계정 출연사업과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 중 어느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2008년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하였음. 이러한 하반기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면 하반기에 미지급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정부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KIKO사태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12월에 매출채권 보험계정으로 50억원을 전용하여 집행

• 제도개선 사항

- 향후 정부는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성격,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담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31)

㉞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에너지원별 투자 비중 부적절

• 결산 현황

- 지식경제부는 국내외자원개발 프로그램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음
 - 2008년도 예산 총액은 1,944억원이며, 9억 600만원을 전용증액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음

• 주요 쟁점

- 예산 편성시 에너지원별로 설정한 기술개발 예산과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있음
 - 에특을 재원으로 수행된 태양열, 바이오, 지열 등에 대한 투자는 예산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된 풍력, 석탄이용,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예산 대비 60% 수준에 불과
 - 폐기물,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분야는 예산보다 약 20%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가 에너지원별 투자우선순위와 무관하거나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음
 - 2003년에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및 2008년 9월에 발표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에서 설정한 에너지원별 투자비중과 2008년도의 투자 결과는 차이가 있음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원별로 당초 예산과는 달리 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분야별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예산이 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조정이 에너지원별 투자비중 또는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제도개선 사항 및 시정의견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신재생에너지 장기 목표를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에너지원별로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 pp.77-82.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8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 집행결과 점검

• 결산 현황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2008년 상반기 원료비 상승 부담액의 4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임원 등의 인건비 반납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요금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전제로 보조금 예산을 의결함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사업 예산 집행 경과〉

일 자	내 용
‘08. 9.18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통해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사업’을 마련하고 1조 40억원 지원 결정(한전: 6,680억원, 가스공사: 3,360억원) * 한전 및 가스공사 자구노력계획을 예결위 보고 후 예산 배정하도록 부대의견
‘08.11.20	한전 및 가스공사 자구노력계획 예결위 보고 * 예결위에 한전(1조 2,180억원), 가스공사(5,000억원) 자구노력을 통해 서민용 전기 및 가스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08.12. 5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지식경제부)
‘08.12.19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사업자금 집행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와 공동으로 2008년에 1조 2,18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비하여 원료비 비중이 높고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적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
- 정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 외에도 한전과 가스공사가 추가적으로 자구노력 할 것을 계획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계획〉

(단위: 억원)

	당초			추가자구노력 계획		
	2008	2009	계	2008	2009	계
한전	12,180		12,180	12,718	3,600	1,6318
가스공사	2,400	2,600	5,000	2,400	2,825	5,225

주: 추가자구노력에는 2009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시 추가적으로 하기로한 자구노력 계획은 반영되지 않음
자료: 지식경제부

● 집행결과 점검

□ 2008년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는 당초 1조 2,718억원을 절감하기로 하였으나 1조 3,597억원을 절감하였음

○ 자구노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선유지비 부분임. 수선유지비는 송전철탑배전설로 등의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절감계획에는 유지보수를 일부 미루거나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던 유지보수를 자체 추진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그 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유지보수의 지연 부분은 한전 및 자회사가 향후 자체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움

<2008년 자구노력 계획 대비 실적(한전+자회사)>

(단위: 억원)

구 분		당초계획	최종실적	차이
수선유지비	·계획보수·보강공사 조정	6,704	6,514	△190
지급수수료	·계약방식 개선 및 외부용역 축소	1,257	1,805	548
에너지절감	·업무용차량 축소 운영 등	273	246	△27
교육훈련비	·후순위 과제비 조정	790	1,477	687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소모성 사무경비 절감	1,118	1,006	△112
행사축소 등	·불급행사, 광고축소 등	304	274	△30
인건비 반납	·인건비 반납, 신규채용 조정	275	479(인건비292)	204
기 타	·기타 일반경비 절감	1,997	1,796	△201
합 계		12,718	13,597	879

자료: 지식경제부

□ 가스공사는 2008년에 2,400억원을 자구노력으로 절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624억원을 절감하였음

○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감 부분 계획에서 계획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동절기 평택화력의 발전정지 및 인천 지역 해수온도의 하락 등으로 설비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2008년도 가스공사 자구노력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절감		비규제부문 수익		합 계
	경비 절감	에너지절감	해외 지분투자수익	기타 수익	
계 획(A)	450	50	1,600	300	2,400
실 적(B)	1,058	△224	1,628	162	2,624
차이(B-A)	608	△274	28	△138	224

주: 1. 경비절감은 인건비 절감 150억원 등을 포함하여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한 것임

2. 기타 수익은 LNG

자료: 지식경제부

[담당] 이화실 예산분석관(788-4631)

9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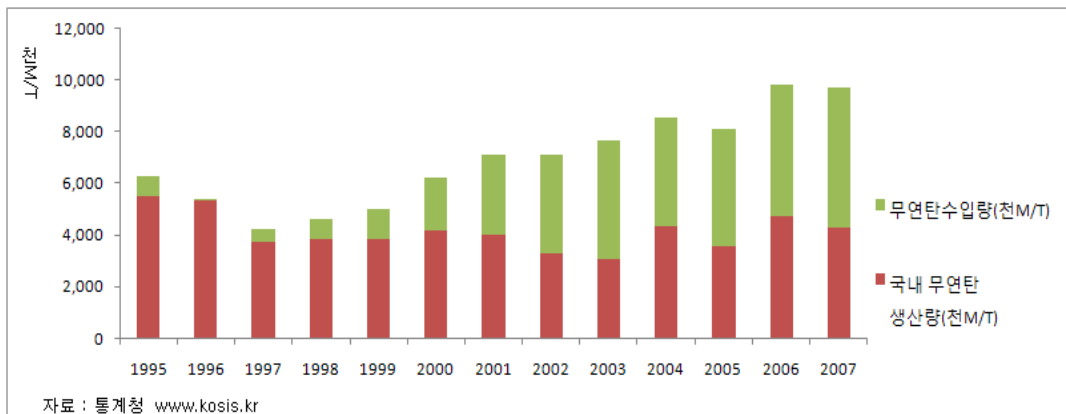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1,438억원을 전액 지출

•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 사항

□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국내 잉여 무연탄 사용에 따른 발전사의 손실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누적 지원액이 1조 2,840억원임
 - 무연탄발전지원사업과 함께 석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및 관세 면세제도가 있음
- 국내 총 무연탄 소비량은 1997년 최저 수준이었고 국내 무연탄 생산량으로 대부분의 수요를 충당하였지만 이후 무연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가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 무연탄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내 무연탄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상황으로 기존의 무연탄지원사업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내 무연탄 소비량〉



□ 무연탄 면세의 재검토 필요

- 무연탄은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며 가정용 연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비과세 에너지원임. 이는 에너지원간 가격체계에 교란을 일으켜 무연탄 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지원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배치
 - 수입 무연탄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평가」, 2009.3.

[담당] 허가형 평가관(788-4679)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 결산 현황

- 2008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2,347억원의 예산을 통해 총 2,057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 기술력이 입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167개의 선도과제에서 1,615억원 이,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890개의 실용과제에서 703억원 이 출연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 주요 쟁점

-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총 1조 3,300억원을 투입하여 17,775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과제당 평균 약 1.1억원의 과제규모에 비하여 사업선정, 중간점검, 성과점검 등의 복잡한 성과점검 수행
 - 하지만, 성과관리가 과제별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나 경영 능력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매출액, 기술혁신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 과제에 한하여 3년간의 기술개발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 결과가 DB화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DB 형태로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에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 및 DB 작성 방안 반영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2009.

[담당] 윤성식 사업평가관(788-4677)

국토해양

1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용·조정에 의한 사업 변경

• 결산 현황

-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시·관 내 통과교통을 우회시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2008년 결산 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78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61억 800만원 중 99.9%인 1조 49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08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조정	추경증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
합 계	830,500	1,208	-3,600	178,000	1,006,108	1,004,985	1,123
조사설계	37,000	1,093	-3,600	-	34,493	33,395	1,098
건설사업	793,500	115	±224,809	178,000	971,615	971,590	25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5

• 주요 쟁점

-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사업의 반복적 전용(전용 재원화)
 - 2008년 예산액 370억원 중 36억원이 타 사업비로 전용되었고, 매년 당초 예산액의 10 ~ 16%가 타 사업비의 전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

〈최근 3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전년이월	전용 (B)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전용률 (B/A)
2006	35,531	21,763	-5,701	51,593	44,173	7,309	16.0
2007	39,093	7,309	-5,470	40,932	39,838	1,093	14.0
2008	37,000	1,093	-3,600	34,493	33,395	1,098	9.7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5.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과도한 전용·조정에 의한 사업 변경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용·조정에 의한 사업 변경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형해화 할 수 있음
 - 2008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당초 예산 7,935억원의 28.3%에 해당하는 2,248억원이 전용 또는 조정이 발생
 - 7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제외한 62개 사업에서 전용·조정이 발생하여 과도한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음

- 특히 가흥-상망, 양곡-완양, 북일-남일1-1, 관산-벽제, 삼가-대촌, 흥사-연정, 소정-배방2, 무계-삼계2 등 8개 사업의 경우 전액 타 사업비로 전용 또는 조정되어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 국도대체우회도로 추경예산 편성 부적정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780억원의 52.3%에 해당하는 932억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되었음
 - 2008년 추경예산이 편성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전용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것임
 - 특히 송산-진안 관설-봉산, 오동-구성 등 3개 사업의 경우 추경액 전액이 타 사업비로 전용·조정되었음
 - 이는 2008년 추경예산편성 시 연내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과 배치되며, 당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국도대체우회도로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전용·조정 현황(3개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당초 예산액	추경예산	전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송산-진안(수원시)	285	170	-170	285	285
관설-봉산(원주시)	107	85	-85	107	107
오동-구성(청주시)	126	85	-85	126	12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5.

• 시정의견

-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사업이 연례적으로 전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조정이 필요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서 보듯이 과도한 전용이나 조정으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예산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정이 요구됨
- 향후 예산편성(추경예산 포함) 시 사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전용 및 조정을 최소화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담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②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지방도 중 주요도시,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국가 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임
 - 국가가 설계비와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보상비를 부담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
 - 2008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445억원과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19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81억원 중 95.3%인 7,317억원이 집행됨

〈2008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당초 예산액	전년이월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합 계	604,180	44,530	119,387	768,097	731,701	36,023	373	95.3
건설지원	13,000	12,031	-	25,031	15,548	9,110	373	62.1
지자체보조	591,180	32,499	119,387	743,066	716,153	26,913	-	96.4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5

• 주요 쟁점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사업(설계비)의 연례적 집행부진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005년 73.0%, 2006년 41.2%, 2007년 50.3%, 2008년 62.1%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매년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집행부진 사유는 주로 노선선정 관련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에 기인한 것임

□ 지자체보조사업의 균특회계 세수 부족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미교부액) 발생

-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2005년 376억원, 2006년 613억원, 2007년 325억원, 2008년 269억원 등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이월사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균특회계 세수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균특회계 전체적으로 2008년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4,358억원 초과하였기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지자체의 집행실적 부진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06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8,229억원 중 7,13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7%에 그침
 -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광주시, 제주의 경우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

기 84%, 충남 61%, 경남 78%, 인천시 70%, 대전시 0%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 집행부진 사유는 주로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실시설계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따라 지자체 단계에서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것임

• 시정의견

-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나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미반영하거나 감액함으로써 지자체의 이월을 최소화 할 필요
 - 동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부진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편성 시 민원해결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연내 집행가능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인 세수부족에 따른 미교부액 발생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동 사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균특회계의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자체별 사업규모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담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③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결산 현황

-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대체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간 61.0km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임
 - 1단계 구간(인천공항역~김포공항역) 40.3km은 2007년 3월에 개통되어 운행 중이며, 2단계 구간(김포공항역~서울역) 20.7km구간은 2010년 10월말에 완공 예정
- 인천공항철도의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에 그침
 -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정부가 지급해야하는 운영수입보장금의 규모는 2007년도분 1,093억원과 2008년도분 1,602억원 등 2년간 총 2,695억원임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및 운영수입보장내역(2007~2008년도분)〉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도분	2008년도분
이용자 수 (명/일)	협약(A)	207,421명	226,642명
	실적(B)	13,212명	16,606명
	비율(B/A)	6.4%	7.3%
수 입	수입보장액(A)	1,170	1,725
	실제수입 (B)	77	123
	운영수입보장금(A-B)	1,093	1,602

주: 수입추정액은 협약당시 추정 통행료 수입이고, 정부지출금(A-B)은 실제수입(B)와 수입보장액(A)간의 괴리로 인해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임.

자료: 국토해양부, 2009. 5.

• 주요 쟁점

-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부실한 수요예측
 - 인천공항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하여 당초 수요예측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남
 -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수요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첫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 모형의 적용, 둘째, 주변 개발계획의 지연, 셋째, 철도수송분담률 과다추정 및 공항철도 개통지연 등에 기인한 것임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 비교〉

(단위: 명/1일, %)

구 분	예측 이용자 수(A)	실제 이용자 수(B)	비 율(B/A)
2007년	207,421	13,212	6.4%
2008년	226,642	16,606	7.3%

자료: 국토해양부, 2009. 5.

□ 수요예측 과다로 인한 재정부담(운영수입보조금) 증가

- 실시협약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개시 후 30년간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90%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재예측 결과(2009. 4),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향후 운영 수입보장금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2031년까지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운영수입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재예측 결과〉

(단위 :일평균 명)

구 분	2007	2008	2011	2031
협약수요	21만	23만	49만	82만
실적(전망)	1만3천	1만7천	(11만)	(27만)
대 비	6.3%	7.3%	22.3%	32.8%
운영수입보장금	1,040억원	1,666억원	4,889억원	4,466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합리화 대책」, 2009. 4.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공항철도(주)의 지분을 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낮추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주)의 지분매입과 관련 현대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2009.6) 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 9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 시정의견

-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향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요예측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보장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이 규정된 여타 민자사업에 대해 교통량이 과도하게 추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 변경을 통해 운영수입보장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할 경우 경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
- 향후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을 엄밀하게 따져서 참여기술자·용역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벌칙 부과 등 적극 조치하여 부실 수요예측을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담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④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부산항의시설확장 능력 한계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사업임
 - 2008년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과 전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295억 원 중 97.7%인 5,171억원이 집행되었음

〈2008년 부산신항 개발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액 등 변경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518,958	16,725	-6,160	529,524	517,143	9,221	3,160	97.7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009. 5.

• 주요 쟁점

□ 부산신항 서컨부두개발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 2008년도 예산현액 31억 300만원 중 7억 8,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5.2%에 불과하고, 2007년도에도 집행률이 17.9%에 그치고 있는 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 동 사업의 집행부진은 총사업비 협의, 주민이주대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의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임

〈부산신항 서컨부두개발 결산 현황(2007~2008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전년 이월	조정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07	5,500	-	-1,060	4,440	793	3,003	644	17.9
2008	6,860	3,003	-6,760	3,103	783	100	2,220	25.2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009. 5.

□ 부산항 신항 운동지구 배후부지: 예타조사 결과 전 예산편성 문제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예타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어 불용처리 되어야 할 사업비를 타 사업에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집행임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남권부두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4억 6,900만원)과 실시설계비(14억 3,100만원) 전액을 타 사업 비로 전용 또는 조정 감액
- 향만지형도면 작성용역(2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타 사업비 불용예상액을 조정하여 추진한 바, 이는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임

□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과도한 전용 및 조정

- 2008년도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결산결과 전용 11건, 조정 20건 등 총 31건의 예산변동이 발생하였음
 - 2007년도에도 전용(11건) 및 조정(13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연례적으로 타 향만간 또는 세부사업 간 과도한 전용 및 조정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과도한 전용이나 조정으로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당초 예산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시정의견

- 향후 예산편성 시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전용 및 조정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추진할 필요
-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담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⑤ 광양항 3단계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광양항 3단계개발사업은 컨테이너 화물량 증가에 대비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
 - 2008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48억 7,400만원 중 330억 9,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3.7%에 그치고 있음

• 주요 쟁점

- 사업비 부실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집행부진
 - 광양항 3단계 개발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005년 83.6%, 2006년 61.1%, 2007년 89.4%, 2008년 73.7%에 그치고 있고, 매년 잔·이용 및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 “3단계 가호안 1공구”의 경우 배수갑문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70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울촌산단 일반부두 축조공사”의 경우 토취장 개발 협의 지연으로 42억 600만원 이월되었음
 - 특히 “증심준설공사”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만 집행되고 2008년도 예산 20억원이 전액 타 사업비로 조정되어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최근 4년간 광양항 3단계 개발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전년이월	전용조정	이용	예산현액	집행	이월	불용	집행률
2005	138,559	44,182	-	-4,846	177,895	148,670	23,462	5,763	83.6
2006	110,401	23,462	-	-7,392	126,471	77,321	35,639	13,511	61.1
2007	64,290	35,639	-20,699	-	79,230	70,778	7,385	1,067	89.4
2008	39,700	7,385	-2,211	-	44,874	33,092	11,457	325	73.7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009. 5

• 시정의견

-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적정사업비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전용-조정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년도(2007년)에 발생한 전용-조정 내용이 다음연도(2008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환원하기 위해 빈번하게 전용-조정이 이루어져 행정력 낭비요인이 초래되고 있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별로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이·전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규모로 예산 조정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담당] 양성선 예산분석관(788-4629)

⑥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부적절한 전용

• 결산 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2008년 예산액은 697억원이며, 예산현액 880억 중 98.9%인 870억원을 집행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전년이월	전용	예산현액(B)	집행액(C)	이월	불용	집행률	
								C/A	C/B
광역교통시설건설	69,684	6,790	11,470	87,956	87,012	772	162	124.9	98.9
- 토지매입비	22,084	-	39,881	61,695	61,695	-	-	279.4	100.0
- 건설비	47,600	6,790	△28,410	25,980	25,048	772	162	52.6	96.4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2009.8

• 주요 쟁점

-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토지매입비 과다 전용 증액

- 2008년 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22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의 건설비, 중앙행정기관건립 사업,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으로부터 399억원을 전용 받아 당초예산의 279.4%인 617억을 집행함

(단위: 백만원)

세항(단위사업)	전용액			전용형태
	증액	감액	전용총액	
중앙행정기관건립 건설비	0	△6,541	△6,541	자체전용
광역교통시설 건설	39,881	△28,410	11,471	자체전용
- 토지매입비	39,881	0	39,881	
- 건설비	0	△28,410	△28,410	
복합커뮤니티센터	0	△492	△492	-
- 연구개발비	0	△300	△300	기획재정부 승인전용
- 건설비	0	△192	△192	자체전용
대통령기록관건립 건설비	0	△1,175	△1,175	자체전용
시청사 건립 건설비	0	△1,050	△1,050	자체전용
지역복합복지시설 연구개발비	0	△22	△22	기획재정부 승인전용
기록관리시스템 자산취득비	0	△6	△6	자체전용
종합사업관리 연구개발비	0	△2,185	△2,185	기획재정부 승인전용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2009.8

- 「국가재정법」상의 대규모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원칙에 저촉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대규모사업의 예산은 공사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사는 설계, 토지보상, 건설 등의 단계로 진행되며, 동 조항의 취지는 각 단계에 맞는 실제소요액만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 동 사업의 경우 2008년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어 동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확한 소요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과다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2009.8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㉚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 결산 현황

- 2008년 국토해양부 소관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은 공업용수도(54억원), 광역상수도(197억원), 및 지방광역상수도(20억원)로 구성되며 예산현액 307억 8,000만원 중 307억 7,400만원이 집행됨

〈2008년 용수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8							2009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	예산액
용수공급 및 개발	30,740	40	1,399 △1,399	30,780	30,774	100.0	6	16,571
- 공업용수도건설	5,420	-	△939	4,481	4,481	100.0	-	2,000
- 광역상수도건설	19,720	-	1,339	21,059	21,059	100.0	-	9,571
- 지방광역상수도	2,000	-	-	2,000	2,000	100.0	-	2,000
- 상수도조사관리	3,600	40	△400	3,240	3,234	99.9	6	3,000

자료: 국토해양부, 「2007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8. 4.

● 주요 쟁점

-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중복·과잉투자 문제
 - 2008년 광역상수도 취수장 가동률(64.3%)과 이용률(49.6%)이 저조함

〈주요 광역상수도 시설 과잉투자 현황〉

(단위: m³/일, %)

지역	시설용량	실제시설용량(A)	일평균생산량	이용률	추정적정 시설용량(B)	과잉시설 용량(A-B)
전 국	17,199,900	12,899,925	8,529,500	49.6	11,514,825	1,385,100
- 서울시	970,000	727,500	226,961	23.4	306,397	421,103
- 파주시	449,500	337,125	63,445	14.1	85,651	251,474
- 당진군	324,300	243,225	43,383	13.4	58,567	184,658
- 성남시	305,000	228,750	94,241	30.9	127,226	101,524

주: 1. 실제시설용량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25%)

2.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2004)에 따르면 상수도 정수장 시설의 예비능력을 계획정수량의 25%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시설용량은 이를 제외한 수치임.

3. 추정 적정시설용량은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사용한 일평균 생산량에 인구규모별 침투부하율 1.2~1.35 중 최대치인 1.35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예산정책처 작성.

□ 2008년 현재 광역상수도 시설의 추정과잉시설용량은 전국 139만^m³/일이며, 서울(42만^m³/일), 과주(25만^m³/일), 당진(18만^m³/일), 성남(10만^m³/일) 등 4개 지역의 경우 시설투자 과잉이 상대적으로 심각

● **시정의견**

□ 광역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Ⅱ」,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㉔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실적집행실적 저조

● 결산 현황

-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이 3,998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08년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적집행률은 85.9%이며, 68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함

● 주요 쟁점

-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적집행률 저조와 이월액 과다 발생
 - 2008년의 경우 대구,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의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적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대구 울산, 경기, 전북의 경우 2008년 뿐만 아니라 2007년 실적집행률도 저조하였음
 - 대구, 울산의 경우 2008년 교부액 대비 이월률이 50%이상 발생하였으며, 특히 울산의 경우 2007, 2008년 이월액이 계속 과다발생하였음

〈당해연도 교부액 대비 실적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 현황〉

(단위: 백만원, %)

	2007					2008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C)	이월률(C/A)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C)	이월률(C/A)
전국	343,500	254,158	74.0	89,342	26.0	399,800	331,070	82.8	68,730	17.2
-대구	4,760	3,287	69.1	1,473	30.9	9,800	4,088	41.7	5,712	58.3
-울산	4,800	1,166	24.3	3,634	75.7	2,800	1,192	42.6	1,608	57.4
-경기	40,400	20,140	49.9	20,260	50.1	47,300	34,431	72.8	12,869	27.2
-전북	28,340	18,536	65.4	9,804	34.6	35,600	27,023	75.9	8,577	24.1
-경남	47,270	40,722	86.1	6,548	13.9	56,700	40,462	71.4	16,238	28.6
-제주	25,000	20,625	82.5	4,375	17.5	26,700	20,721	77.6	5,979	22.4

주: 1. 집행액은 당해연도에 교부된 사업비의 순 집행액임.

2. 음영은 집행률이 80%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국토해양부.

● 제도개선 사항

- 지자체의 실적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이 주로 과다한 이월액으로 인한 것인 만큼 보다 적정예산의 편성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지자체 분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국비 60%, 지방비 40%)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지방비 조달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원을 과소하게 받고 있으므로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Ⅱ」,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례적 실적행률 저조

• 결산 현황

-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 1,224억원을 전액 집행함
 - 지자체의 경우 2008년 예산현액 2,338억원 중 55.1%인 1,289억원만을 집행하고 1,048억원을 이월함

• 주요 쟁점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적행률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7.5%로 저조함
 - 동 사업은 행정절차나 토지보상 협의 등 사전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적행실적이 저조하고 상당한 액수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매년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해 집행해야할 예산현액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또다시 이월액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자 결산내역〉

(단위: 억원, %)

연도	국토해양부			보조(출연)사업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이월액 (E)	이월률 (E/C)
2005	1,441	1,441	100.0	1,441	848	2,289	1,786	78.0	503	22.0
2006	1,205	1,205	100.0	1,205	503	1,708	793	46.4	915	53.6
2007	1,330	1,330	100.0	1,330	915	2,243	1,097	48.9	1,114	49.7
2008	1,224	1,224	100.0	1,224	1,114	2,338	1,289	55.1	1,048	44.8

자료: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문제
 -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원주민을 이주시킨 후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주민을 재정착시키는 방식을 말함
 - 공동주택방식의 원주민 재정착률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지만 약 57%로 저조함

• 제도개선 사항

- 동 사업의 이월액과 지자체별 집행능력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함
- 공동주택방식의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현상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주거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Ⅱ」,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10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전용

• 결산 현황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오송(1)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4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예산액 6,033억원 중 98.6%인 5,949억원을 집행함

• 주요 쟁점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간의 연례적이고 과도한 예산 전용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국회의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연례적으로 상당액의 예산이 전용·조정되고 있어 적정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 2008년 예산액 6,033억원 중 662억 8,8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주고 받아 예산액 대비 22.0%인 총 1,325억 7,600만원의 예산 변경을 발생시킴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전년이월액	전용	예산현액(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C/B
2005	260,794	31,101	±23,643	291,895	261,241	26,463	4,191	100.2	89.5
2006	270,000	26,463	±23,030	296,463	285,360	5,162	4,191	105.7	96.3
2007	323,514	5,941	±29,472	329,455	325,163	2,898	1,394	100.5	98.7
2008	603,300	2,898	±66,288	606,198	594,937	9,678	1,583	98.6	98.2

자료: 국토해양부, 「2008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IV)」, 2009.5.

- 연례적이고 과도한 예산 변경은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이 미비한 것이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함
- 총사업비를 예산편성 시점으로 관리하는 현 사업비 관리체계 하에서는 전용받은 예산을 추후에 돌려줘야하는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전용을 발생시키게 됨

• 시정의견

- 정부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예산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II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용자실적 부진

• 결산 현황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공급지원 사업은 국민임대출자, 국민임대용자, 매입임대자본이전, 공공임대용자 등 4개 사업으로 2008년 계획액 6조 4,050억원 중 63.4%인 4조 553억원을 집행함

〈2008년 임대주택공급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08						2009	
	계획액(A)	계획변경	계획현액(B)	지출액(C)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C/A	C/B	
국민임대출자	11,887	-	11,887	11,887	-	100.0	100.0	10,550
국민임대용자	34,218	-3,784	30,434	16,262	14,172	47.5	53.4	21,787
매입임대자본이전	2,570	-	2,570	2,245	325	87.4	87.4	2,332
공공임대용자	15,375	-3,070	12,305	10,159	2,146	66.1	82.6	11,000
계	64,050	-6,854	57,196	40,553	16,643	63.4	70.9	45,669

자료: 국토해양부.

• 주요 쟁점

- 임대주택공급 사업의 용자실적 저조
 - 임대주택공급 사업 중 용자사업은 국민임대용자, 매입임대자본이전, 공공임대용자 사업 등 3개 사업임
 - 동 사업들의 2008년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각각 47.5%, 87.4%, 66.1%로 저조함
 - 이러한 용자집행실적 저조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채권 판매 감소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저조, 부정확한 수요조사, 민간참여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것임
- 국민주택기금 재원 조성의 불안정성에 따른 임대주택공급 사업 관련 문제
 - 국민주택기금 조성실적 부진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지게 되면서 동 공사의 2008년 부채비율이 420.5%에 이르는 등 경영 악화가 우려됨

• 제도개선 사항

- 임대주택공급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조성방안 마련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인 민간 참여 유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II」,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12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의 사업비 추계 부정확

• 결산 현황

-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계획액 205억원 중 43.0%인 8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17억원을 불용 처리함
 -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은 전세임대 사업과는 별도로 원활한 전세임대 사업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수료, 도배장관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호당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계획변경	계획현액(B)	지출액(C)	불용	집행률	
						C/A	C/B
2007	33,050	13,750	46,800	17,885	28,915	54.2	38.3
2008	20,523	-	20,523	8,814	11,709	43.0	43.0

주: 동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음.

자료: 국토해양부.

• 주요 쟁점

□ 전세임대경상보조 사업의 사업비 추계 부정확

- 동 사업은 사업량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 모두 실제 소요액과 차이를 보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각각 38.3%, 43%에 불과함
- 이는 사업비를 전세임대로 지원액의 5%로 일괄 산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임
- 또한 사업대상 집행호수나 호당 단가 등에 있어 과다추계가 발생함
- 집행호수나 호당단가 등의 과다추계 문제는 집행항목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어 그 결과 사업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 편성되고 있음
- 사업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하고 사업별 실제 소요비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맞는 경상보조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 제도개선 사항

- 동 사업에 있어 그 동안의 집행실적과 사업별 실제 소요비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맞는 경상보조비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Ⅱ」, 2009.7

[담당] 한정수 예산분석관(788-4632)

13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결산 현황

- 정부의 추계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2년 5월에는 총 건설사업비 53조 원 중 재정은 9.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2003년 9월에는 총사업비가 56.1조원으로 증가했고 재정부담 또한 11.3조원으로 증가
 - 2005년 4월 추계 시에는 총사업비가 66.8조원으로 증가했고, 재정부담 역시 1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2월 현재 81.6조원으로 증가했고, 재정부담 역시 15.8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주요 쟁점

- 국토해양부가 2008년 9월 19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건설대책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을 40만호 건설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재정지원기준인 58.8㎡(17.8평)/호와 적용단가 4,968천원/㎡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매년 7,077억원이고,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지원은 매년 1조 6,419억원인 것으로 추계
 - 정부가 기존의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할 4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단기간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규모 및 기금지원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임

• 제도개선 사항

- 복권자금 지원비율을 법정화 하여 주택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지원단가 및 면적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지원기간 등에 관해 구체화 필요
- 국민주택기금 규모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규정을 넣는 등 최소한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얼마의 규모로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2009.

[담당] 박홍엽 사업평가관(788-4670)

14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연 대책 마련 필요

• 결산 현황

- 2008년도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미집행예산액 326억 5,700만원을 인천대교 연결도로 시설비로 전용, 토지매입비 113억 5,2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 2,000만원을 불용
 - 서수원-평택, 영천-상주,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의 토지매입비를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비로 전용
- 토지매입비의 전용은 주로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발생

• 주요 쟁점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에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 자체를 폐지하였으나, 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 차질 발생
 - 정부는 민자유치를 위해 '건설보조금지원'과 '운영수입보장'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였는데,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는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한 것이므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어렵게 만들
 -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민자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현 제도 하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내재
 -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대신에 브릿지론 대출을 하여 건설 초기단계부터 금융소득을 얻고 있음
- ※ 브릿지론(Bridge Loan) : 장기차관 도입 시 필요한 시점과 자금유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자금

• 제도개선 사항

- 합리적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의 확대, 재무적 투자자들이 책임성 강화, 수익률 조정 등을 검토 필요
 - 민자유치건설보조금지원 규모를 늘리되,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수익률 및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실시협약 이후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2009.

[담당] 안태훈 사업평가관(788-4678)

농림수산식품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경편성의 부적절

● 결산 현황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위사업임
 - 2008년도의 경우 당초 1,33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경으로 2,3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3,932억원의 예산현액 중 1,253억원만이 실제로 집행되어 실적행률이 31.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쟁점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본 사업의 통상적인 집행기간이나 그 동안의 사업추진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의 연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의 1.75배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
 - 최근 4년간의 보조사업자의 실적행률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87.8%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31.9%~69.7%로 부진
 - 2008년의 감척계획과 최근 4년간의 감척실적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는 척수 기준으로 최근 4년간의 65.8%, 사업비 기준으로는 최근 4년간의 160%에 달하고 있어 감척계획 자체가 과다하였음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실적 및 계획 〉

(단위: 척, 억원)

구분	1994~2003	2004~2007	2008	2009	2010	합계
척수기준	2,397	6,059	3,984	194	193	12,827
사업비기준	8,367	2,304	3,685	775	772	15,90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도개선 사항

-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연도별로 적정한 감척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예산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조기 착수, 사업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2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 결산 현황

- 정부에서는 농림수산물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2008~2010) 21.1조원 수준의 투융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 2008년도에는 총 1조 2,978억원(78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여 국회 비준과 연계하여 유보되었던 3,801억원(30개 사업)은 불용처리하고, 48개 사업(9,177억원)을 시행
 - 집행유보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액 9,177억원 중 80.7%에 해당하는 7,40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이 높지 못한 원인은 사전사업계획 미비, 용역발주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사업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정부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224개의 이행과제(농식품부 127개)를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중

• 주요 쟁점

- 사업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가 미비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우려되고 있음
 -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는 FTA 보완대책 사업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자,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4년간 평균집행률을 보았을 때,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35.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56.5%), 농작물재해재보험금(0.6%) 등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FTA 국내보완대책 '09년 상반기 추진현황, 2009. 7.29)를 통해 224개 이행과제 중 77개 과제(34.4%)가 이행완료되었으며,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행완료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대학생 기숙사 건립' 과제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성과 미비로 인해 중단된 사업이며,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및 육성'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사업 또한 중단된 사업임

• 제도개선 사항

- FTA 보완대책 사업관련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이 나타나고, 성과미비로 인해 중단된 사업이 이행완료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성과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FTA 보완대책 사업관련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③ 농촌활력증진사업 실행계획 부실로 인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 결산 현황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위사업으로서, 2008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3,804억원 전액이 집행
 - 유사 농촌개발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성과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하고 소관부처를 (구)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음

● 주요 쟁점

- 보조사업자인 시·군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
 - 최근 4년간의 실집행률 추이를 보면 46.3%~77.8%로 3개 세부사업 모두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부진함

〈 농촌활력증진사업 실집행률 추이(2005~2008) 〉

구분	2005	2006	2007	2008
신활력지원사업	49.6	61.4	64.2	62.0
향토산업육성사업	-	-	46.3	77.8
특화품목육성사업	72.8	69.3	60.8	61.5

(단위: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체계에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배정되므로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평가에 대한 지침 강화와 더불어,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향후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는 등 사업 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우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삭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활력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 100%인데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④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성과 저조

● 결산 현황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에는 추경으로 신규사업인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이차보전사업이 추가로 시행됨

- 양식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금액의 30%를 보조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4억 9,700만원의 78.4%에 해당하는 90억 1,700만원이 집행
- 이차보전사업은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저리(1%)로 융자하고 그 이차차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현액 13억원의 27.4%에 해당하는 3억 5,600만원만이 집행됨

● 주요 쟁점

□ 배합사료의 사용기피에 의한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52.1%~78.4%로 부진하며, 전용·불용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
-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배합사료가 생사료보다 가격이 비싸고 양식어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배합사료의 보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생사료의 단가는 2008년말 현재 490~650원/kg인데 비해 배합사료의 단가는 1,650~3,000원으로 3.3배~4.6배 높음
 -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양식어업인들은 배합사료 급이시 여름철 주성장기 및 성어기의 성장이 느리고, 어체의 비만도나 육질이 저하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합사료의 공급은 2002년 7만 6천톤(16.7%)에 비해 2008년에는 13만 4천톤(22.1%)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배합사료 사용비율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연도별 사료공급 현황(2002~2008) >

(단위: 천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배합사료(비중)	76(16.7)	76(16.8)	99(19.1)	110(19.5)	117(20.5)	146(22.9)	134(22.1)
생사료(비중)	379(83.3)	377(83.2)	420(80.9)	453(80.5)	453(79.5)	491(77.1)	472(77.9)
합계(비중)	455(100.0)	453(100.0)	519(100.0)	563(100.0)	570(100.0)	637(100.0)	606(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도개선 사항

□ 고품질·고효율의 배합사료 개발을 통해 양식어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배합사료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5 정책자금·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 손실보전료의 법적근거 없는 정부출연

● 결산 현황

-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등의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에는 예산현액 2,924억원의 약 97%인 2,838억원을 집행
- 영어자금이차보전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운용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액 530억원을 전액 집행

● 주요 쟁점

- 정책자금이차보전과 영어자금이차보전사업에 있는 비목인 손실보전료는 보조금의 형태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연금으로 편법적으로 운용
 -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과 영어자금이차보전사업의 각목명세서를 보면, 이차보전금 비목하에 손실보전료가 있으며, 이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과 수협에게 각각 지원되는 손실보전 성격의 재원임
 - 이차보전금은 정책자금을 저리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차차액만큼의 운용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는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이차보전금 세목에 손실보전료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농식품부의 손실보전료가 농협·수협 등에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손보전기금으로 다시 출연되어 운용된다는 것은 동 손실보전료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임을 의미함
 - 따라서 비목상으로는 손실보전료로 보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 없이 설립된 대손보전기금으로의 법적근거가 없는 정부출연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농협법」 개정안도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법적근거가 되지 못함
 -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57조 제7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보조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정부출연의 법적근거로 볼 수 없음

● 시정의견

-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대손보전기금을 농신보로 통합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9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⑥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과제 유사중복 문제

• 결산 현황

- 2008년도 농림수산물 R&D 예산은 6,554억원으로 농림수산부문 전체 예산액 15조 8,245억원의 4.1% 수준임
 - 이 중 농식품부는 1,944억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고, 농진청은 3,935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2006년도에 농림기술관리센터로부터 연구과제를 이관 받으면서, 농식품부는 R&D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농산업화 기술부문에, 농진청은 기초·응용 및 실용화 기술부문에 연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음

• 주요 쟁점

- 실제 일부 연구과제 수행에서 기초 또는 산업화 연구의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
 - 농진청은 바이오에너지 관련 유채연구를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로부터 외부수탁을 받아 농진청 산하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2008년 현재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개발 등 4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관련 연구는 농진청도 공동연구사업과 자체시험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산업화 연구 내지 기초·응용연구에 대한 뚜렷한 구분 없이 유채품종개발 등 연구과제가 유사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관련 유채연구 추진현황(2008) >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과제 및 과제수	연구비
농진청 산하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가 수행하는 농림기술관리센터 외부수탁연구과제	내한성 및 다수성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개발 외 4건	1,202
농진청 공동연구개발 사업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사업)	바이오디젤용 원료 생산용 초다수성 유채품종개발 외 11건	1,220
농진청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	유채신품종 육성 및 재배연구 1건	50

자료: 농촌진흥청

• 제도개선 사항

- 향후 농촌진흥청은 부처간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구과제들의 부처간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담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7 국가어항개발사업에 있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결산 현황

- 2004년 이후 국가어항개발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고, 2007년에 이월액이 279억원, 2008년에 475억원에 이르고 있음
 - 불용액 또한 2007년에 35억원, 2008년에 34억원이 되는 등 연례적으로 일정 금액 불용 발생

〈국가어항개발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1,645	1,735	1,561	1,658	1,770	1,526
이월	75	138	77	279	475	
불용	34	11	10	35	34	

• 주요 쟁점

- 정부는 재정집행 부진의 사유로 날씨, 파도, 바람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해상공사의 한계를 언급
 - 즉 해상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육상공사에 비해 짧고, 해무·돌풍 등 기상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함
- 불용은 계약 후 낙찰 잔액 때문에 발생
- 그렇지만 2008년에 예산액의 27% 정도가 이월되고, 2% 정도가 불용되는 등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집행에 있어 비효율성 초래

• 시정의견

-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계획수립과정에서 재정집행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임. 재정집행 능력을 초과하는 예산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 요구
- 특히 다기능어항 사업예산에서 이월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기능어항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2009.

[담당] 박홍엽 사업평가관(788-4670)

교육과학기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정산과정 및 집행문제

● 결산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임
 - 동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는 대표적인 의무지출로,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 전액으로 조성
-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2조 4,542억원을 포함하여 총 33조 2,090억원이며, 각 시도교육청에 전액 교부
 - 그 구성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32조 391억원, 특별교부금이 1조 1,699억원임
 -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유형별로 시책사업수요 7,019억원, 현안사업수요 3,510억원, 재해대책수요 1,170억원 각각 교부

● 주요 쟁점

- 보통교부금에 비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많이 배부되는 경향이 있음
 -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상관관계수는 0.442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보통교부금(상관계수 0.382)보다 높음
- 2조 4,542억원이라는 대규모의 교부금 정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예·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세부 집행 내역도 부적절
 - 이전에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국회의 예·결산 심의 대상이었던 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집행이, 2007년 「국가재정법」시행 이후(동법 제90조)에는 국회의 재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해졌음
 - 또한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중 3,680억원(보통교부금분)을 주요 국정과제(기숙형 공립고, 영어공교육 완성, 마이스터고) 추진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교부방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 위반 여지
 - 둘째, 추진된 국정과제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의 시책사업수요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 가능성
 - 셋째, 「영어교육강화추진 2차사업」에 특별교부금 56억 1,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사용목적에 다른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영어교육 관련 유사 사업들에 함께 지원
 - 넷째, 세계잉여금 선정산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권한 침해 여지

□ 특별교부금 역시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집행 내용이 발견됨

- 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① 12월에 교부금 총액의 41.7%를 교부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인 법정 교부시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위반, ②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수행된 시책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의 차별성 부족, ③ 전국에 걸친 국가시책사업이 아닌 일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업(현안사업수요 대상)에 교부금 배부
- 현안사업수요 특별교부금: ① 장관이 학교 방문시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집행하는 등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 ② 연중 발생하는 지역의 특정 현안사업에 수시 교부토록 한 입법취지를 벗어나 연도 말에 총액의 99.5%를 일괄 교부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주된 사용용도인 재해대책수요에 사용한 비율이 2008년에는 전무하고 2007년에도 4.5%에 불과
 - 재해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다른 공공서비스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예산상의 예비비와 별도로 재해대책교부금을 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감사원(2008. 12)도 각 시도교육청 예비비 불용액이 동 교부금보다 크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 교부금을 별도의 운용할 실익이 없음을 지적

● 제도개선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예컨대 부적절한 특별교부금 운용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시·도별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원 688억원 확보 가능
-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계잉여금 선정산시 배분금액, 배분내역, 집행실적 등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의 집행결과와 평가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을 개선하여 성과 지향적 결산이 되도록 통제 제도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전년도 집행실적은 누락한 해당해연도 계획만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보고 관행 개선 필요
 - 교과부의 재량집행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도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교부금 유형별로 교부목적·교부시기·교부대상 등을 준수하도록 하며, 재해대책수요교부금은 제도 취지에 맞게 축소 운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2009.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② 유아교육비 기준재정수요액 과다추계 및 불투명한 산정과정

• 결산 현황

- 유아교육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 2008년 유아교육비 기준재정수요액은 5,415억원, 시도교육청 결산액 합계는 4,712억원으로, 결산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703억원 미달함

• 주요 쟁점

- 결산 결과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도교육청의 결산액 비율은 평균 87.0%, 최저 73.7%(부산)~최고 98.0%(강원) 범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비의 기준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
 -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함께 2008년에 지방에 이양된 방과후학교 사업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시도교육청의 결산액 비율이 평균 111.2%, 최저 81.9%(광주)~최고 149.2%(울산) 범위의 집행실적을 보인 것과 비교됨
 - 유아교육사업은 2007년도 결산 결과에서도 보육시설과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등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불용률이 17.7%였음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등을 따라 산정하지만,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 심의의 측면에서 문제가 됨
 - 예를 들어, 유아교육비의 소항목인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는 유치원의 수를 측정 단위로 하고 유치원 당 배분액을 단위비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교과위에 보고된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집행 내용을 보면 2007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했던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비’ 라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를 배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보임

• 시정 의견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수요를 추계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사후정산규정을 강화하여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정산이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 사후집행관리가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2009.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③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계획변경과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WCU사업')은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유치·활용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강화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
 - 총사업비는 2008~2012년까지 5년간 8,250억원, 2008년도 예산은 1,650억원임
 - 「세계수준 선도대학 육성사업」,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상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산현황은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지출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99.8%이지만, 대학 등 사업주체에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본 실집행률은 68.0%로 부진함

• 주요 쟁점

- 예산 의결시 세계 수준(상위 200위권)의 대학 육성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고급기술·전문인력 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원) 육성 등을 세부사업별 목적으로 심의·확정하였으나, 6월 20일 WCU사업계획 최종 확정 및 사업 공고 시, 해외학자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력 강화로 사업내용 변경
 - 세부사업별 사업취지와 목적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검토절차도 없이 사업의 핵심내용을 변경 및 통합한 것임
 - 특히, 균특회계로 계획한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의 내용을 해외학자 유치·활용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국회가 예산 의결시 사업 관리상 국조보조사업이 적합하다고 심의·확정한 사업비 비목을, 연도 중(2008. 12. 16.)에 보조금보다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더 높은 출연금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세계수준 선도대학 육성사업」 세출예산비목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총 1,000억원의 예산 중 984억 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함
 - 출연금은 재정운영에서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므로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로 제시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는 ‘학술진흥’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비목 변경의 법적근거도 미흡

- 국회가 심의·확정한 ‘기관지원방식’에서 ‘경쟁 선정을 통한 과제중심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서울 소재·상위권 대학에 재정지원 집중
 - 서울 소재 대학이 선정과제의 50.8%(66개), 지원액의 47.1%(658억원)을 지원받음
 - 최상위 1개 대학이 사업비의 22.6%, 상위 6개 대학이 67.0% 점유: 잠재력 있는 후발대학에 대한 지원 감소와 대학간 경쟁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사업 목적에 부적절
 - 특히,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2단계 연구중심대학 사업」(이하 ‘BK 21사업’)과 사업비 중복지원 가능성도 높음
- 사업수행주체인 대학 등에 지불한 금액 기준 실집행률은 68.0%로, 집행 부진
 - 해외학자를 제외한 전문인력 인건비, 연구비, 간접비는 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주체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며, 더욱이 1차 WCU사업 지원과제 최종확정 및 협약체결이 2008년 11월 25일에야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업수행주체인 대학 등이 실제로 지출한 실집행률은 68.0%보다 더욱 부진할 것임
 - 이로 인해 교과부는 WCU사업 1차년도 사업기간을 2008년 12월~2009년 10월로 정하여, 동 사업의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1년 가까이 불일치
-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직접비를 대학의 대응자금 부담 없이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사업의 수혜자인 대학에 간접비 지원(1차 사업단 사업비의 23.1%, 총 323억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대학 자체의 지속가능한 연구역량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유형 1(전공·학과 개설지원), 유형 2(개별학자 초빙지원), 유형 3(해외석학 초빙지원)의 모든 사업에 동일한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유형별 차이도 미반영

• 시정 의견

-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계획을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내용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필요
- 재정 지원의 서울 집중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서울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대학(원)의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고급기술·전문인력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 특히 BK21사업 등에서도 재정지원을 받는 주요 대학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일부 상위권·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중복 지원을 최소화해야함
- 집행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예산규모의 조정, 비용 지출 조정을 통해 회계연도와 사업연도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

- 재정사업의 수혜자인 대학도 일정 비율의 대응자금이나 사업성과 부진 시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유인 체계 필요
 - 현재 WCU사업은 과제가 선정되면 3~5년 정도 재정지원을 보장하여, 선정된 대학은 사업비용과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비효율적인 사업비 운영

• 결산 현황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NURI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
 - 사업기간은 2004~2008년이고 총사업비는 5년간 1조 1,957억원이며, 실제 사업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진행됨
- 2008년에는 2,463억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

• 주요 쟁점

- NURI사업의 3차년도(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장학금·학생교육및실습활동 지원비 비중은 과다하고 교육과정개선비와 산학협력비 비중은 과소하여 혁신역량강화에 미흡한 배분으로 지적되었으나, 4차년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음
 - 4차년도 비목별 집행현황은 장학금 24.8%(3차년도 대비 1.8%p 감소개선), 학생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비 22.5%(0.2%p 감소개선), 교육과정개선비 3.2%(1.1%p 감소악화), 산학협력비 6.9%(1.0%p 증가개선) 등으로, 3차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 2007년도 결산심사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자율권은 인정하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 둘째 장학금 등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여 추진할 것이었음
 - NURI사업 5차년도(2008년 6월 1일 개시)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이후 NURI사업 등이 통합되어 추진되는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계획에만 이를 반영함

• 시정 의견

- 장학금이나 일회성 지출 경비 비중이 과다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역량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재원배분으로 보이므로, 사업비 배분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정부재정 지원은 경우에 따라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장학금 등의 지출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
-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 하여야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5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 제고 필요

• 결산 현황

-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 2008년도 신규사업)은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외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이 목적
 - 동 사업은 BK21사업 등 종전의 대학지원사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 존재
 - 첫째, 대학 발전을 측정하는 각종 핵심지표(학생충원률, 취업률 등)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에 따라 우수대학을 차등 지원하는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을 선택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대학간 성과창출 경쟁을 확대
 - 둘째, 선정된 사업단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에 총액(grant)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자체의 자율적·전략적 투자를 촉진
- 2008년도 예산 5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2009년도 예산은 NURI 사업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합하여 2,649억원 규모로 증가

• 주요 쟁점

- 장학금 비중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2007년도 NURI사업 결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장학금 지원 비중 등이 여전히 과다
 - 집행 지연(2008년 9월부터 교부 시작)으로 인해 동 사업에 국회의 지적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교과부는 장학금 20%이상 지출을 필수조건으로 함
 - 결산 결과 2008년도 장학금 비중은 29.8%로 NURI사업 연차별 장학금 비중 중 최고치인 26.6%(3차연도)보다 3.2%p 높은 반면, 교육과정개선비는 6.8%에 불과
- 2009년도 사업부터는 장학금 용도 10% 이상,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15%이상 지출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용 우려
 - 장학금 하한선을 20%에서 10%로 낮춘 것은 일부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국회가 권고한 상한선 설정방식에 비해) 장학금 용도보다 교육역량강화와 연관성이 더욱 떨어지는 곳에 지원금을 지출하게 할 수 있음
 -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 지원은 대학이 어려운 교육(구조)개혁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 수치만을 제고하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취업률 향상은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공급할 때 사회적 의미가 있지만, 재정지원액이 취업률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대학간 경쟁을 촉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2008년도 대학별 집행내역은 교육역량강화라는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 당시에는 15개 대학에 집중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64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1개 대학 당 평균 7억 8,000만원 정도만이 지원됨
 - 각 대학에서는 교환학생 해외파견,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개발, 영어강의 확충 등의 각종 세부사업을 소액으로 분산 지원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함
 - 일부 대학은 대학시설 개선사업 및 기자재 구입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등, 2009년 1월에 시행된 성과평가에서 7개 대학이 성과부진으로 판명

- 한편, 포물러 펀딩 방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
 - 대부분의 지표가 현재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관한 것이므로 평가 당시 지표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이 집중되어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우려
 - 현행 포물러 지표는 각 대학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2008년 현장점검 결과 취업률을 허위로 제출하는 대학이 사후에 발각되는 사례 등 발생

● 제도개선 사항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장학금 및 졸업생의 취업촉진 프로그램 지출 용도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처럼 장학금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상한선 설정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컨대, 시간강사 법적지위 안정화 및 처우개선에 예산을 할당하도록 지출 하한선을 설정하고 포물러 지표에 이를 반영

- '교육역량강화'라는 사업취지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첫째, 대학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중간 이행 점검'을 제도화함
 - 이러한 2단계 컨설팅 과정과 더불어 컨설팅과 성과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컨설팅 위원을 성과평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 둘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 현재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의 10%를 증·감 조정하고 있으나, 이를 30% 이상까지 상향조정하여 교육역량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 유인(incentive) 강화

- 현재 다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포물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이 작성·제출하는 포물러 지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대학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가점을 현행 포물러 방식에 적용하는 등의 보완 필요
 - 현장실사 강화, 내부 검증내역의 상세화 등과 함께 허위보고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대책도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⑥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의 운영비 집행비중 과다 등

• 결산 현황

-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은 기존의 성적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방식을 학생의 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입학전형 전문가 채용이나 전형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함
- 2008년도 예산은 당초 128억원이었으나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부터 29억원을 전용하여 총 157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08년도에는 총 40개 대학에 15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3,000만원 집행

• 주요 쟁점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사업의 '사업비 재편성 지침'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국고 70%와 대응자금 30%로 구성)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였으나, 4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운영비 과다 등으로 해당 기준 미달
 - 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15개임
 - 운영비 지출 내역이 국외교육훈련비, 세미나 참석 여비, 워크숍 개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낭비적 요소가 많아 동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볼 수 없음
- 입학사정관은 전형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2008년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인원의 91.0%(210명)가 1년 위주의 단기 계약직임
 - 특히 채용 전 경력을 보면 대입전형 경험이 없는 조교, 대학교 행정직원, 기간제 교사, 지방공사 근무자, 박물관 연구원 등도 230명 중 15명 포함

• 제도개선 사항

-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사업비를 입학사정관을 채용·운영하는 인건비보다 연구비·운영비에 과다 집행하지 않도록, 항목별 집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원금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충실도를 대학별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유인책 고려
 - 각 대학별로 수행하는 해외사례 연구·국제 훈련비 등의 연구비·운영비는 각 대학의 수요 조사를 통해 공동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 강구
-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컨대 정규직 또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대학에 연차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7 출연연구기관의 임의적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발생 문제

• 결산 현황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자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현실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를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자금운용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10개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을 종합하면 총 262.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이 342억원의 손실 발생
 - 한국과학기술원과 고등과학원(2.5억원 평가손실)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양의 수익률

• 주요 쟁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회계는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과제·연구비, 민간수탁 과제·연구비, 납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운용을 보다 안정적이며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일반회계 자금을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08년도 총 보유자산 대비 주식형 펀드 투자 비율이 57%에 이르고, 일반회계 자금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한 결과 평가손실 336억원, 투자손실 6억원 발생
 - 일반회계 외에도 발전회계, 석좌회계 자금의 펀드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이 552억원
 - 관련 규정상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운용 자문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개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기금 운용
 - 자금운용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내용을 규율하는 자금운용 관리지침도 없이 연 2,0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운용

• 제도개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규정을 종합 정비하여야 함
 - 특히 정부출연금 및 정부수탁 과제·연구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기타 회계와 구분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
 - 기관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운영 및 분기별 자금운용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장은덕 예산분석관(788-4637)

8 생명공학육성 관련 예산의 투입위주 관리 부적절

• 결산 현황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하여 매년 수립되는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문은 생명공학육성에 계획대비 109.7%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도 생명공학분야 부처별 투자 예산의 합계액은 9,303억 9,200만원이나, 실적은 1조 208억 4,800만원으로 집계되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에 생명공학분야에 3,652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실적은 4,033억 9,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10.4%를 집행하였음

• 주요 쟁점

-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발표되고 있지만, 전년도 시행계획에서 발표된 투자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족함
 - 전년도 투자실적은 투자계획과 비교되지 않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하지 않고 있음
 - 당초 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자실적에 포함되는 등 투자계획과 투자실적의 집계 기준에도 차이가 있음
- 성과평가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투입 위주로 관리되고 있음
 - 매년 발표되는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서는 당해연도 투자계획과 전년도 실적의 증감률만 비교하고 있음
 - 생명공학은 기초과학, 의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지만, 투자 관리가 개별 부처에 산재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투입 위주로 관리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이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2009, pp.50-57.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02-788-4628)

9 양성자가속기 구축 사업의 지방비 분담 과다

• 결산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150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주요 쟁점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0억원임
 - 재원별로는 국비에서 1,157억원, 지방비에서 1,604억원, 민간이 129억원을 부담할 계획임
- 양성자가속기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률이 과다함
 - 2005년 11월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양성자가속기도 경주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 경주시가 총사업비의 55%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타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20%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수준임
 - 특히 동 사업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시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유치지역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지방비 분담 조정안을 도출하였으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였음
 -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유치지역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의견

- 양성자가속기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제시된 사업이므로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비 부담률의 조정과 더불어 국비 지원 주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협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2009, pp.58-65.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02-788-4628)

10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예·결산 내역의 국회 보고 필요

• 결산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공계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하였음
 - 이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6에 근거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장려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에 출연하는 사업임
 -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00억원을 포함하여 600억원을 공제회에 출연하였음

• 주요 쟁점

-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노후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이 퇴직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 장려금 재원으로 공제회에 출연되었음
 - 출연금으로 조성된 장려금 재원은 공제회가 운용하며, 공제회에 가입한 과학기술인은 퇴직 후 장려금 운용수익을 수령하게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액 중 일부를 장려금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이므로, 장려금 재원은 2,000억원까지 확대될 계획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에 의하면 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제회의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장려금 재원의 운용결과가 과학기술인의 노후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재원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장려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기술료를 활용하여 조성되며, 그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를 계획이므로, 장려금 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함

• 시정의견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개정하여 장려금 재원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2009, pp.66-69.

[담당] 전용수 예산분석관(02-788-46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 국회에서 삭감된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의 전용을 통한 증액

• 결산 현황

- 동 사업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부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08년 예산현액 55억 600만원 중 99.6%인 54억 8,400만원이 집행
 - 동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36억 3,200만원이었으나 전용을 통하여 9억 8,300만원, 조정을 통하여 1억 9,100만원, 예비비를 통하여 7억원을 증액
 -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예산은 경제 살리기 등 주요광고비로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를 통한 집행은 건국60주년 홍보로 지출

• 주요 쟁점

- 2008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72억 3,200만원 중 36억원이 감액된 사업임에도 전용 등을 통해 18억 7,400만원이나 증액한 것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규모를 왜곡하여 재정기율에 혼란 초래 가능
 - 당초 국회의 감액사유는 ‘정부의 시책은 홍보가 없더라도 정부의 보도자료나 뉴스 등 언론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회계연도 말인 2008년 12월 22일에 경제 살리기 등의 광고를 위해서 9억 8,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부적절
- 동 사업에서 집행한 세부 내역이 타 부처 및 적립금의 사업수행내역과 중복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음
 - 2008년 북경 올림픽 캠페인 광고비를 위하여 2억 44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스포츠토토 적립금에서도 TV광고비 6억 3,785만원과 신문광고비 9,000만원을 집행
 - 쇠고기 추가협상 광고에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23억 700만원을 광고비로 집행

• 시정의견

- 국회 삭감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전용 등을 통하여 증액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간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III」;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2 U-AT 통섭 사업의 추진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실관리 우려

• 결산 현황

- 동 사업은 음악, 미술, 연극, 영상 등 예술장르 간 및 예술·과학 간의 융합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섭(統攝)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기획창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2008년 최초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09년 미래교육준비단의 폐지로 사업 종료
- 2008년 예산액 40억원 중 76%인 30억 5,500만원만이 지출

• 주요 쟁점

- 동 사업이 장기프로젝트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동 사업의 개념제시에 한계가 있고, 질적 수준은 미흡하며, 기존 CT사업 및 CT대학원과의 차별성이 없어 예술종합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중단
 - 2009년도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초기 반대하는 다수 교수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교수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
 - 감사원에서는 과도한 기자재 구입으로 예산 5,950만원이 낭비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고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예술학교 기성회비 및 발전기금 재원에서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편법 충당하여 협동과정에서 5개 교과목으로 채택한 것을 지적
 - 미래교육준비단이 2009년 1월 1일부로 종료되었음에도, 종료사업을 위한 연구장비 구매액 2억 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
- 구매된 장비를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예술정보관, 전통원, 영상원 등으로 이전·사용함에 따라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동 기자재 관리가 부실화될 우려

• 시정의견

- 동 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준비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계자의 주의 요구
- 향후 차년도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기 구축된 장비현황을 고려하여 중복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 활용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③ 체육진흥투표권 등 공익사업 적립금의 운용 부적정

• 결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운용되는 공익사업 적립금은 체육진흥투표권 특별적립금과 경륜·경정 특별적립금이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특별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
 - 체육진흥투표권 특별적립금은 수익금의 10%의 규모로 적립하여 사용
 - 경륜·경정 특별적립금은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원
 - 경륜·경정 특별적립금은 수익금의 2.5%의 규모로 적립하여 사용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2001년 이후 총 1,162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이 중 596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륜 적립금의 경우에는 총 238억 1,000만원이 적립되어 226억 8,000만원이 지출
 - 체육진흥투표권 특별적립금의 경우 2008년 말 현재 566억 6,500만원이 지출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으며, 경륜 적립금의 경우에는 2008년 말 현재 11억 3,000만원만이 지출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적립금 계좌에 적립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 특별적립금의 연도별 적립현황: 2001~2008년〉

(단위: 백만원)

		1996~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체육진흥 투표권	연간적립금	-	71	551	707	3,466	11,423	23,196	35,218	41,652	116,284
	지출액	-	-	-	-	-	-	8,122	10,549	40,948	59,619
경륜·경정	연간적립금	4,700	3,874	5,659	3,386	2,052	1,194	237	1,457	1,251	23,810
	지출액	1,974	3,160	4,454	5,837	3,092	2,352	1,417	243	151	22,6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쟁점

- 특별적립금은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매년 지원이 반복되거나, 일반회계 등에서 기관의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에도 지원을 실시한 경우가 있고, 일반회계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동 적립금의 운용이 적정하다고 보기 곤란

- 외교통상부 소속(예산은 문화부 소관)의 해외문화원에 대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사업이나 (사)체육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은 특별적립금의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짐
-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인력양성,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전문가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인력양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도 2007, 2008년 반복적으로 지원
-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기관에 예산 외로 특별적립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시 확정된 기관의 사업규모를 왜곡하는 문제 발생 우려
- 2008년에 지원된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특별적립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 사업의 최초 시행여부 및 추진과정을 국회가 심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대한민국건축문화진흥’ 사업이나 ‘2008년 북경올림픽 광고비’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중복 지원하였는데, 국회가 심의 확정된 예산의 규모를 왜곡시켜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도 곤란
- 특별적립금은 세부지원내역이나 선정절차, 선정과정 등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 지원된 사업은 특히 지원의 적정성 및 타 행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의 적정여부를 국회가 심의하기 곤란

• 시정의견

- 동 적립금을 국가예산으로 편입시켜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이 복권 판매 증가로 2007년도 367억원, 2008년도 429억원 등 점점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그 운용규모도 커지고 있어 국회의 심의가 절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 개별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므로,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한 행사성 사업도 국회가 심사가능한 공모 방식의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
 - 타 사업 및 타 부처와의 형평성 고려도 필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도 공익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입세출외가 아니라 복권기금을 통해서 지원
 - 타 부처의 경우에도 특정목적의 사업이나 시급성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세입

세출 외로 운용하지 않고 예비비나 전용 등을 통한 예산사업으로 수행

- 특별적립금 수익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항목인 기타잡수입 등으로 수납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적립금의 연도별 배분내역의 비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각 기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의 틀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4 영화 관련 유통지원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미집행

• 결산 현황

- 예술영화 전용관, 독립영화 전용관 및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지원하는 사업
- 2008년도 계획현액 161억 6,900만원 중 33%인 50억 7,000만원만이 지출
 - 161억 6,900만원 중 4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전용관 운영지원에 30억 4,600만원, 공공상영유통지원에 20억 100만원, 복합상영관 건립비에 2,300만원을 집행한 후 기금운용계획현액의 66%인 106억 8,900만원을 불용

• 주요 쟁점

-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 3,900만원, 2008년 4억 1,0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월사유는 환율인상과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것임
 - 예술영화관전용관(아트플러스) 개봉지원 결정시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극장과의 상영계약 체결 후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지원작의 경우는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월
 - 기타유형자산의 전년도 이월액 7억 8,500만원 중 7억 2,600만원만이 집행된 것은 실소요가 적은 지출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등 지출원인행위의 비계획성 문제 존재
- 영상미디어센터, 씨네마테크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는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예산이 사전계획 미비와 사업추진 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
 - 서울시와 2008년도 3월 양측이 각 250억원씩 투입하여 총 500억원 사업으로 공동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참여가 불확실하여, 부지매입비로 반영된 98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

• 시정의견

-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노력 필요
-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협상,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충분히 논의된 후에 타당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09.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5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사업의 기금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등

• 결산 현황

- 해외시장과 테마시장별로 차별화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 2008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265억 3,5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23억 1,500만원을 증액한 후 288억 3,200만원을 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액분은 콘텐츠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지원, 시장별 마케팅 지원 사업,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및 부대사업 등에 사용
 - 콘텐츠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4억 5,000만원, 관광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시장별 마케팅 지원 사업에 9억 3,000만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및 부대사업에 9억 3,500만원을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에서 관광상품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의료관광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5억 9,400만원을 집행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및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변경증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한국방문의해 지원사업	0	935	935	935	0
700만 달성을 위한 외래관광객 특별 유치대책	930	0	930	912	18
콘텐츠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지원	0	450	450	450	0
시장별·테마시장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2,056	0	2,056	2,056	0
관광수지적자해소를 위한 시장별 마케팅지원사업	0	930	930	930	0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1,320	0	1,320	1,320	0
국제관광행사 육성	2,500	0	2,500	2,500	0
해외관광마케팅 지원활동 등	2,150	0	2,150	2,150	0
관광상품 개발지원	1,228	0	1,228	1,228	0
각 지역별 관광객유치활동	13,193	0	13,193	13,193	0
관광분야국제관광기구 협력활동 등	1,151	0	1,151	1,151	0
해외공연전시 지원을 통한 외래객 유치 등	2,007	0	2,007	2,007	0
합 계	26,535	2,315	28,850	28,832	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쟁점

- 한국방문의 해 지원 사업(9억 3,500만원)은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신규 사업이므로, 이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간 파트너십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
- 문화부와 복지부의 두 부처간 의료관광 관련 추진 사업을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2008년도 각 부처가 수행중인 해외환자유치관련 홍보사업의 목적이 유사하여 독자적인 예산집행은 비효율성 유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및 의료관광마케팅 사업 등 홍보사업(5억 6,600만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제행사 및 한국의료 홍보(3억 5,500만원)사업은 사업추진의 목적 및 대상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해외환자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양 부처가 각각 사업을 추진할 실익이 적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으로 각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수행하여 양 부처간에 사업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 체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소지 존재

• 시정의견

- 한국방문의 해 지원 사업은 민간 파트너십 구축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인만큼 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회 심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함
-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및 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부처간 중복 소지가 있는 홍보마케팅, 전문가양성 등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양 사업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든가, 부처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⑥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1999년부터 운영
 - 동 사업을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전국의 각 문화재별로 연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성격의 단위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
- 동 사업의 2008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1,900억 2,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실집행실적을 보면 50.1%인 951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933억 9,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률이 저조

• 주요 쟁점

- 동 사업의 최근연도 예산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수준
 - 실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는 지방비 확보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문화재 매입 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
 - 2007년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예산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매년 10월10일 전후로 사전통지를 실시하는데, 통상 9월말이면 지방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어 차년도 지방비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연도별 실집행실적: 2005~2008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05	156,626	82,454	52.6	73,805	368
2006	171,753	71,622	41.7	99,767	364
2007	163,886	75,785	46.2	87,293	808
2008	190,029	95,183	50.1	93,398	1,4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시정의견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조치마련 필요
 - 현실에 맞게 사전통지시기를 조정하고, 국비우선 집행과 같은 임시적인 방편보다는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며, 부진사유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㉔ 고건축물보수정비 사업의 예산 목적외 사용 및 과도한 이월

• 결산 현황

- 5대궁 및 능·원 지역의 노후한 고건축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2008년 예산현액 92억 7,100만원 중 19억 9,500만원이 전용 감액되고 남은 금액의 67.1%인 48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0억 9,7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
 - 문화재청은 승례문 화재사건 이후 궁능유적기관의 소방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6억 8,900만원, 궁능유적기관의 야간경비 인원을 민간위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13억 600만원을 전용 감액.

• 주요 쟁점

- 사업의 목적인 고건축물의 보수 및 시설물 정비와는 다른 내용을 집행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
 - 당초 목릉 곡장 보수사업을 동구릉관리사무소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는 문화재의 보수정비라기 보다는 문화재 관리용 건물의 신축이라는 점에서, 이를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5대궁 및 13개능 관리소 시설물 경상관리 사업과 태강릉전시관 건립사업은 동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부합되지 않는 집행
- 예산액의 29%를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예산현액의 28.8%를 이월하는 등, 당초 치밀한 사전 계획이 미흡하여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월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으로 미집행
 - 창덕궁 빈청 정비공사 예산 등을 전용하여 궁·능·유적기관 소방인프라 구축사업(6억 8,900만원), 궁·능·유적기관 야간경비 민간위탁 경비(13억 600만원)를 충당
 - 목릉 곡장 보수사업 예산 5억원의 내역 변경을 통해 동구릉 관리사무소 건립을 추진하여, 연말에 이를 발주함에 따라 사업비 5억 6,000만원 전액이 이월.

• 시정의견

- 예산편성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이형진 예산분석관(788-4636)

보건복지가족

①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예산 연례적 과다·과소 편성

• 결산 현황

-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2008년 예산이 과소·과다계상됨
 - 생계급여사업의 예산액 2조 2,564억원 중 273억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2조 1,246억원을 집행하였으나 173억원이 불용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예산액 1조 5,948억원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30억원을 예비비에서, 41억원을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서 전용
 - 장애수당의 경우 예산액 3,279억원 중 13억원과 77억원 이·전용하였으나, 2,591억원(81.3%)만 집행되고 382억원이 불용

〈2008년 주요 의무지출 자격급여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09년 예산
		예비비	전용	이용							
생계급여	2,256,383	-	-27,343	-	2,229,040	2,211,755	2,124,552	95.3	-	17,285	2,446,001
기초노령 연금지급	1,594,768	3,004	4,149	-160	1,601,761	1,601,532	1,592,264	99.4	208	21	2,469,726
장애수당 지급	327,891		-1,334	-7,745	318,812	280,572	259,120	81.3	-	38,240	287,03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 동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부정확하게 계상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추가적인 재정증감을 조정하기 위해 예외적 수단인 예비비나 전·이용 등을 사용
 - 2005~2008년 동안 생계급여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예산 편성 당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과소 계상된 생계급여비를 보충하기 위해 추경, 예비비 등을 사용한 반면, 2007년 이후로는 오히려 생계급여예산을 과대 계상하여 예산편성 이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고, 2008년의 경우 173억원이 불용
 - 2005~2008년 동안 장애수당 지급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 2007년부터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장애수당 지급예산을 부정확하게 계상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쟁점

- 복지분야 자격급여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과다편성한 이유는 각 사업별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임
 - 2008년 생계급여 예산 일부가 불용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 편성 시 가정한 기초생활수급자수를 과다하게 추정하였고, 1인당 수급자 평균소득은 과소하게 추계했기 때문으로 보임
 - 2008년 1인당 평균소득이 과소계상된 배경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종전 경로연금(80세 이상 5만원, 80세 미만 4.5만원)만 기초생계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3.4~3.9만원을 1인당 평균소득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 예산이 과소계상된 이유가 연금급여가 20%씩 감액되는 부부공동 수급비율을 높게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임
 - 2008년 장애수당이 과다하게 계상된 원인은 차상위계층 수급자수를 부정확하게 추계했기 때문임

● 시정의견

- 복지분야 자격급여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초생계급여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급자수와 1인당 평균소득인데,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수급자수보다는 1인당 평균소득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소득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과소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부가구수급률을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참조했으므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차상위 장애인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실태자료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각 사업별 수급자수를 예측함에 있어 최근 복지분야 자격급여에 대한 지방공무원 횡령,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을 수급자수 추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06~2008년 동안 약 1% 정도의 가구가 부정수급가구로 발굴된 만큼 앞으로의 예산 편성 시 최종 예상한 수급자 중에서 3년 평균 부정수급자비율 정도를 감안하여 수급자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②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부진

• 결산 현황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인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기간의 시설 건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지역주민의 납비현상 등으로, 2008년도 지자체의 시설 기능보강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예산현액 6,123억원 중에서 2,855억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실적행률은 47%에 머무름

〈주요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008년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09 예산액
			전용	조정	이용							
[일반회계]	423,035	20,983	759	-4,200	-	440,576	364,630	46,472	29,473	211,323	47.9	454,014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7,359	-	-	2,365	-	69,724	69,632	-	91	24,020	34.5	97,390
장사시설설치	35,246	-	-	-	-	35,246	32,212	-	3,034	19,996	56.7	31,606
장애인생활 시설기능보강	27,750	-	-	-	-	27,750	24,244	-	3,506	7,236	26	27,750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관리센터	20,500	-	-	-4,200	-	16,300	15,755	520	25	0	0	19,000
정신보건시설 확충	7,187	-	-	-	-	7,187	7,187	-	-	7,187	100	6,522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12,000	-	-	-	-	12,000	12,000	-	-	4,000	33	6,000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 설치·지원	24,500	-	-	-	-	24,500	17,500	-	7,000	-	-	27,000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16,956	-	1,225	-	-	18,181	17,984	179	18	17,984	99	44,818
모부자시설 기능보강	3,483	-	-	-	-	3,483	3,483	-	-	2,919	83.8	2,786
보육시설확충	15,534	-	-	905	-	16,439	16,355	-	84	16,197	98.5	21,147
아동시설확충	8,126	-	-	-	-	8,126	8,126	-	-	8,105	99	7,618
[특별회계]	114,844	1,647	0	0	0	116,491	112,870	2,281	1,340	49,703	42	106,963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2,550	-	-	-	-	2,550	2,550	-	-	1,573	61.7	2,550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	67,536	-	-	-	-	67,536	67,536	-	-	31,165	46.2	62,50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36,700	-	-	-	-	36,700	35,450	175	1,075	9,631	26.2	33,790
서울병원현대화	2,482	396	-	-	-	2,878	1,080	1,657	141	1,080	37.5	0
국립의료원 의료장비 및 시설 현대화	5,576	1,251	-	-	-	6,827	6,254	449	124	6,254	91	8,120
[기금]	45,729	11,215	-1,750	0	0	55,194	48,616	6,155	423	24,459	44	35,171
노인치매병원 확충	14,305	-	-	-	-	14,305	14,305	-	-	5,960	41.7	1,032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9,400	-	-1,750	-	-	7,650	7,650	-	-	839	10.9	4,887
재활병원건립	9,000	-	-	-	-	9,000	9,000	-	-	100	1	11,000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1,724	-	-	-	-	1,724	1,694	-	30	1,593	92	1,552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8,800	11,215	-	-	-	20,015	13,467	6,155	393	13,467	67.3	10,200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 사업유자	2,500	-	-	-	-	2,500	2,500	-	-	2,500	100	6,500
합 계	583,608	33,845	-991	-4,200	-	612,261	526,116	54,908	31,236	285,485	47	596,148

주: 세부사항은 주요항목만 제시하였으므로,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자료, 2009.

● **주요 쟁점**

- 저조한 집행실적의 주요 원인은 지역주민의 납비현상으로 부지선정 등 건립 절차 지연, 수질보존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 혹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늦어지기 때문임
 - 감사원의 보고서(「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2008)에 따르면, 2005~2007년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집행이 지연된 251건 중 39%인 98건이 부지 미확보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이고, 34.3%인 86건이 지방자치단체 착공 준비 지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실적 부진유형〉

집행부진유형	집행부진 사유
협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일반회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그룹홈 신축지원, 소규모다기능시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특별회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기금] 노인치매병원 확충
확보한 부지가 수질보존 구역이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일반회계] 노인보건의료센터 신축, 위기청소년 치료재활 지원센터 건립지원
예산절감에 따른 계획 변경 및 수시배정사업	[일반회계] 신생아치료실 설치지원, 지방국립대병원지역암센터, 장비비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지방비 미확보	[일반회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기 타	[일반회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지역거점병원 전문의료 서비스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특별회계]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서울병원 현대화
	[기금]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재활병원 건립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을 기초로 작성, 2009.

- 이 밖에 동 사업은 기본설계, 입찰, 공사계약, 준공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우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기 때문임
 - 경기도 등 일부 시·군에 대해 신규로 교부받은 자본보조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실태를 살펴보면, 2005~2007년 동안 교부한 3조 8,759 억원 중 약 1조 7,842억원이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 예산으로 신규교부된 보조금의 약 46%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보건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주요 집행지연 원인이 지자체의 사전준비 부족인 만큼, 동 사업의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절차의 이행 여부 및 주민동의서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 지역의 이미지 형성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원, 문화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동시에 짓도록 하는 방안이나 보건복지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님비현상에 따른 사업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실행액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설계, 입찰, 공사계약, 준공까지 1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우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당해연도 3~4월에 결정되던 사업지원 대상기관을 연초에 조기통보하고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는 등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시설공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면, 동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집행내역 및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업별 및 지자체별 집행내역을 국회 결산심의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③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결여

● 결산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자리사업은 크게 자활지원사업, 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아업,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구분
 -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2008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0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자인 지자체가 20억원을 실집행함으로써 실집행률이 100%로 나타남
 -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소득공제사업은 2008년도에 21,915명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2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과소 계상됨에 따라 부족한 10억원을 전용 증액한 예산현액 233억원 중 223억 5,900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사회서비스일자리아업 중 2008년에 지자체가 발굴한 아이টে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현액 494억원 중 실집행액이 384억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77.8%로 저조함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중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2008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33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자인 지자체가 825억원을 집행함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중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에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19억 5,600만원을 실집행함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주요 일자리사업 2008년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2009년 예산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2,000	-	2,000	2,000	100.0	2,000	100.0	33,000
자활소득공제	22,300	1,000	23,300	23,300	100.0	22,359	96.0	20,610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	49,354	-	49,354	49,354	100.0	38,400	77.8	82,000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83,328	-	83,328	83,328	100.0	82,547	99.1	143,23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146	-	2,416	2,416	100.0	1,956	81.0	2,49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 주요 쟁점

- 2008년의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36%인 14곳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원인으로 2008년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및 경기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의 4개 기관에 머물렀고, 이들 기관들이 주로 서울·경기의 수도권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자활소득공제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동 사업과 동일한 국가보조율을 적용받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계급여는 법개정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은 변경된 국고보조율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 지자체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약 330여개에 해당되는 자체개발형 사업이 추진
 - 그러나 자체개발형 사업은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인해 사업관리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업효과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2008년의 경우 소독서비스, 체험학습, 건강생활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수는 많지만 집행실적은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유형별로 부대비용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집행되는 일자리 유형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서로 다른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일자리 유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가 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노인 1인당 부담한 부대비용이 9만원~15만원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하였으나 취업박람회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한 노인 45,304명 중 3,289명만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이 7.3%에 머무름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나, 2008년도 참여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수는 전체의 54.6%에 불과함
 - 실제사업에 참여하는 1, 2급 및 뇌병변장애인 등 3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수는 전체 참여자의 54.6%에 불과하고, 경증장애인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자활공동체 지원방식인 마이크로크레딧은 단순 자금대출이 아닌 창업·경영 지도 등 종합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2009년부터 동 사업은 자활공동체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개인에게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업 수행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연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이·전용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의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사업성과나 투자 효율성이 낮은 일부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사기능 사업들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자체개발형 사업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업을 매년 한두 가지씩 선별하여 전국사업으로 전환하는 상호 연계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8년까지 자체개발형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하여 발굴되다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전국사업으로 발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
- 동일 유형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절감된 부대비용 예산은 참여노인의 교육비 상향조정 등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노인친화 업체들을 확보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시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박람회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증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시정해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4 도우미 사업예산의 수요예측 부정확 및 예비비 배정 이후 지원조건 강화

• 결산 현황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수요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각각 83억원과 11억원의 예비비를 지출
 -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186억원에서 83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27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중에서 241억원을 집행행하여 집행행률이 89.5%이었음
 - 2008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54억원에서 1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65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중에서 62억원을 집행행하여 집행행률이 95.0%이었음

〈도우미 사업 2008년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8,641	8,340	26,981	26,981	24,143	89.5
아이돌보미지원	5,451	1,057	6,508	6,508	6,181	9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09.

• 주요 쟁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수요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배정 이후 지원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조건을 위배함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예비비 배정이 결정된 2008년 7월 이후 소득 지원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축소하고, 본인부담금도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가구의 경우 92,000 원으로 상향조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예비비 배정이 결정된 2008년 7월 이후 소득 지원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축소

• 시정의견

- 당초 예산 편성 시 대상자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예비비 배정 후에 정부가 임의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5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일반회계사업과 차별성 미흡

• 결산 현황

- 2008년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29억원 중에서 739억원이 집행행되어 집행행률이 89.2%로 나타남
 - 신규사업이나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건립사업(특별지원청소년서비스 제공사업,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용자지원사업, 위기청소년 치료재활 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사업은 집행행률이 90% 이상으로 집행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쟁점

- 청소년부문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은 그 설치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당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의적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반회계와 기금을 혼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선 일반회계와 기금을 구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재정지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시정의견

- 일반회계사업과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 간 이관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부문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출사업 대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사업 중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청소년육성기금 및 일반회계 간 추가적인 이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현재			이관되어야 할 소관
소관	사업명	2009년 예산	
일반회계	청소년 정책 참여사업 지원	391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지원]
	정부간 교류사업	1,024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200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267	
	청소년유해환경정화	462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건전 매체활용 지원]
	청소년유해약물에방화동강화	397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581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558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정보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359	
	합 계	4,239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3,215	일반회계[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⑥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 취약

• 결산 현황

-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 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예산 3조 23억원, 기금 1조 239억원으로 총 4조 262억원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2004~2008년〉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연평균	2008년
수입(A)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817	13.3	15.2
지출(B)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12.8	7.8
당기수지(A-B)	-19,151	-25,160	-39,109	-39,565	-26,595	-	-
국고지원 ¹⁾ (C)	34,830	36,948	38,362	36,718	40,262	3.7	9.7
국고지원 후 당기수지(A-B+C)	15,679	11,788	-747	-2,847	13,667	-	-

주: 1) 가입자 지원액임, 정부지원금은 차상위 지원금 제외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주요 쟁점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
 - 2008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2009~2013년) 3.1조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2009년에 발표
 - 2004년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5~2008년 동안 3.2조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5년에 시행
 - 2005년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6~2008년 동안 1.7조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6년에 시행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와 보장성 확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05	2006	2007	2008	2009~2013
국 고 지 원 후 당 기 수 지	2004	흑자 (1.6조원) 1,987억원 증가	8,741억원 증가	1조 713억원 증가	1조 892억원 증가	-
	2005	흑자 (1.2조원)	2,901억원 증가	7,554억원 증가	6,834억원 증가	-
	2006	적자 (-747억원)		477억원 증가	2,644억원 증가	-
	2007	적자 (-2,847억원)			62억원 증가 -2,132억원 감소	-
	2008	흑자 (1.4조원)				3.1조원 증가

주: 1. 대각선 ■ 셀은 보장성 확대가 시행된 연도의 재정소요이며,

▨ 셀은 보장성 확대가 시행된 다음 연도부터의 소요재정임

2. 2009~2013은 정부의 계획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님

-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 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음
 - 2008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3,881억원 규모의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 2005년에는 1.2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3,970억원 규모 결손처분
-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 고려 미흡
 - 건강보험이 추가 부담하게 된 재정 규모는 2008년 1,169억원이고, 2009년 5,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제도개선 사항

-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용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므로, 건강보험도 타 사회보험과 일관성 있게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재정제도 정비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계획 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논의
- 일회성 조치의 연체보험료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빈곤층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이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 빈곤층이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 보조금 지원의 안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예상 급여비지출 수준에 연동하고 불충분한 건강증진부담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고지원방식 개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Ⅲ」

[담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7)

㉞ 노인장기요양 비용의 지방 부담 가중

• 결산 현황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보험료 등 수입 8,689억원, 급여비 등 지출 5,549억원, 당기수지 3,141억원을 기록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등 수입 6,027억원, 급여비 등 지출 3,541억원, 당기수지 2,487억원 기록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보험료 등 수입 2,662억원, 급여비 등 지출 2,008억원, 당기수지 654억원 기록

• 주요 쟁점

- 총 8,236억원의 노인장기요양비용 중 국고 부담은 1,207억원 규모이며, 지방 부담은 기초생보법적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급여비 2,496억원, 타법적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급여비 67억원을 포함하여 2,574억원 규모
 - 지방 부담이 국고 부담의 2.1배에 달하며, 기초생보법적용대상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용 부담이 2,496억원으로 총 지방 부담의 96.3%를 차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2005년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시(분권교부세 신설) 포함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의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체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임

〈2008년 노인장기요양비용의 재원조달 현황〉

(단위: 억원,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 (A)	국 가 부 담									총 계 (A+B+C)
	국 고				지 방 비				합 계 (B+C)	
	보험료 예상수입 액의 20%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¹⁾	기타	소 계 (B)	기초생보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¹⁾	기타	소 계 (C)		
4,455 (54.1)	812	-	395	1,207 (14.6)	2,496	67	11	2,574 (31.3)	3,781 (45.9)	8,236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

• 제도개선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타 노인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필요
 - 가중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 등 3개 생활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7)

Ⅷ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의 초과지출

• 결산 현황

-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예산액은 총 1조 4,178억원이며, 추경 5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4,678원 중 1조 3,800억원이 집행되었음
 - 사업부문별로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지출액은 총 보육예산의 54.2%에 해당하는 7,477억원 규모이며, 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조금은 2,974억원임

• 주요 쟁점

- 2008년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은 당초 예산액 2,298억원의 31.4%인 721억원이 증액
 - 동 사업이 도입된 2006년 이후 매년 예산 부족액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지출 비중이 2006년 105.0%, 2007년 130.1%, 2008년 131.4%에 이르고 있음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 결산현황: 2006~2008년〉

(단위: 억원, %)

	예산액 (A)	예비비	전용	조정	추경	예산 현액	지출액 (B)	본예산 대비 지출비중(B/A)
2006	942	47	0	0	0	989	989	105.0
2007	1,327	253	133	13	0	1,726	1,726	130.1
2008	2,298	0	71	150	500	3,019	3,019	131.4
합 계	4,567	300	204	163	500	5,734	5,734	125.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

• 시정의견

-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확대가 보육아동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의 공급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2008년말 현재 15,525개의 가정보육시설 중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수는 3,531개에 불과함
 -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2006년 4.2%를 기록한 후 2007년 11.5%, 2008년 17.8%로 대폭 증가하였음
 - 기본보조금 지원 요건은 주로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동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기본보조금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요구
-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의 장이 기본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 공무원이 이를 심사한 후 영아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초과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7)

㉑ 국민연금 기금운용 감독소홀, 부적절한 사업선정, 일부급여비 불용 과다

● **결산 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세계 주식시장의 침체로 2008년 중 국내주식에서 14조 1,577억원, 해외주식에서 5조 1,987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2008년 국민연금기금 금융자산 운용현황〉

(단위: 억원, %)

	2007년			2008년			
	투자금액	수익률	BM대비	투자금액	수익금	수익률	BM대비
국내주식	330,892	39.3	4.2	283,054	-141,577	-38.1	1.5
해외주식	53,812	10.0	0.9	56,683	-51,987	-49.2	-14.5
국내채권	1,578,541	2.7	0.1	1,829,329	176,399	11.0	0.5
해외채권	173,628	8.6	3.3	98,117	15,125	12.8	9.0
대체투자	54,061	7.7	-0.7	88,025	1,956	2.9	13.8
합 계	2,190,934	7.1	0.3	2,355,208	-84	0.0	1.9

주: 1. 투자금액은 시가기준이며,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임

2. 국내채권에는 단기자금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연금공단,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2009. 3

- 신용회복대여금 사업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2008. 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을 통해 도입
 - 이를 위해 2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32.6만원을 대여할 계획으로 3,885억원을 여유자금에서 전용하였음

〈2008년 신용회복대여금 사업 실적〉

(단위: 억원, %)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0	3,885	3,885	186	4.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2009. 6

- 국민연금급여 중 장애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 급여예산은 지출률이 각각 87%, 75%에 불과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

〈2008년 장애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 급여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장애연금급여지급	363,300	-	363,300	316,021	47,279
반환일시금 지급	516,700	-23,000	493,700	367,897	125,80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2009. 6

• 주요 쟁점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후적인 위험관리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처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미국 및 국내 주식시장은 2008. 6월부터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금운용위원회는 2008. 9. 26일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2008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향후 기금운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
 -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전에 기금운용실적을 토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주식시장의 1일 변동 폭이 상당히 큰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한 의사결정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 하에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기금 주식운용 손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신용회복대여금 사업은 가입자의 미래소득 보장이 최우선 목표인 연금에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채무상환금 대여를 하는 것이므로 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가입자의 높은 연체율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 대여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동 대여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한 3,885억원 중 4.8%인 186억원만 대여됨으로써 이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급 대상자를 과다 추정하였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장애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를 당초 계획보다 과다 계상하고, 장애연금 월평균 급여액 산정에 있어 중복급여 조정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
 - 반환일시금의 경우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으로 인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되어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계획액을 과다 계상

• 제도개선 사항

- 2008년 위기상황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 볼 때, 현재와 같은 기금운용체계 하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이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금기금이 제대로 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가입자의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기금을 정부정책에 활용하는 신용회복대여금 지원과 같은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와 같은 신규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추정 및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반환일시금과 같이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담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7)

10 체계적인 보건의료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결산 현황

- 2008년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10대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구축, 면역백신 개발,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이 포함
 - 2008년 예산 1,447억 1,700만원 가운데 18억 6백만원이 불용되고 1,429억 1,100만원이 집행

• 주요 쟁점

- 보건의료연구개발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다부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유관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에서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동 법의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
 - 학문 분야별 구분에 기초한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는 활용가능성이 낮아 보건의료연구개발에 대한 각 부처의 투자현황 파악 곤란
 - 타겟발굴(검증),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임상 시험 간의 단절이 해소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 및 마케팅까지 이어진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제도개선 사항

- 보건의료연구개발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및 통합·조정 인프라 구축 필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규정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개정하고, 계획 수립시부터 관련부처의 부문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것과 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보고를 강제하는 절차를 규정 필요
 - 정책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추출이 가능하도록 응용영역별, 질환별,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수행 주체별 다양한 분류 기준에 기초한 공통 기술분류체계를 정립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연구 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범부처적으로 연계하여 실시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담당] 이현정 사업평가관(788-4672)

II 공무원연금기금 국고보전금 과소계상 및 금융부문 운용수익률 저조

• 결산 현황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국고보전금으로 1조 2,68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57억원의 추가보전금을 계상
 - 실제 집행액은 1조 4,29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9.6%수준이지만, 당초 계획인 1조 2,684억원 대비 시 집행액 비율은 112.7%에 이릅니다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결산현황: 2001~2008년〉

(단위: 억원, %)

	계획액 (A)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차액 (A-C)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 (C/A)
2001	8,612	8,612	599	7.0	8,013	7.0
2002	3,702	3,702	0	0.0	3,702	0.0
2003	3,782	3,782	548	14.5	3,234	14.5
2004	4,330	4,330	1,742	40.2	2,588	40.8
2005	7,330	7,330	6,096	83.2	1,234	83.2
2006	8,452	8,452	6,477	76.6	1,975	76.6
2007	9,725	9,725	9,892	101.7	-167	101.7
2008	12,684	14,341	14,294	99.7	-1,610	112.7
합 계	58,617	60,274	39,648	65.8	18,969	67.6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결산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의 경우 모든 투자 상품에서 벤치마크수익률(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수익률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문 운용평잔 4조 4,664억원에서 2,197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함

〈2008년 각 공적연금의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비교〉

(단위: %)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기준 수익률 (A)	운용 수익률 (B)	차이 (B-A)	기준 수익률 (A)	운용 수익률 (B)	차이 (B-A)	기준 수익률 (A)	운용 수익률 (B)	차이 (B-A)
채권	직접	9.55	5.06	-4.49	10.6	11.23	0.63	9.24	6.42	-2.82
	간접	9.55	-7.51	-17.06	8.42	9.48	1.07	7.36	1.19	-6.16
	소계	10.07	3.47	-6.6	9.98	11.07	1.1	8.12	4.31	-3.1
주식	직접	-39.73	-47.12	-7.39	-38.21	-37.51	0.7	-39.74	-37.09	2.65
	간접	-35.8	-40.71	-4.91	-38.23	-42.32	-4.09	-40.16	-38.87	1.29
	소계	-39.73	-44.19	-4.46	-37	-39.98	-2.98	-39.84	-38.08	1.76
대체투자		7.13	1.87	-5.26	-10.87	2.93	13.8	-	-	-
합 계		-1.33	-6.85	-5.52	-1.83	0	1.83	-9.38	-4.78	4.6

자료: 각 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의 경우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되고 있으며, 과다·과소 계상된 금액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은 1993년도에 연금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 이후에는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2008년도 결산 공무원연금의 국고보전금 규모는 2001년의 599억원에서 2008년의 1조 4,294억원으로 증가함
 -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저부담·고급여의 연금 수급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전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경우 채권부문 운용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운용수익률이 직접채권운용이나 위탁채권운용 모두 기준수익률과의 괴리가 크게 나타남
 - 또한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함
 -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명으로, 일반직 10명과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조직에서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비율은 국민연금기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개선 사항

- 국고보전금 과다·과소계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계산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국민연금법 수준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방식과 기금운용조직의 개선이 필요함
 -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채권간접운용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 풀에의 위탁운영 확대를 포함하여 향후 간접운용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해외채권,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운용상품을 다양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계약직 채용비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김대철 예산분석관(788-4633)

12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결산 현황

- 2008년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50 억원 중 222억원이 지출되어 88.8%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식품안전성제고 관련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	646	628	619	-	9
허위과대광고단속	182	164	163	-	
HACCP제도 활성화	2,338	3,166	2,479	666	21
식중독예방	712	773	772	-	1
식품위해성평가	2,425	2,318	1,914	390	14
수입식품안전관리	811	744	707	-	37
노로바이러스검사관리체계	600	596	585	-	11
건강기능식품관리	424	458	424	15	19
식품관리운영	648	596	550	18	28
식품평가운영	253	248	225	15	8
유해물질관리운영	707	577	518	-	59
영양기능식품관리운영	354	350	336	-	14
CODEX 운영활성화	419	406	381	-	25
식품등 안전관리(연구개발)	13,930	14,011	12,497	1,142	372
합 계	24,449	25,035	22,171	2,246	618

자료: 식약청,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2009. 4.

• 주요 쟁점

-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단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부실과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식품제조과정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HACCP제도 활성화사업’이 도입·운영되어 있으나, 어묵류를 포함한 6개 식품 및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HACCP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2.1%만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
- 제조·가공된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위생검사와 관련,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대한 2008년 지도·감독 실

시결과를 보면, 이들 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함

- 점검대상이 되는 68개 검사기관의 39.7%에 해당하는 27개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개 검사기관은 지정취소, 18개 검사기관은 업무정지, 그리고 7개 검사기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현황〉

(단위: 건수, %)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기타(소비자오인 등)	계
299(34.9)	104(12.1)	282(32.9)	171(20)	856(10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9. 6

- 최근 3개년간(2006~2008년) 식품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특정식품의 부적합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식품기준이나 규격과 같은 '식품공전'의 지속적인 제·개정이 요구되나, 아직 이러한 작업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2006~2008년간 식품 수거검사 현황〉

(단위: 건수, %)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주요 부적합 식품류
2006	159,313	157,796	1,517	1.0	과자류, 어육제품, 식용유지류, 얼음류, 농·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7	180,092	178,017	2,075	1.2	과자류, 식용유지, 얼음,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8	198,699	196,771	1,928	0.97	과자류, 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농산물

자료: 식약청, 2006~2008년간 각년도 「식품 등의 수거검사결과」

〈식품 기준·규격 정비 현황〉

(단위: 건수, %)

	검토상황			조치사항			
	대상수	검토완료	진행률	대상수	조치 중	조치완료	조치율
식품분야	2,531	2,531	100	718	113	169	24

주 : 검토대상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는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그리고 조치대상은 기준설정이나 개정 등의 고시가 필요한 품목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9.6.

• 제도개선 사항

- 원료- 제조 및 가공- 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선진화된 '우수시험검사기관'의 확보가 시급
 - 우수시험검사기관 확보를 위해선 본청-지방청-민간시험검사기관간 공통의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험업무(검사결과)의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변하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및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고, 시험검사기관간 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심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제조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제조식품 위생검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HACCP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과정 자체의 관리 노력이 요구됨
 - 동 제도의 적용업체가 2008년 현재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2.1%에 불과한 실정인데, 적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식품 제조과정의 현대화와 더불어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과자류와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조속한 재설정이 필요
- 식품안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유통식품관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식품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용, 수거·검사현황, 회수상황을 양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13 의약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필요

• 결산 현황

- 부정·불량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합동감시 및 교육'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4,300만원 중 1억 8,300만원이 집행되어 75.3%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쟁점

- 2008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점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135개 점검대상 의약품 취급업소의 17%에 해당하는 23개 업소와 60개 점검대상 성인용품점의 36.7%에 해당하는 22개 업소에서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기획감시 결과〉

구분	점검업소수	부적합	점검인원	비고(점검일)
서울청	18	-	12	08.09.17~08.09.19
부산청	49	13	25	08.07.10~08.07.30
경인청	14	-	22	08.07.21~08.07.25
대구청	13	7	14	08.05.20~08.05.23
광주청	23	2	12	08.06.17~08.07.14
대전청	18	1	10	08.07.22~08.07.31
합 계	135	23	95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8년 성인용품점 기획감시 결과〉

구 분	점검업소수	부적합	점검인원	비고(점검일)
서울청	16	3	4	08.08.27~08.09.02
부산청	12	7	25	08.07.10~08.07.30
경인청	9	1	22	08.08.04~08.08.08
대구청	-	-		
광주청	23	11	12	08.06.17~08.07.14
대전청	-	-		
합 계	60	22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한약재 불법유통 기획합동 단속 결과를 보면, 94개 점검대상 약국의 45.7%에 해당하는 43개 약국과 82개 점검대상 한약재 판매업소의 24.4%에 해당하는 20개 업소에서 각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한약재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약국·한약재 판매업소 기획합동단속 결과〉

구 분	점검업소수	부적합	점검인원	비고(점검일)
약 국	94	43	62	08.12.03~08.12.05
한약재	82	2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 제도개선 사항

- 의약품의 유통단계에서 부정·불법 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됨
 - 현재 의약품의 제조 및 품목 허가 등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임무로 되어 있어, 의약품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가 취약한 실정
 - 식약청-지자체간 의약품 불법유통을 단속할 협력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환경노동

Ⅰ 환경 예산의 구조적·재정적 불안정성 문제

• 결산 현황

- 2008년도 환경부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3조 7,284억원 중 3조 5,600억원을 지출하고 1,308억원을 이월시켰으며 376억원을 불용하여, 95.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환경부는 일반회계로 재정사업을 운용하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3개 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독특한 재정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세출재원의 84.8%에 해당하는 3조 1,604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 재정운용이 동 회계를 위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2008년도 환경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회계	1,820,254	1,822,917	1,822,917	-	-	100.0
환경개선특별회계	3,130,912	3,160,393	3,025,015	99,299	36,078	9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587	100,587	100,187	400	-	9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8,048	467,403	434,779	31,086	1,538	93.0
합 계	3,609,547	3,728,383	3,559,981	130,785	37,616	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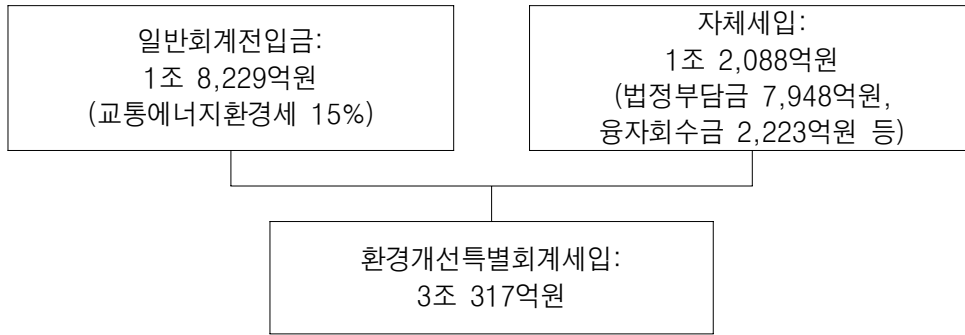
주: 일반회계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임

자료: 환경부, 「200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 2009. 6

• 주요 쟁점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보면, 전체세입 3조 317억원의 60.1%에 해당하는 1조 8,229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9.9%인 1조 2,088억원은 자체세입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전입금 비중이 큰 것은 특별회계로서 동 회계의 독립성 미흡과 환경재정 운용구조의 불안정성을 나타냄
 - 세입원별로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15%이며, 자체세입의 경우 65.8%가 환경관련 부담금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음

〈2008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별도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의 상당 부분은 환경관련 법정부담금 수입으로 충당되는데, 징수율 저조 등 부담금제도 운용상 문제는 동 회계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08년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10개의 환경관련 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조 3,219억원 대비 47.2%인 6,245억원만 징수되었고, 배출부과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423억원 대비 25.4%인 108억원만이 징수

□ 자체세입이 빈약하여 환경부 전체세출 기준 51.2%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기준 60.3%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 전입금의 세입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9년 12월 31일 폐지가 예정되어 대체 세입원 마련이 시급

● 제도개선 사항

□ 일반회계 전입금의 세입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에 대비하여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한 대체 세입원의 확보가 요구됨

- 이러한 개편은 목적세의 폐지 등을 통한 에너지 과세체계의 간소화와 개별소비세로의 통합, 에너지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환경세(탄소세)의 신중한 도입,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나 개선을 고려하여 환경관련 회계로 전입되는 재원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질 필요 있음

-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는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여러 종류의 목적세 부과를 포함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환경피해를 시장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조세기능이 미약하여 환경질을 악화시키는 측면을 가짐

□ 환경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주요 자체세입원인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운영개선이 요구되어지는데, 징수율 제고대책 마련과 더불어 조세로의 전환, 기존 부담금간 통합, 행정별로의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 필요

- 환경재원 확보목적이 크고 조세로 부과체계를 단순화할 경우 부과효과가 더욱 기대되는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부분),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은 조세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부과체계와 구조가 행정벌의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는 총량초과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대기 및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등은 벌칙금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 건전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큼으로, 에너지 세계개편과 부담금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를 따로 설치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분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하지만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공공재의 제공이라는 사업성격을 갖는 상하수도부문과 환경정책부문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부담금과 같은 자체수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임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담금 수입 대비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상하수도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	환경정책	합 계
부담금수입(A)	-	106,944	550,165	52,509	85,236	-	794,854
지출액(B)	1,345,602	329,835	344,715	274,847	228,120	501,896	3,025,015
지출액 대비 부담금 비중(A/B)	-	32.4	159.6	19.1	37.4	-	26.3

- 주: 1. 부담금 수입과 지출액은 2008년 결산기준
 2. 수질부문 부담금수입 = 수질개선부담금 + 수질배출부담금 + 총량초과부담금 +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 1/2)
 3. 대기부문 부담금수입 = 대기배출부과금 +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 +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② 지방상수도사업 운용체계의 비효율성

• 결산 현황

- 2008년 지방상수도 관련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250억원의 92.5%인 3,933억원이 집행되고, 31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당초 예산액은 3,3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급수취약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추가경정예산 32억원이 지원되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예비비 314억원이 사용

〈2008년도 지방상수도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3,100	5,866	5,616	50	200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10,200	8,200	8,200	-	-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1,074	1,074	1,074	-	-
먹는물관리	1,184	1,273	1,075	5	193
상수도연구관리	1,000	1,023	981	18	24
물산업육성연구관리	420	420	270	115	35
물절약홍보	600	600	569	-	31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970	2,970	2,970	-	-
강변여과수개발	5,500	5,500	5,500	-	-
급수취약지역식수원개발	264,639	325,806	294,720	31,086	-
고도정수처리시설	908	908	908	-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40,000	71,377	71,377	-	-
합 계	331,595	425,017	393,260	31,274	483

자료: 환경부,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I)」, 2009.3.

• 주요 쟁점

-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92.1%가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역별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99.1%의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는 반면, 농어촌면지역은 45.2%에 불과하여 약 397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충청남도과 전라남도의 경우 보급률이 7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는 충남 청양(28.1%), 전북 완주(33.4%), 경북 성주(30.5%), 경남 산청(32.1%)과 합천(32.8%)의 보급률이 저조
-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수장 가동률 저조와 지속적인 적자발생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가동률의 경우, 적정가동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53%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시설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
- 규모의 영세성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돗물요금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
 - 200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총 부채규모는 1조 3,272억원 규모
- 열악한 재정여건에 더하여 상수도사업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시설 확충이나 기존시설의 보수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생산된 수돗물 57억 4,739만톤의 12.8%인 7억 3,386만톤이 노후수도관을 통하여 누수되고 있음
- 연간 누수되는 수돗물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6,054억원에 이르는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년 발생하는 추가적 수도요금 손실은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강원 화천(49.7%), 전남 고흥(47.2%)과 진도(48.3%), 경북 문경(44.5%), 경남 고성(49.6%) 등은 누수율이 50%에 육박

● 제도개선 사항

-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에 내재된 문제는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된 것인 바, 행정구역 단위의 사업방식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광역차원의 통합적 사업방식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 2006년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하의 소규모 수도사업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일일 5천톤 미만의 소규모 정수장이 전체 정수장의 59.5%를 차지
- 광역 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한 지방상수도사업 경영평가가 필요하고, 광역적인 통합관리권역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관리의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이 요구됨
 - 환경부는 26개 권역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계획하고, 행정안전부는 특·광역시를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시·군의 상수도사업을 22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조정이 요구
 - 통합적 상수도사업 운영주체와 관련 공공위탁, 민간위탁, 지방공사화, 지자체간 협의체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이한 형태의 관리가 갖는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상수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체계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상수도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
- 광역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통합관리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노후수도관 보수사업 용자지원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③ 하수도사업 추진방식의 비효율성

• 결산 현황

- 환경부 전체 세출예산현액의 38.9%를 차지하는 하수도사업의 2008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497억원의 96.8%에 해당하는 1조 4,036억원이 집행되고, 45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2008년도 하수도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198,300	198,300	195,210	3,090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27,409	27,409	27,409	-	-
분뇨처리시설확충	17,864	17,864	17,006	858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1,722	1,722	1,644	-	78
하수관거정비	400,329	400,329	386,376	13,953	-
하수관거용자원리금상환	14,162	14,162	14,162	-	-
하수처리장설치	495,712	494,946	475,708	19,238	-
하수처리자용자원리금상환	107,516	107,516	107,516	-	-
하수도연구관리	1,282	1,462	1,199	183	8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2,831	92,831	84,672	8,159	-
하수도차관원리금상환	2,777	3,435	3,435	-	-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	89,687	89,687	89,287	400	-
합 계	1,449,591	1,449,663	1,403,624	45,881	158

자료: 환경부,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I)」, 2009.3.

• 주요 쟁점

- 1990년대 초반부터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2007년 현재 357개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23,816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간 하수도 보급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외의 경우 보급률이 대부분 90%를 상회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63.3%와 68.8%에 그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50.0%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 하수관거의 경우, 2007년 현재 전국 보급률은 73.6%로, 서울, 대전, 광주의 경우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70%를 밑도는 실적을 보임
-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수도사업이 추진되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시설을 신설하여 재정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

- 2007년 현재 348개 하수처리장 평균 가동률은 77.9%인데, 특히 140개 하수처리장은 7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은 처리원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저조한 하수처리장 가동률과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 부채를 만들고 있는 실정
- 2007년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6.2%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 부채는 총 1조 8,109억원 규모임

● 제도개선 사항

- 하수도사업의 운영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하수도사업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나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유역단위의 수질관리를 근간으로 하는데, 수질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하수도사업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추진되어, 운영상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있음
 - 기존 「하수도법」에는 유역하수도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유역하수도의 법적 지위나 운영체계 등을 포함하는 법개정의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는 별개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물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하수도사업의 방향이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
 - 하수도사업은 상수도를 통해서 이용한 물을 다시 모아 정화하고 이를 자연으로 되돌려줌으로써, 물의 재이용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2007년 현재 64억 9,000톤의 하수처리수 중 재이용량은 9.9%인 6억 4,000톤에 불과
 - 하수처리수뿐만 아니라 빗물과 중수도가 농업, 공업 및 하천유지를 위한 대체용수원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하수처리수 재이용기술의 개발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4 비점오염원 관리 부실

● 결산 현황

□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2008년 예산에서 234억원, 그리고 4대강수계관리 기금에서 173억원 등 총 407억원의 재정투자가 계획되어, 그 중 40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 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일정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의미하고,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 유출물, 도시지역 먼지와 쓰레기, 지표의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불특정하게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원

● 주요 쟁점

□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1997~1998년간에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배출부과 비율이 각각 66.5%와 27.5%였으나, 2003년에는 점오염원이 44.1%, 비점오염원이 55.9%로 비율이 역전되고, 2015년에는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이 6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점오염원 관리사업 위주의 재원투자에 개선이 요구됨

- 2008년의 경우 하수도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수질관리 관련 예산액이 총 2조원에 육박하는데, 이 중 234억원만이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에 투자
- 수질관리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점오염원 관리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수질관리 관련사업 국고보조율 현황〉

사업명	국고보조율
생태하천복원사업	- 광역시 50%, 시·군 70%
울산용암폐수처리장	- 100%
기타공단폐수처리장	- 산업단지 100%(수도권지역 50%) - 농공단지: 일반지역 50%, 추가지원지역 70%, 우선지원지역 100%
산업폐수완충저류시설	- 10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시·군·구 80%, 광역시 60%(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 전지역 70%)
비점오염저감사업(4대강 수질개선대책)	- 50%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6.

□ 재원투자의 빈약성과 별도로, 도시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이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오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기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흙탕물저감사업이 주요 내용을 이루어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음

- 고랭지농업을 위한 산림개간이나 하도준설 등 비점오염원의 발생원인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사후관리에만 치중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
- 기존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주요 하천의 유역을 단위로 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유역 전체에 걸친 비점오염원 저감효과의 극대화에 어려움이 있음
- 비점오염 배출개발사업과 사업장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장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남
 - 비점오염배출개발사업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장치의 경우, 자연형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도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치형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
 -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치위치 및 규모가 부적절하거나 배수구역 설정이 잘못되어 강우유출수가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발생

● 제도개선 사항

- 2007년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87.1%에 이르는 등 점오염원 관리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상당 부분이 비점오염원인 점을 감안하면, 점오염원 관리사업과 비점오염원 관리사업간 투자비중의 재검토가 필요
- 오염원별 산발적인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유역 전체 차원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장치 설치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랭지 경작의 경우, 경작지 확대 방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강우로 유출 전 도로청소를 통한 고부하 오염원을 저감하는 등 발생한 비점오염원의 사후처리에 치중한 기존의 저감사업에서 보다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요구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5 폐기물관리사업 추진기반 정비부실

• 결산 현황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 그리고 안전한 사후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사업의 2008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896억원의 99.8%에 해당하는 2,88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쟁점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재활용, 매립, 소각에서 폐기물 감량화 및 에너지화로 폐기물관리방식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폐기물관리방식의 전환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저하나 가동중지 문제를 야기
 - 2008년 전국 현재 중소규모 폐기물소각장의 평균가동률이 76.1%이고 가동이 중지된 소각장도 25개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폐기물 관리사업 예산현액의 73.8%가 재활용시설, 매립시설, 그리고 소각시설의 확충에 투입됨
 - 기술적·법적·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 심화, 폐기물에너지의 품질기준 미비, 그리고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실정
 - 바이오가스화(Biomass) 사업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모니터링기술과 하수슬러지 건조 및 연료화 기술 등이 아직 선진국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이 수반되지 않은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확대는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미성형 고품연료의 품질기준이 부재하고 고품연료 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련 기준 등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고품연료는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무상으로 보급되고, 민간에서 생산하는 폐플라스틱 고품연료는 낮은 보급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

• 제도개선 사항

- 폐기물 감량화나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 이전에 설계 또는 준공된 매립 및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추진하여, 기존시설의 성능향상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짐
 - 향후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획단계 이전에 시설용량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폐기물에너지화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국내개발과 이의 상용화를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설치확대 및 폐기물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⑥ 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방식의 비체계성

• 결산 현황

- 2008년도 환경부소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949억원이 투입되어, 944억원이 집행되어 97.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2008년도 보호구역관리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	집행률
자연공원	72,707	72,707	72,656	-	51	99.9
생태경관보전지역	11,828	11,343	11,039	92	212	97.3
습지보호	9,764	9,718	8,142	983	593	83.8
특정도서	469	449	433	-	16	96.4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	-	-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46	146	126	20	-	86.3
합 계	94,914	94,363	92,396	1,095	872	97.9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9. 6.

• 주요 쟁점

- 현행 보호구역관리 사업은 각각 보호구역의 관리목적이 모호하고 보호구역별 지정기준이 애매하여 보호구역간 관리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지 못함
 - 보호구역 지정목적은 보면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보전과 같이 추상적이고 광의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간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지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
 - 지정목적의 비구체성으로 인하여 동일지역에 상이한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행정력 손실 그리고 중복규제에 따르는 민원발생의 우려를 초래
 - 지리산 피아골의 경우,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
- 개별 보호구역은 각각의 관련법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호구역별 지정목적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수단도 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단속위주의 관리가 대부분
 - 생태계나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현장 전문인력이 없어 보호구역내 자원현황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하고, 자연보전 및 복원사업도 거의 없는 실정

- 행위규제 위주의 보호구역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기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형편
- 기존의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국토전반에 미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은 보호구역 지정·관리사업을 국토전반에 걸친 생태계의 연계성을 구축·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규정

● **제도개선 사항**

-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보호구역 유형별로 명확한 지정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내용도 차별화되어 동일 대상에 가해지는 중복규제를 줄이고, 비록 중복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내용이 상이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보호구역 관리수단은 주로 행위규제에 의존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켰던 바, 보호구역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태교육, 생태체험, 그리고 생태관광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보호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전담 조직 정비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현재 전국적인 거점조직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활용도 그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은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의 연계선 상에서 추진되어,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보호구역제도가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㉞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상의 문제점

• 결산 현황

- 2008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3.6조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3.7조원) 대비 집행률은 96.3%임
 - 총 21개 부처가 552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직접 일자리창출」에 총 집행액의 58.5%인 2.1조원 지출(36만명 고용 창출)

〈2008년 일자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만명)

	예 산				지원인원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계획	실적	집행률
직접 일자리창출	21,644	21,522	20,956	97.4	31.0	36.0	116.1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463	381	337	88.5	4.7	3.2	68.1
고용촉진	3,752	4,067	3,730	91.7	66.5	91.2	137.1
교육 및 훈련	10,317	11,253	10,826	96.2	379.7	421.8	111.1
합 계	36,176	37,223	35,849	96.3	481.9	552.1	114.6

주: 2009. 6월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에 의하면, 2008년 예산액은 실업급여 등 대규모 생계지원사업이 일자리사업에 포함되면서 9.4조원(공공인턴, 체당금, 대부사업 포함)으로 확대됨.

자료: 각 부처(국무총리실 일자리사업 2009. 4월말 분류기준).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정
 - 취업자 수: 2009. 7월 2,383만명으로 6월 이후 다시 감소
 - 취업자 수 감소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현저히 발생
 - 실업률은 3.7%(2009. 7)로 전년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청년실업률 : 7.6%(2008. 12) → 8.8%(2009. 3) → 7.0%(2009. 5) → 8.5%(2009. 7)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62.5만명, 그냥 쉬는 사람 138.7만명, 구직단념자 17.2만명으로 합계 218만명(2009. 7)에 달함

● 주요 쟁점

□ 사업 총괄 조정 및 범부처적 성과평가체계 구축 미비

- 다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을 기획·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과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미비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적 관리와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 미흡

- 사회서비스자리(9,921억원)는 일자리창출 수단으로 유용하나,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미흡
 - 「문화관광해설사」(25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270억원), 「아이돌보미」(65억원) 등 호출근로 형태 근로자는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근로복지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
- ‘사회적 기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동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미흡

□ 해외봉사단과견사업(4개 사업, 487억원)은 운영상 예산낭비 요소가 있음

- 「KOICA 해외봉사단과견사업」(439억원)의 경우, 일부 직종에서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재모집에 추가적인 행정비용 소요
- 해외봉사단과견사업을 수행하는 KOICA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의 기관들이 유사한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별도로 실시

□ 주요 일자리사업의 재정효율성 미흡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68억원)의 경우,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운영비에 '프로그램 매니저'(일자리) 인건비(22.4억원) 등 포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798억원)의 경우, 고용촉진효과가 경기침체가 도래한 2008년 하반기에 오히려 감소
 - 분기별 지원인원: 1/4분기 2,135명, 2/4분기 1,578명, 3/4분기 1,353명, 4/4분기 1,387명
-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15억원)의 경우, 정부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고, 외국의 석학유치 등 사업목적 달성 미흡
 - 전문인력양성은 인력양성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할 사안이며, 정부지원 교육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음

• 제도개선 사항

□ 사업 총괄 조정 및 범부처적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

- 다부처 일자리사업을 기획·총괄하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 고용전략에 기초하여 일자리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계획 수립과 평가 필요
-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정교하고 예측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
 - 관련 법률안: 「일자리영향평가법안」(2008. 10월 발의) 등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적 관리와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 보완 필요

-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도록 조례제정 독려 필요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법령개정 검토 필요

□ 해외봉사단과견사업의 예산낭비 요소 제거 필요

- 「KOICA 해외봉사단과견사업」의 경우, 105개 직종을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응시미달이 발생하는 직종의 폐지 검토 필요
- 해외봉사단과견 이전단계의 교육을 가능한 한 통합하고, 각 기관의 교육경험 및 노하우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필요

□ 주요 일자리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 필요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인한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촉진효과가 특히 경기침체 시에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고용위기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치밀한 제도설계 필요
-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정부지원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⑧ 고용보험기금 사업 수행체계 정비 미흡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고용보험기금은 총 9조원을 운용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 지출은 5.1조원, 여유자금 운용액은 3.9조원임
 -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8조원, 실업급여비 지출 3.2조원 등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현황〉

(단위: 억원)

	당초계획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비]	47,722	259	4,340	52,320	50,757	114	1,44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8,630	259	286	19,179	18,015	114	1,050
실업급여사업	28,018	-	4,055	32,073	31,741	-	332
고용보험 운영비	1,074	-	-484	1,069	1,001	0.2	67
[여유자금 운용]	69,397	-	-4,340	65,057	39,467	-	-
합 계	117,119	259	-	117,377	90,224	114	-

자료: 노동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안)」, 2009. 6.

•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사항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도한 계획변경

- 2008년 연도내 증·감액 변경 사업 수는 각각 19개와 59개, 증·감액 규모는 각각 1,620억원과 1,300억원에 달함
 -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연도 중 증액 및 감액 변경을 반복하였으며,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증액(173억원) 규모보다 불용액(267억원) 규모가 컸음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면밀한 사전수요예측이 미흡한 것이 빈번한 계획변경의 주요 요인
 -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8년 143개에 달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었기 때문

□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 고용위기 시에 오히려 사업효과 감소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798억원, 6,453명)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중 수요 증가로 증액변경하였으나, 하반기 고용위기 시 사업수요 감소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
 - ※ 분기별 지원인원은 1/4분기 2,135명, 2/4분기 1,578명, 3/4분기 1,353명, 4/4분기 1,387명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419억원)의 경우 상반기에 집행실적 부진으로 1차 감액(57억원) 후, 하반기 고용위기 시 2차 감액(102억원)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면밀한 수요예측 미흡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400만원)의 경우 건설현장과는 동떨어진 지원조건을 설정하여 당초계획(29억원) 대비 집행률이 0.1%에 불과
- 일단 도입된 재정사업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이 계속 유지
 - 2008년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49.6%), 「교대제전환지원금」(52.6%), 「전직지원장려금」(76.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51.1%)
 -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사업활동과 사업목적 간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2010년도 자금 운용계획안 수립시 유사사업과의 통합 및 사업폐지 등 고려 필요

□ 고용보험기금 사업수행 체계 정비 미흡

- 2008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143개에 달하는 사업이 지원대상과 지원수단, 사업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각각 운영되면서,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실정
 - 경제 및 노동시장 여건과 현장을 감안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사업수요예측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하여 집행실적 부진과 빈번한 자금운용계획 변경, 일단 도입된 재정사업의 경직적 운영으로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등의 문제 초래
- 향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사업을 큰 틀로 묶어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9] 직업방송 송출사업의 성과 저조 등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은 47억원을 지출하였고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은 74.1%,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231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 91.0%임
 -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사업」의 세사업으로, 방송의 광역성, 파급력 등을 활용하여 지방거주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과 다양한 직업-고용-일자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경제 TV'(WOW TV)와 송출계약을 맺고, 1일 3시간씩(월~금요일) 주요 방송시간대(6~9시)에 한국경제 TV를 비롯한 4개 제작사의 프로그램 송출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대학 재학생 등의 진로·직업지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학에 공모를 통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선별 지원
 - 대학은 취업캠프, 직업 적성·인성 검사, 직장체험프로그램, 멘토링, 취업박람회, 취업교과 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쟁점

-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의 성과 저조와 예산낭비 요소 발생
 - 직업방송이 송출되는 주요 방송시간대 시청률은 0.197%에 불과하여, 방송의 광역성을 이용한 직업훈련·고용정보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
 - 동 사업은 2002~2008년간 총 28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 사업이 시작된 2002년 EBS, 2005년 Job TV에 송출계약을 한 바 있으나, 당시에 시청률 저조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동일한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중복되어 지출
 - 방송 송출계약사인 한국경제 TV의 VOD 서비스와 동일한 VOD 콘텐츠를 직업방송 홈페이지(worktv.or.kr)에서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콘텐츠에 별도의 사업비 지출
 -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의 시청 실적도 매우 미미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미흡하고, 대학의 부담금 매칭비율 하락 문제 등이 제기됨
 -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취업지원기능의 높은 민간위탁 비중 문제 발생
 - 71개 대학에 대한 민간위탁 실태조사(2007년) 결과, 취업지원기능의 20% 이상을 민간위탁하는 대학은 56.2%, 50% 이상 위탁 대학은 16.8%
 - 대학의 부담금 매칭비율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
 - 대학부담금 매칭비율: 53.4%(2006) → 40.2%(2007) → 38.9%(2008)

- 동 사업은 2006년 시작된 사업이나, 여전히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사업평가용역을 수행

- '사업 만족도'만을 성과지표로 설정

● **제도개선 사항**

- '직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저조와 사업비 중복 지출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여부 또는 현재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인력공단은 직업방송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동 방송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VOD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는 입장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민간위탁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한 환수 조치, 대학부담금 매칭비율 상향조정, 성과지표의 확대 등이 요구됨

- 노동부는 민간위탁 비중이 높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은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 있음

- 향후 매칭비율의 상향 조정 등의 개선방안 필요

- 대학부담금의 매칭비율 하락은 현 지원조건이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부담하도록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사업 만족도' 이외에 '지원대학과 비지원대학간의 성과 차이 비교', '지원 전후 취업률 비교' 등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적용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10 고용보험기금 사업 부정수급 문제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총 136억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부정수급액은 각각 50억원, 86억원이며, 총 부정수급액 대비 비중은 각각 36.8%, 63.2%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91.6%인 46억원이고,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4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2005~2008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 및 부정수급액 증가율은 각각 25.3%, 48.6%이며, 수급자 수 대비 부정수급자 수 비율도 2005년 1.3%에서 2008년 1.9%로 증가

〈고용보험기금 사업 부정수급 현황: 2007~2008년〉

(단위: 건, 명, 백만원, %)

	2007		2008	
	건수 및 인원	금액	건수 및 인원	금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건)	897	4,480	1,995	4,991
실업급여(명)	15,297	10,078	19,033	8,585
합 계	-	14,558	-	13,576

자료: 노동부.

•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사항

□ 고용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과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필요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 있음
- 2009년 연말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140만~150만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2009년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2008년의 3,661억원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

□ 고용보험사업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 강구 필요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조사기법 개발 필요
- 노동부는 2007. 12월부터 부정수급 전담조사팀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담당자 개인별 부정수급 적발 능력에 차이가 크다는 문제 상존
- 부정수급 자동경보 지표의 보완과 부정수급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연계 확대 필요

- 2007. 7월부터 구축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은 실제 부정수급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있음
- 2002년부터 4대 사회보험과 국세청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목적으로는 정보연계가 구축되지 않아,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있음
- 부정수급액의 환수 철저
 - 2008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56.9%로,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는 문제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Ⅱ 산재보험기금 재정 불안정 및 사업성과 저조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산재보험기금의 조달 및 운용 실적은 7조 8,943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
 - 조달실적 중 산재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4조 8,460억원이며, 운용실적 중 산재보험급여비 지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조 4,219억원

● 주요 쟁점

□ 연금급여비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 2008년 산재보험급여비 지출액(3조 4,219억원)은 2001년 급여비의 2배에 달하며, 급여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으로 구성된 연금급여비 지출의 급증
 - 2001~2008년간 연평균 증가율: 연금급여비 22.5%(vs. 비연금 급여비 7.1%), 연금 수급자 수 18.9%(vs. 총 수급자 수 7.8%)
 - 총 급여비 대비 연금지급액 비중: 15.3%(2001) → 31.9%(2008), 연금수급자 수 비중: 12.2%(2001) → 24.2%(2008)
- 연금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므로,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 초래
 - 후세대는 미래의 당해연도 연금급여비 부담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이어온 급여비까지 부담하는 문제 발생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요양비 대부사업」 설계 미흡

- 지원조건이 현실적인 여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대상이 적었고, 대부가 부채라는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재해근로자가 동 사업 활용 유인이 적었음
 - 2008년 사업비 40억원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2009. 5월 현재 집행률도 0.2%에 불과

□ 산재예방사업의 성과 미흡

- 매년 2,500억원을 상회하는 사업비(2008년 2,648억원)를 투자하였으나, 산업재해 감소 실적은 낮음
 - 2008년 산업재해율은 전년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 8년 동안 0.7% 대에 머무름
 - 산재사고자 1만명당 사망자 수도 1.07명(하루 평균 4명 사망)으로 2007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협착·추락 등 전통적 다발 재해가 전체 재해유형 중 50%를 상회

● **제도개선 사항**

□ 지속적인 연금급여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책임준비금 적립 필요

- 현재 수정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최근 연금급여비 급증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산재보험재정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확보율은 2007년 47.0%에서 2008년 118.2%까지 급속히 상승하였으나, 이는 적립액의 증가를 의미하기 보다는 단순히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책임준비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는 적절치 않음

- 연금급여비 지출을 고려한 책임준비금 산정 및 보험료율과 부과방식 조정 등을 통하여 산재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신규 연금급여비 발생분을 적절히 감안하여 적립금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방안 검토 필요

□ 현장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면밀한 사전수요예측과 사업설계 필요

- 「요양비 대부사업」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대부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법」 제9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므로, 사업폐지는 어려움

□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한 재해다발·취약부문에 특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 법적 규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수동적 재해예방으로는 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동하여 예방활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12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사업의 성과 미흡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능력개발 예산사업은 예산현액(712억원) 대비 565억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3%
 - 「새터민직업훈련」(40억원), 「영세자영업자직업훈련」(16억원), 「자활훈련」(48억원) 등을 비롯한 7개 사업으로 구성

● 주요 쟁점

- 새터민, 영세자영업자, 자활대상자 등 3개 취업취약계층 대상 훈련사업(104억원)의 취업률 및 근속기간 등 실제적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3개 계층 대상 훈련사업의 중도탈락률은 12~18%로 10% 이내의 타 사업보다 높으며, 취업률은 3개 사업 모두 50% 이하로 낮음
 - 특히 영세자영업자직업훈련은 중도탈락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10.7%로 타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직업훈련을 수료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장 취업률이 낮고, 근속기간도 짧음
 - 2008년 동 3개 계층 훈련수료자 중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자 수 비중은 38.2~57.5%에 불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자 중 취업 후 6개월 이전 이·퇴직자 수는 62~81%에 달함

● 제도개선 사항

- 취업취약계층이 훈련기간 동안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조치 강구 필요
 -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 단기일자리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과 미취업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초래
 - 2008년 4~6개월의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1인당 평균 36.2만원)와 교통비·식비(월 11~14만원 수준), 훈련수당(월 10~4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생계유지에는 부족한 수준
- 근로현장의 요구와 취업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 등의 사후관리, 재직근로자 직업향상훈련 참여 등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갖도록 유도 필요
 - 낮은 취업률과 짧은 근속기간의 주요 요인은 낮은 근로의지와 더불어, 기업 조직 문화 적응실패와 단기간의 직업훈련만으로는 근로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II」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13 근로자장학사업의 이중수혜자 발생 문제

● 결산 현황

- 2008년도 결산결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근로자장학사업」은 88억 5,800만원(6,356명)을 지출하여 당초계획(94억 3,8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3.9%임
 - 동 사업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수행함
 - 지원조건: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1년간 고교학자금 지원
 - ※ 단, 신청근로자 및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259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년도에 신청인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가 6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주요 쟁점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장학금 제도와의 이중 수혜로 인하여 461명의 반환자가 발생하였고, 반환액은 2억 2,800만원에 이름
 - 2004~2008년간 반환자 수는 총 1,693명에 달하고, 연간 반환자 수는 300~400명 수준임
 - 이중 수혜로 인한 반환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보건복지가족부) 등 2개 사업과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140%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학교운영비만 지원(기타 학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으로서 최저생계비 100~130%인 자를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제외)을 지원하는 사업

● 제도개선 사항

- 불필요한 이중수혜로 인한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동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등도 학교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각 부처간 학자금 지급시 중복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14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관리 체계화 필요

• 결산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생에게 1인당 약 8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인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
 - 동 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30억원을 모두 집행하여 총 692명의 전문대학생을 지원

• 주요 쟁점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해외에 파견된 인턴에 대한 현지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점 지적
 - 첫째, 동 사업은 2005년 사업 추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한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사업선정 기준이 학점 및 어학성적만으로 구성되어 신청자의 가구소득 및 생활수준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에서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응답한 참여자 45명 중 무비자로 다녀온 경우가 10명(22.2%)으로 조사되는 등 비자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관리자가 철저한 생활지도 및 업무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자 문제로 인해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한 경우, 사비를 들여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신청 거절로 인해 출국이 늦어진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제도개선 사항

-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필요
 - 당초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성적 및 어학요건 이외에 가구소득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예산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방안 등 고려 필요
- 해외에 파견되는 인턴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 필요
 -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선정 시 비자 발급 등 인턴사업 운영방식의 적정성, 현지관리자 실효성 및 현지 인턴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보다 엄밀히 평가 필요
 - 또한 해외인턴십 우수 사례 및 우수 참여 대학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규 참여 대학의 경우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인턴사업 평가」

[담당] 박애린 사업평가관(788-4681)

여성

①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구축사업의 제반문제

• 결산 현황

-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확보와 관련된 여성부 재원은 예산현액기준 18억 원으로, 이 중 92.0%에 해당하는 1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마련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정책연구개발사업	475	475	410	50	15	86.3
여성정책협의	112	166	160	-	6	96.4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151	1,044	997	-	47	95.5
대외협력강화	102	99	75	-	24	75.8
합 계	1,840	1,784	1,642	50	92	92.0

자료: 여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 자료」, 2009. 3

• 주요 쟁점

- 현행 여성정책개발체계를 보면 여성정책 관련 현안이슈의 선정부터 정책 개발까지 외부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단일주제에 관한 정책연구는 ‘정책연구개발사업’ 과 같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되고, 현안주제 개발 및 정책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의 ‘여성정책전략센터’ 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성관련 중장기적 계획이나 정책의 수립은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

- 2008년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사항 점검과 같이 여성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용역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남북여성교류활성화연구”와 같이 사업내용(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과 부합되지 못하는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실정

- 여성부 현재 정원이 100명임을 고려할 때, 62명의 대규모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자문위원의 의견 개진과 수렴이라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여성부 정책개발의 주요 내용이 여성일자리나 성폭력 및 성매매, 그리고 가정폭력 같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 주제보다는 성주류화나 성평등과 같은 여성권익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전환시키기 위한 선도적 이슈에 비중을 두고 있음

- 2008년 여성부는 40개 연구용역과제에 25억원이 지원(260목)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중 행정정보화, 민원서비스, 건국60주년 행사관련 용역을 제외한 34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성별영향평거나 성평등과 관련되어 있음

- 선도적 여성정책의 추진은 '여성정책협의사업'이나 '대외협력강화사업'과 같이 타부처나 지자체의 이해나 협조의 획득 또는 여성단체의 지지 확보 등과 같은 여성정책개발 이외의 추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실정임

- **제도개선 사항**

-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부 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시의적인 정책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한정하여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
 - 성주류화 및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대안개발은 여성부 자체의 연구용역보다는 여성연구원과 양성평등진흥원의 자체사업이나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실제 각종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②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관련사업의 비효율성

• 결산 현황

-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지원에 일반회계에서 42억원과 여성발전기금에서 30억원 등 총 7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96.6%에 해당하는 7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부 인력 개발 및 활용의 특징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 인력개발과 취업지원에 있음

〈2008년도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관련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일반 회계	여성고용기회확대	100	100	91	-	9	91.0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819	3,447	3,442	-	5	99.9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50	45	43	-	2	95.6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보조)	328	328	328	-	-	100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300	270	132	131	7	48.9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온라인교육	100	100	100	-	-	100
여성 발전 기금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950	950	950	-	-	100
	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	1,500	1,800	1,776	-	24	98.7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201	201	136	-	65	67.7
합 계		7,348	7,241	6,998	131	112	96.6

자료: 여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 자료」, 2009. 3

•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사항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현행 여성부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여성인력개발과 취업지원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여성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선정과 채용지원은 여성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 괴리 발생의 여지가 큼
 - 여성고용기회확대,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여성부 직접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인력개발이라는 취지를 반영 지자체 자체사업이나 국고보조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구별하고 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는 지역적 특징의 강조 이외에는 기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기능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못하여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5개 산업단지에 기업의 구인난과 여성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취업지원기구로서 지자체가 설치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비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여성의 구직난 동시해소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사업주체	여성부→ 지자체	여성부→ 지자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여성부 및 노동부 지정 (기존의 여성교육훈련기관 지정)
시설수	전국 5개소	전국 72개소
사업내용	one-stop 종합취업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one-stop 종합취업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중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재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과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이, 고학력 미취업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이나 “전문직종 교육훈련”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원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은 현재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 전문직종 교육훈련, 전업주부재취업지원, 비전통적 여성진출분야 취업지원 등 5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
- 2008년 5개 프로그램별 취업실적을 보면,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과 전업주부재취업지원의 취업률이 각각 78.5%와 71.6%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이나 전문직종 취업지원 취업률 63.7%와 55.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③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지원장치 미흡

• 결산 현황

- 성차별과 장애차별 등 이중차별로 사회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3억 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마련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52	352	351	-	1	99.7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관리	50	50	43	-	7	86.0
합 계	402	402	394	-	8	98.0

자료: 여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 자료」, 2009. 3

• 주요 쟁점

- 2008년도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관련사업은 대부분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장애인이 실제 사회활동에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2008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72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관리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 및 이미지 편집과정 시범사업 운영이 주요 내용임

• 제도개선 사항

- 현재 추진 중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실효성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여성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④ 여성발전기금의 준치 타당성 미흡

• 결산 현황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29조에 근거하여 1997년도부터 조성되어 1998년부터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등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2008년 계획현액 192억원 중 18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쟁점

- 정부출연금이 중단된 2006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수지는 8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적자는 2007년 164억원, 2008년 113억원을 기록
 - 2008년도에는 일부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46.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50.8% 감소하여 11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여성발전기금 결산 현황: 1997~2008년〉

(단위: 백만원)

	수입(A)				지출(B)			순조성액 (A-B)	
	정부출연금		민간 출연금	이자 등	소계	사업비	관리비 및 기타		소계
	일반회계	복권기금							
1997	5,000	-	-	424	5,424	-	-	-	5,424
1998	5,000	-	25	816	5,841	80	-	80	5,761
1999	5,000	-	12	1,418	6,430	300	2	302	6,128
2000	5,000	-	12	1,719	6,731	589	2	591	6,140
2001	5,000	-	11	1,927	6,938	1,320	3	1,323	5,615
2002	10,000	-	509	2,210	12,719	2,705	9	2,714	10,005
2003	10,000	-	-	2,140	12,140	4,444	77	4,521	7,619
2004	8,000	7,618	200	2,798	18,616	10,744	83	10,827	7,789
2005	6,000	11,125	200	3,446	20,771	20,140	244	20,384	387
2006	-	12,511	700	4,687	17,898	26,340	104	26,444	-8,546
2007	-	12,051	-	5,837	17,888	34,138	114	34,252	-16,364
2008	-	4,140	200	4,505	8,845	18,142	1,979	20,121	-11,276
합 계	59,000	47,445	1,869	31,927	140,241	118,942	2,617	121,559	18,682

자료: 여성부(2009), 「2008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결산개요」

- 2007년도 채용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준치를 권고 받은 상태에서, 정부출연 없이는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금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예상됨

- 1997년부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출연금과 복권기금 전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6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중단되어 기금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음
-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폐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2007년 기획예산처는 기금준치평가 결과 “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지속되고 자체재원 확보가 가시화” 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준치를 권고(2007. 5)

● 제도개선 사항

-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이 갖추어야 할 재원의 독립성 및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여성발전기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여성부(구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보육·가족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때는 여성발전기금이 남녀평등과 여성권의 향상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육·가족부문 예산이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로 이체됨에 따라 여성부 일반회계에는 남녀평등, 여성권의 증진 등과 관련한 사업만이 남아 있으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적은 사업을 재원의 안정성이 부족한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사업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담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국방

① 국방중기예산계획의 연례적인 과다편성에 따른 국방예산의 비정상적 운용

● 결산 현황

- 2008년도 국방비는 예산액 27조 2671억원이 계상되어, 99%인 26조 9,895억 원이 지출되었다.

〈 2008년도 국방부 · 방위사업청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국방부	일반회계	18,967,715	19,519,657	18,768,912
	특별회계	618,059	784,367	427,533
	소계(A)	19,585,773	20,304,024	19,196,445
방위사업청	일반회계(B)	7,681,344	8,132,237	7,793,104
국방비(A+B)		27,267,117	28,436,261	26,989,549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9.6.

● 주요 쟁점

□ 연례적인 국방예산중기계획의 과다편성

- 국방부는 매년 국회의 확정예산보다 평균 5,000억원을 초과한 지출계획(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2004~2009년 국방중기예산계획과 국회 확정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중기계획(A)	195,179	218,927	235,500	247,417	269,321	292,873	243,203
확정예산(B)	189,412	211,026	225,129	244,972	266,490	289,803	237,805
차이(A-B)	5,767	7,901	10,371	2,445	2,831	3,070	5,398

자료: 국방부, 2009.6.

-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운영과 비정상적인 사업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그 여파로 군의 사기저하, 전투준비태세 약화 그리고 첨단군사력 건설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비정상적인 국방예산운영에 따른 부작용〉

	주요 문제점
병력운영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을 예산의 이전용으로 해결 * 병 급여 증액의 제한 * 피복·급식 향상의 제한
전력유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부족으로 생활관·군관사사업 민자(BTL 및 BTO) 차입 * 장비·수리부속 예산부족으로 정비지연, 가동률저하, 사고율 증가 * 시설 개보수 지연으로 시설 노후화 가속 * 부대운영비 부족으로 초급간부들의 개인부담 증가와 군 사기의 저하 * 교육·훈련 비용(연료, 교탄 등) 제한으로 훈련 축소 등 전투준비태세 약화 * 훈련장 부지 및 시설확보 지연으로 실전적 교육훈련 제한 * C4I 및 자원관리체계 등 정보화 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미흡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지휘통제통신 기능 저하 * PC, 주전산기 등 정보화 기기 노후화로 업무효율성 저하 * 장병 의료지원 체계 미비 및 시설노후화 * 우수자원의 장기복무 회피와 충원 어려움 * 위장망/텐트 등 전투력 유지 필수물자 및 행정사무기기, 부대비품 등 부대 운영 기본물자 부족 심화 * 공군 전투기조종사들 조기 전역(민항기 시장으로 이동) * 위험수당 증액 제한으로 잠수함 등 기피업무 증가 * 유급지원병 및 부사관 증원에 차질 발생과 전투준비태세의 불안정성 증가 * 예비군 훈련시설 및 환경개선, 훈련지원비 현실화 지연
방위력 개선 (방위 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고가 및 거대 첨단무기 사업의 추진으로 다수의 중·소 전력사업들의 사업지연 및 기간 연장 * 해·공군 전력증강과 자주적 군사력 건설 연기 * 전략무기 획득제한 * 국산화보다 조기해외획득 선호로 국방과학기술개발 저조 * 전력증강 사업비 우선 배정으로 연구개발비 증액의 제한

● 시정의견

□ 국방중기계획 확정 전 국회 보고 필요

- 국방재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국민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국방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점검이 필요함.
-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의 확정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법 개정(서종표의원 대표발의, 2009.7.2시행)으로 국방중기계획의 대통령 승인 직후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 되었으나, 이것은 확정 후 보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② 군수정보체계사업의 200억원 예산낭비

● 결산 현황

- 2008년도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은 예산액 137억원이 계상되어 70%인 95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음.

〈2008년도 군수통합정보체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13,700	-	-	-4,130	-	9,570	9,570	-	0.069

자료: 국방부, 2009.6.

● 주요 쟁점

- 2005~2008년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 중복지출
 -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명확한 이유없이 4개로 분리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됨.
 - 중복 지출된 부분은 ① 프로그램 개발비용, ② DATA BASE엔진 구입비용, ③ 서버(Main 컴퓨터) 구입비용, ④ 상용 SW 구매비용, ⑤ 통신망 설치비, ⑥ 보안시스템(IDS, Fire Wall) 구입비용 등.

● 시정의견

- 예산 낭비 약 200억원과 재발 방지 필요
 - 중복지출로 발생한 예산낭비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정보체계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필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③ 국방연구개발비의 축소와 정책후퇴

● 결산 현황

- 200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1조 4,522억원이 계상되어 98%인 1조 4,262억원이 집행됨.

〈200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비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8	14,522	261	-	-89	14,694	14,262	406	26
2009	16,090	406			14,496			

자료: 방위사업청, 2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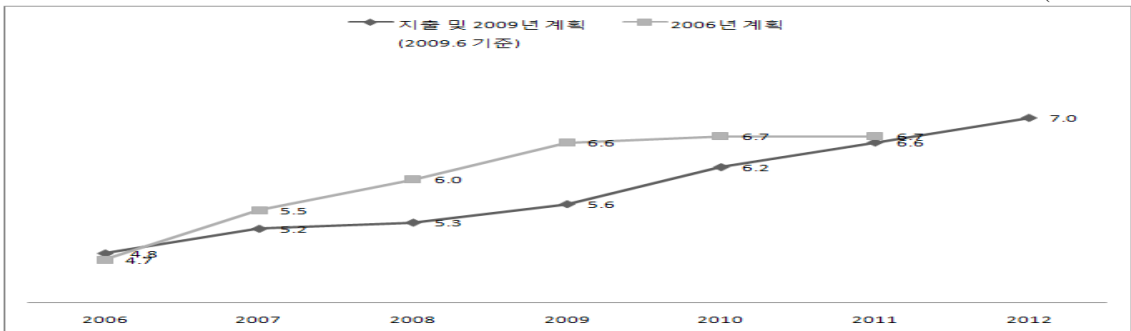
● 주요 쟁점

□ 2006년 계획 대비 연구개발비 축소

-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지출과 예산계획이 2006년 계획과 대비하여 점차 하향 조정(증가율 3%p 하향, 약 2,400억원 축소) 되고 있음.
- 초·중반에 하향 편성하고 후반부에 예산을 상향 편성하는 방식은 정부의 전형적인 예산계획 유형임.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추세 비교〉

(단위: %)



□ 국방 연구개발정책 후퇴

- 2007년부터 계획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축소되는 것은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적극'에서 '소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연구개발 후퇴는 방위사업청의 '국방 R&D 강화'와 '방산 신성장동력화' 정책'과 배치됨.

● 시정 의견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2010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의 연구개발비를 증액 편성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IV」

[담당] 문중열 분석관(788-4639)

4 국방분야 인건비 비중의 과다

• 결산 현황

□ 국방부의 2008년도 인건비는 예산액 8조 4,550억원의 99%인 8조 3,573억원이 지출되었음.

-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국방부 일반공무원, 향토방위군무원(예비군 간부), 상근 예비역(일명 동사무소 방위병), 병의 인건비임.

〈2008년도 국방부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8	84,550	0	0 (0)	-747 (0)	83,803	83,573	0	230	98.8

주: 건강보험부담금 제외 금액, 2009년 예산 8조 6,262억원(추경 포함).

자료: 국방부, 2009.6.

• 주요 쟁점

□ 비정상적인 국방예산운영

- 예산부족에 따른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으로 병력운영, 전력유지 및 방위력개선 등 국방 전 분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음.
 - 국방시설과 무기들은 노후화되고, 우수자원은 군장기복무를 기피하며, 필요한 다수의 소규모 방위력개선 사업들은 착수를 아예 못하거나 지연되고, 예산확보와 전력사업 추진을 위한 육·해·공군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의 충돌은 가속화되고 있음.

□ 인건비는 국방예산운영의 압박요인

- 국방비의 3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의무지출이고 경직성 경비여서, 방위력개선, 국방 연구개발, 전력유지비 증액의 여력을 제한하는 등 국방예산운영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음.

〈2008년도 국방비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인건비(병력운영)	피복·급식기타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32	5	29	34

• 시정의견

□ 국방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인건비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예산부족에 따른 국방 전 분야의 문제를 완화하고 전력유지와 방위력개선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휴 인력을 감축하고 병력운영의 효율화를 향상하는 등 인건비 절감과 최소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중열 분석관(788-4639)

5 장교증원의 타당성 미흡

• 결산 현황

- 국방분야 장교(준위·소위 이상)의 인건비는 2008회계연도 예산액 3조 2,675 억원이 계상되어 99%인 3조 2,169억원이 집행되었음.

〈2008~2009년도 장교인건비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8	32,675	0	5.8 (-53)	-454	32,173	32,169	0	4.8	98.5
2009	33,394	0							

자료: 국방부, 2009.6.

• 주요 쟁점

- 장교유지비용은 국방 인건비의 압박요인
 - 경직성 경비이며 의무지출인 장교유지비용은 국방 인건비의 39%를 차지하고, 1인당 연유지비는 평균 4,600만원임.

〈2008년도 인건비 지출액과 정원〉

(단위: 억원, 명)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	병
인건비	32,800 (39)	32,880 (39)	12,272 (15)	847 (1)	5,210 (6)
정원	71,344 (10)	107,147 (15)	26,245 (4)	1,635 (0.2)	498,760 (71)

주: 1. 정원수는 2008년도 예산편성 정원임; 2. 공무원 = 국방부 + 방위사업청; 3. 병 = 병 + 상근예비역; 4. ()는 구성비이며 단위는 %.

• 시정의견

- 장교증원 억제 필요
 - 국방부는 2012년까지 장교 1,420명 증원에 2,369억원의 예산소요를 가정하며 2008년도 장교증원 소요예산 114억원 계상 등 장교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비용의 장교유지비와 국방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하면 장교증원보다는 현 정원의 타당성 검증과 비전투부대 효율화 등 장교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6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산관리체계 부실

• 결산 현황

- 2008년도 국방부 결산결과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운영·유지하는데 다음과 같이 총 430억원이 지출되었음

〈2008년도 사관학교 지출현황〉

(단위: 억원)

육군	해군	공군	합계
239	49	142	430

• 주요 쟁점

- 3軍 3색의 사관학교 예산체계와 국가재정법 위반사항
 - 동일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관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 체계가 각 군별로 3軍 3색임.
- 각 각 다른 예산편성 및 관리체계는 각 군별 예산운영의 임의성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 또한 이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21조제3항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는 기관별 편성원칙을 위반, ② 기관별 예산편성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성과와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게 되어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와도 배치됨.

• 시정의견

- 사관학교 예산관리 체계의 일원화 필요
 - 각 군 사관학교의 무원칙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가 필요함.
 - 육·해·공군 본부는 사관학교의 비용만 사관학교 예산으로 편성함.
 -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일원화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7 국방 취업지원센터의 접근성 부족

• 결산 현황

- 1994년 시작된 전직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전역 예정간부들에게 1년간 취업지원하는 사업임.
- 2008년도 지출된 금액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총 92억 3,900만원

〈2006~2009년도 전직지원사업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A	집행률 B
2006	7,482		-122		7,360	7,015	0	345	93.7	95.3
2007	8,442		-3		8,439	7,975	440	24	94.5	94.5
2008	9,172	440	12		9,623	9,239	360	23	100.7	96.0
2009	9,274									

주: 집행률 A = 예산액 대비, 집행률 B = 예산현액대비

자료: 국방부, 2009.6.

• 주요 쟁점

- 국방취업지원센터 접근성 부족
 -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는 서울(용산) 한 곳밖에 없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국방부의 전직지원 사업과 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사업이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축소·재조정됨으로써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방부의 전직지원사업은 단순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지원센터 공동활용 필요
 - 최소 비용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합 및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방부의 국방취업지원센터: 서울 용산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8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의 연례적 부족

• 결산 현황

-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는 예산액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인 6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음

〈2006~2009년도 육군 장비유지 출장여비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6	-	13	-8	870	875	873	0	2	-
2007	795	0	-1	0	794	789	0	5	99.2
2008	710	0	-11	0	699	698	0	1	98.3
2009	818								

주: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자료: 국방부, 2009.6.

• 주요 쟁점

- 사적 부담으로 부족한 정비출장비 충당

- 현장 정비의 출장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어 상당수의 하급간부들이 출장 경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사례 : 2군지사의 의정부-창원간 1회 출장시 1인당 1만 5,000원을 일괄지급하나 실제 경비는 9만 5,000원이 발생

• 시정의견

- 2010년도 예산편성시 3억원 증액 필요

- 육군의 비현실적인 출장여비 편성은 하급간부의 사적부담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정비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0년도 예산편성시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함.
- 특히, 예산부족의 심각성과 정비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5군과 2군지사의 ‘이동정비감독’ 출장여비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배정이 요구됨.
 - 2006~2008년 실제 소요 대비 출장여비 예산의 배정률은 1군지사, 3군지사, 5군지사, 2군지사 순으로 낮음.
 - 출장지역 범위는 5군(대전 이남 지역)이 2·1·3 군지사 보다 2배 가까이 넓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종열 분석관(788-4639)

9 시뮬레이터사업의 중소방산업체 차별

• 결산현황

□ 2008년도 항공 시뮬레이터 4개 사업에 474억원이 지출되었음.

- 시뮬레이터사업은 실전 훈련을 대신하는 헬기조종사 양성 및 실전적인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조종훈련용임.

〈200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항공 시뮬레이터사업 지출액〉

(단위: 억원)

UH-60	LYNX	P-3C	T-50	계
281	11	63	119	474

자료: 방위사업청, 2009.6.

• 주요 쟁점

□ 업체별 방산원가 보상의 차별 적용

- 방위사업청은 유사한 기능의 군수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담의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일반물자로 지정하여 원가보상을 일반 노무비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시뮬레이터에는 일반물자로 지정해놓고도 방산물자 원가를 적용하여 일반 노무비의 3배를 지불하였음.
 - 방산원가 보상이란 방산물자 개발비용을 일반노무비의 3배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부작용

- 도담시스템즈와 KAI에 대한 차별적 방산원가 적용은 방산업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도담시스템즈의 경우는 2004년 1월에 국방부의 구두약속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전제로 회사자금을 투자하여 자체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동 사업을 승계한 방위사업청이 시뮬레이터를 일반물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함으로써 발생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문제임.
- 업체의 자발적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방위산업계의 기술개발 연구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방위사업청의 ‘업체주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과 배치됨.

• 시정의견

□ 중소방산업체에 대한 차별대우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가 필요함.

- 방위사업청은 도담시스템즈의 UH-60과 LYNX 시뮬레이터에도 방산원가를 적용함.
- 위 조치가 불가능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KAI의 P-3C와 T-50 시뮬레이터에 대한 방산원가 적용을 취소하고 이미 과다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며 그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문중열 분석관(788-4639)

10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중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별회계 포함 필요

• 결산 현황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최근 5년간 총사업비는 육군 7,356억원, 해군 283억원, 공군 882억원, 국직 6,919억원으로 총 1조 5,440억원임
-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최근 5년간 총 기부재산은 4조 4,138억원, 총 양여재산은 3조 8,299억원임

• 주요 쟁점

- 경상운영비에 속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우선순위가 떨어져 예산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필요
 -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별사업별로만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투명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의한 방식과 기부 대 양여에 의한 방식은 사업목적에 의한 구분이 어려워 사업 추진방식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고, 기부 대 양여로 인한 불필요한 시설규모 증대

• 제도개선 사항

-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예산체계 안에 편입 필요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통합 필요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까지 고려하여 세입과 세출을 포괄적으로 계리 필요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의한 이전과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이전 모두 개별사업별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 추진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

[담당] 이환성 팀장(788-3780)

외교통상통일

① 외교통상부 수입대체경비 과소계상 및 목적 외 사용

• 결산 현황

- 수입대체경비¹⁾ 중 세입 예산액 1,393억원, 수납액 1,730억원 (수납률 124.1%)
 - 영사서비스수수료 수납률 213.3%, 여권발급수수료 수납률 104.1%
- 수입대체경비 중 세출 예산액 784억원, 집행액 1,041억원 (집행률 133%)
 - 초과수입을 활용하여 전자여권발급시스템구축 사업 등에 약 263억원을 초과지출

• 주요 쟁점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의 목적 외 사용
 - 초과지출 집행액 중 약 60억원 가량을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지출 사용가능 경비 외로 사용
 - 시행령 제24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가능한 용도 외인 인건비 및 국외여비 등에 사용
 - 수입대체경비사업비를 이용감액하여 타 사업(‘재외공관 행정지원인력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 이후 수입대체경비사업의 부족경비는 초과지출로 충당
 - 여권발급사업에서 26억원을 이용감액한 후, 동 사업에 67억원의 초과지출액을 사용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은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부터 사용하여 9월까지 약 85억원을 사용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여 과다한 초과수입 발생
 - 최근 초과수납률은 2007년 32.2%, 2008년 24.1%이며 최근 5년간(2004~2008) 합계 기준으로는 32.6%
 - 초과수납을 발생시켜 이를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초과지출 할 경우 이는 국회의 사전적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며 예산안 편성 시의 부처별 지출한도에서도 벗어남

• 시정의견

-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사용가능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초과수입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반기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 필요
-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타 사업에 이·전용하지 않도록 시정 필요
-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연례적이며 의도적인 초과수납액 발생을 방지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79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1)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초과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53조)

②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사업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2008년도 예산액은 26.6억원, 예산현액은 32.5억원이며 집행액은 21.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7%에 불과
 - 2006년도 집행률 74%, 2007년도 집행률 86%, 2009년도 7월 현재 집행률 53%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C)	불용률 (C/A)
2006	960	138	-	3,020	4,118	3,054	74%	61	43	4%
2007	2185	61	-	3,469	5,715	4,936	86%	152	627	11%
2008	2,658	152	-65	506	3,251	2,173	67%	246	832	26%
2009	2,288	246	-	-	2,534	1,340	53%	-	-	-

자료: 외교통상부, 2009.9

● 주요 쟁점

- 연례적인 예비비 과다 사용
 - 2006년 30억원, 2007년 35억원, 2008년 5억원 배정
- 예비비 배정에도 불구하고 연례적 집행률 저조
 - 예비비는 자체전용 등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
 -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배정받으면서도 과다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
 - 2008년의 경우 집행액이 당초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예비비를 5억원 배정

● 시정의견

- 예비비 사용이 필요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하에 적정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용 등 자체적으로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확한 소요산출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p560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③ 국제교류기금의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

• 결산 현황

-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교류기금의 2008년도 총운용계획액 : 833.4억원, 2009년도 총운용계획액 : 1조 1,248억원
- 2008년도 당초계획액 833.4억원 중 746.6억원 집행 (집행률 89.6%)
 - 사업비 지출 : 당초계획액 554.5억원 중 558.9억원 집행 (집행률은 100.8%)

• 주요 쟁점

- 2008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 (296억원)
 - 2008년 매도가능증권에서 약 296억원의 평가손실(취득가액 대비) 발생
 - 4개 상품에서만 약 363억원의 평가손실 발생(-37.2%의 수익률)
 -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품 중 3개는 미국의 펀드에 간접 투자한 파생상품이며,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
- 자산운용지침에 위배된 자산운용
 - 「국제교류기금 자산운용지침」 제7-2조(자산배분 원칙)에서는 채권형 및 확정금리형 상품의 운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제교류재단은 약 32.6%만 이러한 상품(예금 및 순수 채권형 수익증권)에 투자
- 평가손실로 인한 기금적립금 잠식 발생 (170억원)
 -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은 2008년도에 170억원 가량 잠식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296억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금의 잠식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296억원의 평가손실은 2008년도 연초 기준 총 기금적립금(2,782억원)의 10.6%에 달함

• 시정의견

-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국제교류기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인 국제교류기여금이 주된 재원이므로, 외교통상부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및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국제교류재단 내부 담당자의 권한범위를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9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180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4 외교통상부 사업의 국제교류기금 이관 부적정

• 결산 현황

- 2008년도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의 국제교류기금 이관 현황은 총 21개 사업의 예산액 72억원이며 이중 6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9.0%
 - 국제교류기금 이관 사업은 2007년 1개사업(민간단체지원금) 6억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21개 사업 72억원, 2009년 31개 사업 151억원으로 증가 추세

• 주요 쟁점

- 실질적으로는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국제교류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원만 국제교류기금에서 마련하는 문제점
 - 2008년 및 2009년 이관사업 중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이 주관하는 사업은 총 5개 사업, 51.3억원
 - 국제교류기금으로의 이관은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할 수 있는 집행적 성격의 사업에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금에서 재원만 마련해주는 형태는 부적절함
-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신규로 집행
 - 국제교류기금은 계획변경을 통해 6개 사업 7.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 중 3개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수행하였음
 - 연도 중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편의적인 예산집행임

• 시정의견

- 국제교류기금으로의 사업 이관 적정 추진 필요
 -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국제교류재단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들만 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원만 국제교류기금에서 마련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형태의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
 - 외교통상부는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제교류기금을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전용, 예비비 배정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1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p593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5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 결산 현황

-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계획현액은 1조 2,746억원, 집행액은 2,312억원,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18.1%
-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53.9%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당초계획액	4,395	8,884	9,018	7,401	6,497	7,384	12,562	8,704	11,045	75,890
계획현액(A)	6,556	9,878	12,995	10,021	7,861	9,693	13,739	10,732	12,746	94,221
지출액(B)	5,307	5,544	6,495	7,708	4,763	6,744	4,710	7,157	2,312	50,740
집행률(B/A)	80.9	56.1	50.0	76.9	60.6	69.6	34.3	66.7	18.1	53.9

자료: 통일부, 2009.6

● 주요 쟁점

-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 2008년도 여유자금운용액 결산액은 1조 537억원으로 당초계획(1,165억원) 대비 9배(계획대비 904.5%)
 -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합계 기준으로 계획대비 여유자금운용 결산액은 약 5배(계획대비 493.0%)
 -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합계 기준으로 기금운용총액 대비 여유자금운용액 비중은 약 40%
 -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118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사용

• 결산 현황

- 2008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사업의 집행액은 650.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2.3억원 대비 집행률이 143.8%에 이룸
 - 이용증액 6.5억원, 예비비 192억원 등을 사용

〈2008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당초예산(A)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45,225	-35	654	19,206	65,050	65,041	143.8

자료: 통일부, 2009.5

• 주요 쟁점

-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이 부족하여 2007년 59억원, 2008년 19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
 - 정착금 소요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인원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과다

〈최근 6년간 예산편성 기준인원 및 실제 소요인원〉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편성 기준인원	1,029	1,680	1,240	1,680	1,680	2,750
정착지원금 소요인원	1,742	1,346	1,975	2,450	3,005	3,052

자료: 통일부, 2009.5

- 최근 여성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부족
 - 2008년 입국한 탈북자 중 78.2%가 여성
 - 여성과 관련된 의료 및 심리상담 분야의 특화된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불충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132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7 한글·한국어 보급 관련 사업의 분산 추진 및 지원 미흡

• 결산 현황

- 국내·외 한글·한국어 관련 사업은 5개 부처 18개 사업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403.3억원, 집행액은 431억원, 2009년도 예산액은 519.3억원
 - 이 중 해외 한글·한국어 보급기관은 3개 부처의 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과 관련된 2008년도 결산액은 283.2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 현황〉

(단위: 억원)

교육기관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해외문화원 (한국어교실)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설립현황	9개국 12개	6개국 17개	14개국 34개	115개국 2,097개
2008결산액	99.6	16.9	102.6	64.1
2009예산액	107.9	18.0	91.2	63.2

자료: 각 부처, 2009.5

• 주요 쟁점

-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분산
 -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각 기관의 설립취지, 성격, 운영현황 등이 상이
 - 교원연수, 교재개발 및 사용, 운영지원 등이 소관부처 별로 분산되어 비효과적
-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 통합 브랜드 구축 노력과 문제점
 - 국가브랜드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브랜드 통합(명칭 : ‘세종학당’) 노력이 추진 중이나, 부처 간 이견 및 소극적 태도로 내실을 기하지 못할 우려
- 부족한 지원 현황
 -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2008년 기준으로 1개 학교 당 지원액이 2,451\$으로, 일부 학교는 정규교사 없이 봉사자에 의존하거나 임대료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

• 시정의견

-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 통합 브랜드 구축의 내실화 필요
 - 성과에 급급한 추진보다는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이 내실화·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한글 및 한국어 보급(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합계
			2008		2009		2010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요구안	
교육 과학 기술부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출 연	○ 해외한국학지원사업 - 해외한국학 관련 강의교원 파견, 학 술연구, 학술회의 등 지원 - 해외한국학자 초청연구지원 및 국 제학술회의 개최 등 ○ 한국문화학당운영 : 외국인 학생의 '학문목적의 한국어 (KAP)' 능력 함양을 통하여 한국학 기초 연구능력 제고	1,378	1,369	1,561	1,203	1,561	4,500
	한 국 교 육 원 운 영 지 원	- 재외 한국교육원을 운영하여 한글·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을 보급	8,912	10,257	9,122	8,545	8,582	26,616
	해 외 초 중 등 학 교 한국 어 채택	-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을 채 택·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288	288	556	556	796	1,640
	교육과학기술부 합계		10,578	11,914	11,239	10,304	10,939	32,756
노동부	- 한국 산 업 인 력 공 단 지 원 - 외 국 인 고 용 관 리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관리사 업 중 한국어능력시험시행 -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구직자 선발기준 으로 활용	3,564	3,554	2,970	632	3,143	9,677
문화 체육 관광부	한 글 의 가 치 확 산	- 한글 관련 단체 지원 - 한글날 행사 등을 지원	-	-	1,100	- ¹⁾	1,600	2,700
	국 어 진 흥 기 반 조 성	- 국어 관련 단체 지원 - 국어정책 수립, 법령 제 개정, 국어 문화원 운영 등을 지원	-	-	-	296 ²⁾	1,400	1,400
	국 어 진 흥 연 구 및 개 발	- 국립국어원 지원 -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국어 정 보지 발간 및 홍보	2,456	2,418	1,612	516	990	5,058
	국 어 교 육 진 흥 및 여 건 조 성	- 국립국어원 지원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국어생활중 합상담실 운영 등	1,802	1,767	1,915	450	1,250	4,967
	다 문 화 사 회 의 한 국 어 교 육 진 흥	- 국립국어원 지원 -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양 성 프로그램 개발	650	580	580	92	-	1,230
	한 국 어 교 원 양 성 및 교 육 자 료 개 발	- 국립국어원 지원 - 국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한국어 전문 가 초청 및 파견 연수 등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국내외한글 교육)	1,783	1,686	1,800	806	1,468	5,051
	이 주 가	- 국립국어원 지원	-	-	500	205	1,000	1,500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합계
			2008		2009		2010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요구안	
	정 자녀 대상 방 문 학 습 자료 개 발	- 이주 가정 자녀 대상 방문 학습지 개발, 이주 가정 자녀 대상 동화책, 오디오 자료 개발, 부모용 지도서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 진단 평가, 성취 도 평가 및 관리 홈페이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합계		6,691	6,451	7,507	5,031	7,708	21,906
보건 복지 가족부	다 문 화 가족 방문교육 서 비 스 제공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 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지원	5,612	5,612	16,652 ³⁾	12,854	18,354 ³⁾	40,618 ³⁾
	다문화가 족 지 원 (한국어 교재보급)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를 인 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기관에 배포	50	50	50	50	172	272
	보건복지가족부 합계		5,662	5,662	16,702	12,904	18,526	40,890
외교 통상부	교 수 직 및 강좌 운 영 지 원	- 해외 한국학(한국어 포함) 교수직 설치 및 한국관련 강좌(한국어 강좌 포함) 운영 지원	4,514	4,745	4,262	2,077	4,399	13,175
	한 국 학 학술활동	-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연구, 출판 등 한국학 학문활동을 지원	2,614	4,084	2,637	1,505	3,225	8,476
	한 글 학 교지원	○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및 한국어 교육 유관단체 한글교재, 보조교재 지원 ○ 사이버한국어강좌 개발, 운영 (study.korean.net) - 재외동포 청소년 및 한글학교 교 사 등 - 학습교안, 학습 콘텐츠, 교사용 콘텐츠, 커뮤니티 제공	5,772	5,760	5,168	5,108	7,868	18,808
	한 글 학 교 사 육 성	-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지원 및 초청연수 -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 청 워크숍 -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655	652	1,150	782	1,150	2,955
	민 족 학 교지원	- 조선족학교, 민족학교의 민족교육 및 정체성유지를 위한 교육환경 조 성 지원 - PC 등 정보화 기자재, 책상 등 교 육기자재 지원	279	278	300	-	300	879
	외교통상부 합계		13,834	15,519	13,517	9,472	16,942	44,293
합 계			40,329	43,100	51,935	38,343	57,258	149,5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106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정무

1 국무총리실 예비비 과다 배정

• 결산 현황

- 2008년 국무총리실은 41.4억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았으나 36.6억원을 집행하고 4.6억원을 불용하여 예비비 불용률은 11.2%에 달함
 - 2006년의 예비비 불용률은 19.6%, 2007년의 예비비 불용률은 21.3%
 - 국무총리실은 예비비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설명
 - 2008년 예비비 배정 사유는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설치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소요경비임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예비비 사용 현황 : 2006~2008〉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출결정액(A)	지출액	불용액(B)	불용률(B/A)
2006	3,478	2,798	680	19.6
2007	1,320	1,039	281	21.3
2008	4,143	3,661	482	11.6

자료: 국무총리실, 2009.5

• 주요 쟁점

- 연례적으로 과다한 예비비가 배정된 측면이 있음
 - 최근 3년간(2006~2008) 12~21%에 달하는 예비비 불용률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사유로 불용
 - 예비비는 지출소요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요청하여야 함
 - 긴급한 소요 및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보충적 성격의 예비비 제도에 부합하지 못함
- 인원 증원, 조직 신설에 따른 예비비 배정
 - 2006년에는 국무총리비서실 인원 증원 소요비용으로 1억 500만원 배정, 2008년에는 직제개정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면서 3억 4,500만원 배정
 - 연례적으로 직제개편 및 인력증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함은 부적절

• 시정의견

- 예비비 요청 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직제개편 및 인력증원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14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② 고충관련 사업 예산 증가 불구 민원처리 부진

• 결산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고충처리 관련 주요사업비의 2008년도 예산액은 77억 2,100만원, 집행액은 67억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7%
 - 2006년은 예산액 38억 8,800만원, 집행액 67억 7,300만원, 집행률 174.2%
 - 2007년은 예산액 63억 3,100만원, 집행액 62억 700만원, 집행률 98.0%

〈최근 3년간 고충처리 관련 주요사업비 결산 현황 : 2006~2008〉

(단위: 백만원, %)

2006			2007			2008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888	6,773	174.2	6,331	6,207	98.0	7,721	6,768	87.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09.5

• 주요 쟁점

- 예산증가 불구 민원처리 부진
 - 고충처리 관련 예산은 3년(2006~2008)간 지속적으로 증가
 - 같은 기간 수용민원 중 미완료건(실제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건)의 비율은 2006년 15.9%, 2007년 21.2%, 2008년 18.0%로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추진 미흡
 - 2009년 현재 23개 중앙부처, 7개 지방자치단체, 12개 공공기관에서 개별적 콜센터 운영 중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표번호 110)가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있으며 비용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부진
 -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역은 5곳에 불과

• 시정의견

-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미완료건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Hub콜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부 콜센터의 통합 및 연계강화 방안 추진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34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③ 전직지원금 지급사업 예산액 과다 계상

• 결산 현황

-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 지급사업의 2008년도 결산 현황은, 예산액 29.1억원 중 21억원을 전용감액하여 예산현액은 8.1억원이며, 이 중 7.1억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4.3%에 불과
 - 전직지원금 지급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제대 후 취업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08년 전직지원금 지급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당초예산(A)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910	-2,100			810	708	24.3

자료: 국가보훈처, 2009.5

• 주요 쟁점

- 예산안 편성 시 지급인원 과다 계상
 - 2008년도 전직지원금 지급계획 인원은 970명이었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324명에 불과
 - 6개월 이내 취업률 계산 시 ‘전역과 동시취업률’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함
 - 2008년도 전역과 동시취업률은 35.6%
 - 당초 계획한 전역자수(1,100명)에 미달하는 885명이 실제로 전역

• 시정의견

- 전직지원금 지급예산 인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안 편성 필요
 - 최근 ‘전역과 동시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인원 추계 필요
 - 2005년 19.0%, 2006년 31.1%, 2007년 33.7%, 2008년 35.6%
 - 전역자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
- 전직지원금 실제 신청률을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 필요
 - 2008년도 전직지원금 신청률은 51.5%에 불과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20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④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사업, 보훈중앙병원건립사업 집행 부적정

• 결산 현황

-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사업의 2008년도 예산액은 170억원이나, 75.2억원을 이
용감액하고 집행액은 92.2억원에 머물러 집행률은 54.1%에 불과
-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의 2008년도 예산액은 433.9억원이나, 102억원을 전용감액,
131.2억원을 이용감액하고 집행액은 220.8억원에 머물러 집행률은 50.9%에 불과

〈2008년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사업, 보훈중앙병원건립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현충시설물 건립·관리	17,048	-	-	7,526	9,522	9,224	54.1
보훈중앙병원 건립	43,387	2,001	10,195	13,117	22,076	22,076	50.9

자료: 국가보훈처, 2009.5

• 주요 쟁점

- 사업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을 초래
 - 현충시설물 건립·관리사업의 경우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
지에 대한 사업승인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을 초래
 - 보훈중앙병원건립사업의 경우 건물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관련 계획변경
승인 지연으로 2008년 7월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 과도한 예산액을 이용·전용감액하여 타 용도로 사용
 - 현충시설물 건립·관리사업에서는 부족한 보훈급여금 충당을 위하여 이용감액(당초
예산액의 44%)
 - 보훈중앙병원건립사업에서도 부족한 보훈급여금 충당을 위하여 이용감액, 위탁진료
비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전용감액하였음(당초 예산액의 54%)
 - 보훈급여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당
초 예산안을 편성한 목적 및 국회의 승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

• 시정의견

- 사업추진 단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이·전용 및 불용을 방
지할 필요
- 과도한 예산을 이·전용하여 보훈급여금 등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는 집행관
행을 개선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p363, p372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5]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필요

• 결산 현황

- 2008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보상' 프로그램의 결산현황은, 예산액 2조 3,109억원, 집행액 2조 3,518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01.8%

<2008년도 보훈보상프로그램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당초예산(A)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09예산액
2,310,914	40,938	2,351,852	2,351,772	101.8	2,497,313

자료: 국가보훈처, 2009.5

• 주요 쟁점

□ 보훈체계의 개편 필요성

- 독립유공자, 전쟁희생자 외의 평시 복무 중 경미한 부상·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진정성 논란이 제기
- 현행 보상기준 및 내용은 1961년 이후 50여년간 골격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현실적인 보훈·보상 현황에 맞게 개편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일반공무원 및 장기복무의 대가인 보국수훈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의 적절성 문제 발생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체계 구축 필요성

- 신체희생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기본보상금 지급 필요성
- 보훈·보상자의 개별 여건에 맞는 실질적 소득 보장 필요성

• 제도개선 사항

□ 보훈대상 체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

- '국가유공자'는 국민생명·재산 보호업무 수행 중 희생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군 복무 중 단순사고 피해와 질환자 등
- 일반재해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보국수훈자 중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공무원 및 군무원은 제외)

□ 보상금 지급 및 복지지원에 있어 맞춤형 제도 강화 필요

- 백분위 장애평가 제도(10~100%)를 마련하여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 보충적 수당 등을 통해 개별 여건에 맞는 보상 실시
- 장애정도·연령·가족구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실시 필요

※ 국가보훈처는 동 내용을 위주로 하는 개편안 마련 및 관련 법령 입법추진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보훈처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6 신용보증 관련 기금결산 분석

• 결산 현황

-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계획대비 신용보증기금 133.9%, 기술신용보증기금 108.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8.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8.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2.5%의 실적을 보임

〈신용보증 관련 기금결산〉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계획(A)	실적(B)	차이(B-A)	계획
신용보증기금	30,733	41,138	10,405	57,897
기술신용보증기금	15,979	17,392	1,413	24,40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250	15,652	2,402	20,9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755	9,630	-125	11,16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405	1,440	35	2,470

• 주요쟁점

□ 정부출연금의 과소지급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계획보다 적게 지급
 - 신용보증기금에는 계획(1,000억원)보다 75억원 적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계획(1,700억원)보다 125억원 적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는 계획(70억원)보다 7억원 적게 지급
- 2008년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 과소지급은 부적절했음

□ 구상채권 회수 실적 저조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계획(2,900억원)보다 267억원 적은 2,633억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계획(1,900억원)보다 85억원 적은 1,815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은 계획(1,550억원)보다 443억원 적은 1,107억원을 각각 회수함
- 특수채권(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여 상각처리한 것)을 포함한 전체 구상채권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화된 구상채권 관리 체계구축, 회수업무의 외부 위탁, 채무감면제도 활용, 신용회복지원 등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 대위변제 예산과 실적의 대규모 편차 발생

- 계획 대비 대위변제 실적치의 편차규모가 신용보증기금은 631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57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3,094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915억원 발생
- 대위변제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할수록 기금의 건전성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실적치 간에 대규모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운용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기금의 재무건전성 관리

- 2008년 말의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신용보증기금 8.5배, 기술신용보증기금 7.3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6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9.3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3.6배(보증승인잔액 기준)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이 다소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승인잔액을 기준으로 운용배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증잔액 기준의 운용배수는 2008년 말에 3.1배(10,242억원 / 3,352억원)에 불과하므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의 적정성

- 2008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평균)은 신용보증기금 6.47%, 기술신용보증기금 6.2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7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0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26%임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을 안전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2009년 2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과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7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의 법령영문화사업 일원화필요

● 결산 현황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은 예산액(500백만원)의 90%인 450백만원을 집행하고, 50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감독원 내부조직으로 설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450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요 사업비(외부계약직원 채용, 해외투자홍보, 홈페이지 구축, 자료 영문화작업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8년			2009년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500	450	50	450

● 주요쟁점

□ 실집행률 저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지원받은 국고보조금(450백만원)의 40.0%(180백만원)만 지출하고, 200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0백만원은 불용처리하여 국고에 반납(2009. 3.16)하는 등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임

□ 법령영문화사업의 유사·중복

-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법령영문화사업은 금융관련 규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투자자 등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영문화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임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법령영문화사업은 금융감독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법령영문화사업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금융감독규정도 금융위원회가 제정·개정하고 관리함

● 시정의견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의 법령영문화사업 일원화 필요

-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법령영문화사업과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영문화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므로, 두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⑧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유사·중복

• 결산 현황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예산액(1,639백만원)과 역모기지론활성화사업으로부터 전용한 250백만원을 합한 1,889백만원을 집행함
 - 정부 이차보전을 통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0.5%p~1.0%p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 수행
 -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는 기준금리에 1.0%의 금리보전을 하고, 1,600만원초과 1,800만원 이하는 0.75%, 1,8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0.5%의 금리를 보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8년			2009년
	예산	집행액	불용액	예산
모기지론 이차보전	1,639	1,889	-	3,903

• 주요쟁점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유사·중복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소관)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어, 신청대상 및 주택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음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비교〉

구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좌 동
상여금	포함	제외
대출금리	5.1 ~ 5.8%	5.2%
사후관리	주택 추가 취득 및 소득증가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가산금리	사후조치 없음

주: 대출금리는 20년 만기 기준(2009. 5 현재)

• 시정의견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사업'의 통합방안 모색 필요
 -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등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자원배분 및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9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 과다

● 결산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과징금 세입징수액이 전체 세입징수액(2,533억 3,400만원)의 99.8%인 2,528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11억 3,100만원(미수납액 1,217억 2,200만원 : 납기미도래 970억 2,600만원 포함)임
 - 2008년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등 세입실적이 각각 96.3%, 51.9%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쟁점

- 과징금 부과 후 환급은 이의신청의 인정, 행정소송의 패소, 처분청의 직권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형태(일부취소 및 전부취소)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도의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환급 9건(8억 6,700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 35건(1,129억 9,800만원),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 1건(20억 9,700만원) 등 총 45건(1,159억 6,200만원)이 환급되었음(최초부과기준)

<2008년 환급 유형별 현황(최초부과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직권취소		기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9	867	35	112,998	1	2,097	-	-	45	115,9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도개선 사항

- 2008년의 경우 환급액(최초부과기준)이 수납액 대비 4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과징금부과 결정이나 부과기준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임
 - 협의가 없거나 부과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한 과징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정거래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최초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객관성·정확성을 제고하여 과징금 환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10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폴 수익률 저조

• 결산 현황

-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계획액 8조 9,568억원 대비 1조 5,488억원 감소한 7조 4,080억원임
 - 재산수입 5,350억원, 경상이전수입 502억원, 관유물매각대 7,721억원, 여유자금회수 6조 508억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
 - 기금채권 이자상환 745억원, 기금운영비 1,061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 3조 원, 출연금융기관 반환 9,814억원, 기금채권 원금상환 2조 3,000억원 등을 지출하였음

• 주요 쟁점

-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폴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간평잔기준으로 총 3,253억원에서 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0.1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신용보증기금 8.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56% 등 금융위원회의 다른 기금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수익률임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연기금투자폴 수익률이 낮은 원인은 연기금투자폴을 주식편입비율이 20% 이내인 채권·주식 혼합형 상품으로 운용함으로써 2008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 주식부문의 수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임
 - 실제 2008년 연기금투자폴 운용평잔 총 3,253억원 중 76.6%인 2,492억원이 혼합형 수익증권에 운용되었는데 2008년에는 -1.41%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음
 - 특히 혼합형 수익증권 중 429억원이 주식에 운용되었는데 1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27.43%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 제도개선 사항

-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연기금투자폴의 낮은 운용수익을 보면,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2008년과 같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으로 여유자금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9년 5월말 현재 총 600억원의 연기금투자폴을 대부분 채권(은행채)으로 운용하고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담당] 황선호 예산분석관(788-4624)

법제사범

① 기초지자체 중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과다

• 결산현황

□ 2008년도 법률서비스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08년도	법률구조(법무부)	국선번호인(대법원)	국선대리인(헌법재판소)
예산액	27,166	37,138	156
집행액	27,166	33,760	152

○ 동 서비스는 지검·지법 소재지에 한정되며 그 외지역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쟁점

□ 개업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105개로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45.7%임.

〈무변호사 지역현황〉

(단위: 개)

연번	지자체	개업변호사 0명 시·군·구
1	전라남도	17
2	경상북도	14
3	강원도	11
4	경상남도	9
5	부산광역시	9
6	전라북도	9
7	경기도	7
8	충청남도	7
9	충청북도	7
10	대전광역시	3
11	울산광역시	3
12	인천광역시	3
13	광주광역시	2
14	대구광역시	2
15	서울특별시	1
16	제주자치도	1
	합계	105

자료 : 참여연구소,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008. 12

- 전남 17개, 경북 14개, 강원 11개 순임.
-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가 산재해 있으나 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실정임.

〈무변호사 지역 지자체 주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추산〉

지역	인구(명)	형사판결 사건수	민사판결 사건수	소액 사건수 (07년도)	판결선고 법원 (소액사건관할)
		2008년 5월~6월 2개월간			
경산시	236,881	290 여건	410 여건	1,629 건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포천시	158,156	200 여건	180 여건	2,248 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서귀포시	153,800	200 여건	350 여건	1,661 건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장흥군	43,468	20 여건	50 여건	(파악안됨)	장흥지원
강진군	41,352	20 여건	10 여건	261 건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자료 : 참여연구소,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008.12

□ 개업변호사 이외의 법률서비스 공급자들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문제점

- 공익적차원에서 법률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소관 국선변호인제도와 법무부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은 지법·지검 소재지중심의 근무 한계성 때문에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서는 실효성이 희박
- 법무사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법률사무의 한계로 인해 송무등 법정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시·군·구 중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 시·군·구 중심의 변호사·공익법무관 제도

-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때, 현행과 같이 법원(국선변호인제도)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운영하기 보다는 시·군·구에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참여연구소,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연구용역, 2008.12
[담당] 부길환 분석관(788-4641)

② 검사보수의 연례적인 소급적용 문제

● 결산현황

- 2008년도 검사보수 예산집행액 : 1,231억원, 검사정원 : 1,752명, 현원 : 1,729명

〈2008년도 검사보수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예산집행액	검사정원	검사현원
검사보수	123,101	1,752	1,729

● 주요쟁점

□ 검사보수의 연례적인 소급적용 문제

- 검사보수는 여타 국가공무원 보수와 달리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연도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일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후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음

〈연도별 검사보수의 소급적용 실태〉

소급적용기간	동법 시행령 시행일	소급적용 지출총액
2004. 1. 1 ~ 2004. 2.24	부칙 <제188288호, 04. 2.25>	자료 미제출
2005. 1. 1 ~ 2005. 2.17	부칙 <제18703호, '05. 2.18>	
2006. 1. 1 ~ 2006. 2.19	부칙 <제19348호, '06. 2.20>	
2007. 1. 1 ~ 2007. 11.12	부칙 <제20371호, '07.11.13>	
2008. 1. 1 ~ 2008. 2.21	부칙 <제20636호, '08. 2.22>	

- 연도별 소급적용한 보수인상분에 대한 지출총액내역을 법무부에 자료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됨
 - 법무부는 “소급적용 지출 총액은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자료는 급여관리시스템으로 산출할 수 없으며, 수작업으로 자료를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출함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미제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곤란보다는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이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도상 확정예산의 수정절차는 추경뿐임.
- 또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 국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 등이 제개정시에 입법예고안을 10일내에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매년 [제19414호(2006. 3.29.일부개정) 및 제20371호(2007.11.13.일부개정)와 제20636호(2008. 2.22.일부개정)] 해당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하였음

□ 국회는 2008년도 결산 의결시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의 보수를 매년 소급적용한 사항을 반복하지 않을 것
- 「국회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할 것

□ 자료요구에 대한 미제출 문제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2)에 의하여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시스템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제출을 하였음.
- 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곤란보다는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국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있어 특별관리대상부처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감사보수관련 자료요구

-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도별 시행령 시행일은 아래표(비고)와 같은데 연도별 동시행령 적용일은 매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였음. (특히, 2007년도의 경우 시행일과 적용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할수 있음) 이에 대한 연도별 소급적용한 보수인상분에 대한 지출총액내역 제출

[담당] 부길환 분석관(788-4641)

2) 제10조 (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 결산현황

□ 2008년도 검찰청소관 예산액 : 6,974억원, 집행액 : 6,692억원(집행률 : 95.96%)

〈2008년도 검찰청소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별		2008년 예산	집행액
인건비		433,644	416,760
기본경비		44,504	40,522
주 요 사 업 비	검찰운영	33,255	31,933
	검찰운영정보화	31,837	31,763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66,305	58,182
	공판활동 및 형집행	19,761	22,235
	형사사법선진화	1,337	1,130
	검찰시설 조성	66,763	66,763
합 계		697,406	669,288

자료 : 법무부(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

● 주요쟁점

□ 검찰청 소관 예산의 법무부 예산으로의 통합·편성은 국가재정법에 저촉

- 「국가재정법」 제21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정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중앙관서 조직별로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청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
 - 이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편성한 근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침해가 우려되고, 정부조직법상 검찰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예산의 독립편성단위인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검찰청이 포함된다는 점³⁾과 동법 제31조⁴⁾에서 중앙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때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검찰청소관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책임을 당해 기관장에게 직접물을 수가 없게 되어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게 됨
- 따라서 국회에서의 여러차례 지적5)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은 여전히 법무부 예산에 통합·편성을 하고 있는데, 검찰청소관 예산은 경찰청 등 다른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앙관서별 예산편성 불일치 사례 분석」, 예산현안분석 제4호, 2004.12
 [담당] 부길환 분석관(788-4641)

3) 정부조직법 제27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형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4)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회법사위원회 「2009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④ 법조윤리협의회 심사결과 반영 미흡

● 결산현황

-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제88조6)에 따라 2007년 7월에 설립된 기구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사업의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7	-	-	-	-	100	100	100	-	-
2008	98	-	-	-	-	98	98	-	-
2009	125	-	-	-	-	-	-	-	-

자료: 법무부

● 주요쟁점

□ 법조윤리협회의 심사결과 반영 미흡

- 법조윤리협회에서는 법관,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로부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그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받고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 12에 규정된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로부터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됨.
 - 2008년에는 총 1,160명의 변호사가 수임한 총 44만 9,673건의 사건을 검토하여 약 6.1%에 불과한 71명에 대해 정밀심사를 하여 16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징계 개시 신청을 함.
 - 이는 소액사건 대부분이 정밀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인력과 예산이 검토대상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⁷⁾
-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10건의 수사의뢰 중 7건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고 3건이 수사 진행 중이며, 9건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4건만이 징계청구된 상태인데,
 - 이처럼 수사의뢰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시정의견**

- 국회는 향후 법조윤리협회의 검토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 할(제도개선 요구)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VI」.

[담당] 부길환 분석관(788-4641)

-
- 6) 「변호사법」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7)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을 제외하면 상근직원은 5명에 불과하다.

행정안전

① 소방인력 확충 미흡

• 결산현황

- 소방방재청의 본부 인건비는 2008년에 203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600만원이 전용감되고 20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800만원을 불용
 -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지방비로 지출(전체 소방공무원의 2008년도 인건비 규모는 약 1조 4,258억원)

〈소방방재청 본부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6	15,720	-	203	-	209	16,132	16,131	-	1
2007	18,636	-	-187	-	-	18,625	18,202	-	423
2008	20,323	-	-6	-	-	20,317	20,119	-	198
2009	20,407								

• 주요 쟁점

- 소방인력 2교대 근무 과다
 - 2008년 말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2만 4,905명 중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1만 7,361명,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7,544명으로 3교대 근무인력이 30%에 불과
 - 지역별로 3교대 근무율이 최대 78%, 최소 0%
- 지방교부세에 산정된 소방인력 미충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인건비를 산정할 때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된 인원만큼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08년 지방교부세에 반영된 소방인력 충원규모는 2,228명이었으나, 각 지자체가 실제로 충원한 인력은 당초 산정인원의 55%인 1,222명

〈200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소방인력 대비 실제 총원인원〉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산정인력	380	74	79	260	70	107	42	273	92	53	160	150	150	154	154
총원인력	48	38	78	235	80	78	0	87	76	53	146	30	0	164	109
총원율	13	51	99	91	114	73	0	32	83	100	91	20	0	107	59
3교대율	30	54	46	61	53	78	28	13	28	37	32	12	0	5	34

자료 : 소방방재청

□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인센티브 미흡

-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인건비 산정시 소방인력의 계획 대비 충원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지방교부세를 불교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함
-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할 때, ‘소방력 강화 노력도’라는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로 소방장비확충실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소방인력 확충 실적은 미포함

• 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할 때 ‘소방력 강화 노력도’라는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로 ‘소방인력의 계획대비 충원실적’을 포함하도록 시정을 요구(제도개선)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이행점검 미흡

• 결산 현황

-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 협의제도 운영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전용감하고 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7	200	-	-	-	200	183	-	17	92
2008	150	-	-15	-	135	131	-	4	87
2009	128	-	-	-	-	-	-	-	-

자료 : 소방방재청

• 주요 쟁점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나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통보한 재해영향 검토결과를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미흡
 - 2008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약을 거친 99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69건에 대하여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 이행 여부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점검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적사항이 실제로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4년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이행여부 점검실적〉

	2005	2006	2007	2008	계
협약처리건수	21	73	142	99	373
이행여부점검실적	-	-	25	69	94

자료 : 소방방재청

• 시정의견

-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을 거친 대부분의 행정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주의 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③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 사업의 추진 부적정

● 결산 현황

- 소방방재청의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 사업은 방재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와 신국가방재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국가방재기준재정비위원회’와 ‘국가재난관리선진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1억 6,900만원 중 1억원이 전용, 500만원이 이용되고 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900만원이 불용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08	169	-	-100	64	5	59	2.9

● 주요 쟁점

- 예산으로 확정된 신국가방재시스템 위원회 운영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았던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구축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동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이었으나, ‘국가방재기준재정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가재난관리선진화위원회’는 당초 1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5월에 구성하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6월에 폐지
 - 이처럼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 위원회 구성 한 달만에 폐지를 결정한 것은 사전에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재해상황 분석판단시스템 구축’사업에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

● 시정 의견

-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향후 위원회 신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가 확정되면 가능한 조속히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4 경찰청 연구개발비 집행부진

• 결산 현황

- 경찰청의 2008년도 전체 연구개발비(260목) 예산은 총 46억 6,200만원⁸⁾으로, 그 중 21억 900만원(45.2%)을 집행하고 12억 3,500만원(26.5%)이 이월되었으며, 13억 1,800만원(28.3%)을 불용
 - 최근 3년간 경찰청 연구개발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

〈최근 3개년간 경찰청 연구개발비(260)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06	2,476	1,517	363	596	61.3%
2007	2,971	1,570	1,100	301	52.8%
2008	4,662	2,109	1,235	1,261	45.2%

자료: 경찰청.

• 주요 쟁점

- 교통안전활동 및 교통전산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 과다
 - 연구개발비 불용의 대부분은 교통관리관실의 교통안전활동과 교통경찰전산화 사업에서 발생
 - 교통안전활동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15개 연구과제를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연구용역 발주는 13개 과제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3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10개 과제는 집행단계에서의 계획변경을 통해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과제 수행에 집행

〈2008년도 교통 관련 연구개발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교통안전활동	1,020(21.9)	280	229	511(40.5)	27.5
교통경찰전산화	1,130(24.2)	167	394	569(45.1)	14.8
전체 연구개발비	4,662(100.0)	2,109	1,235	1,261(100.0)	45.2

주 : 괄호 안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비중임.

자료: 경찰청.

□ 연구과제 계약체결시점 지연

- 연구개발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이월된 모든 과제가 7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구 및 개발기간이 부족하였기 때문

〈예산이 이월된 주요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 기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용역명	예산액	이월액	계약체결시점
전산운영경비	범죄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119	111	'08. 11. 3
범죄수사활동	마약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80	74	'08. 9. 1
전산운영경비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개발	192	192	'08. 8. 22
전산관리운영	공조·조회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204	101	'08. 8. 21
행정업무지원	2007년도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113	107	'08. 8. 18
교통안전활동	사이버교통안전교육관 구축	154	154	'08. 12
교통경찰전산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감리	538	371	'08. 10

자료: 경찰청.

• 시정 의견

- 향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 위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조기입찰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8) 당초 예산 45억 6,200만원에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수행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액수임.(경찰관 채용 표준면접질문지 개발 2,000만원, 피복 및 장비 희망품목시스템 개발 2,000만원, KMS 성능개선 6,000만원)

5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의 문제점

• 결산 현황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은 전국단위 '광역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차량·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일반회계의 교통안전시설정비 사업과 통합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여수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8년에는 4개 사업에 370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364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관련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7,383	899	-653	7,629	7,432		197	2,644
- 교통안전시설정비	6,534	899	-653	6,780	6,755		25	1,857
- 통합교통정보센터운영지원	849			849	677		172	78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9,700			29,700	29,017	683		29,700
-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28,700			28,700	28,017	683		
- 여수 교통정보센터 구축	1,000			1,000	1,000			

• 주요 쟁점

□ 교통정보체계의 부처 간 분산 추진

-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이 국토해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경찰청이 담당하는 도시교통정보체계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정보체계간의 시스템 호환성은 물론 2중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 경찰청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추진체계 분산

- ITS 사업의 성능기준설정, 규격화 및 설계, 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은 도로교통공단,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경찰청이, 각종 기반구축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

□ 예산편성의 문제점

- 일반회계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과 별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UTIS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

• 시정 의견

□ 향후 사업추진주체 및 예산편성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체계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⑥ 빈집털이 방지 시스템 집행 부적정

• 결산 현황

-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별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을 발굴하는 지방청전산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예산액 23억 7,700만원 중 3,900만원을 전용하고, 2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900만원을 불용
 - 빈집털이 방지시스템은 동 사업의 세사업으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2,400만원을 집행

〈2008년도 지방청전산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지방청전산운영	2,377	6	-39	-	2,344	2,292	3	49
-빈집털이방지시스템	25		-1		24	24		

• 주요 쟁점

- 가정집의 빈집털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가정집이 아닌 전남지방청 청사 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
 - 빈집털이 방지시스템은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집을 비웠을 때 발생하는 절도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이 설치된 가정집에 영상 전송용 카메라, 센서, 조명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7개 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한 가구당 32만원의 과도한 설치비가 소요되어 설치하려는 수요가 없었고, 용역경비업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 현재는 영상 전송용 카메라 등을 가정집이 아닌 전남지방청 청사 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
 - 이처럼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지방경찰청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방경찰청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였기 때문

• 시정의견

- 향후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화 실태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7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결산 현황

- 행정안전부 소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업은 재정계획, 예산관리, 계약관리, 자금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등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음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32.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43개 지자체의 예결산자료 등을 DB로 구축하는 데 28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음

• 주요 쟁점

□ 기존 시스템 재활용 미흡

- 구 행정자치부가 2003년에 수행한 ‘e-호조 추진을 위한 BPR/ISP수립’ 용역결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단계별로 e-호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원가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함
-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원을 과다하게 산정

□ 과업범위 결정 및 추가과업 인정 부적정

- 다른 정보화 사업과 중복되는 기능을 과업범위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중복되는 기능을 과업범위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만큼 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제안서에서 이미 추진하기로 되어있던 과업을 추가 과업내용으로 오인하여 중복기능 제외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4억 3,900만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음

□ 준공처리 부적정

- e-호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간 연계기능을 개발하려 하였는데, 감리업체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최종감리조치결과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처리하였음. 그 결과 연계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물품·용역 계약자료 계 16만 9,390 건을 e-호조에 또다시 입력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음

□ 예·결산 자료 중복 구축 등 지방재정통합 DB 구축방법 부적정

- 속초시 등 52개 지자체의 예산서('04~'06년), 결산서('04~'05년)자료가 DB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B를 중복 구축하여 1억 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15년간의 예결산 등 재정자료(1993~2007년)를 DB로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1998년 이전 예결산 자료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계열 분석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등 활용실적이 미미할 우려가 있음

□ 사업비 산정 부적정

- 행정안전부는 DB를 구축하는 작업 소요 공수를 아무런 근거 없이 과다 산정한 하였고,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결과, 구 정보통신부가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금액 19억 9,900만원보다 9억 5,200만원이 많은 29억 5,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e-호조 내부통제기능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를 제외하고는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서로 겸할 수 없으나, 2008년 12월 말 현재 전체 e-호조 사용자 3만 7,863명 중 1,841명(5%)에게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1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권한을 부여
- 사업담당자가 사업부서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금수시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자금배정담당자가 사업부서장의 승인 여부를 확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배정
- 지출업무담당자가 시·군·구 금고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명세서’의 출력물을 전자파일로 저장하여 수정할 수 있어 위변조가 가능

□ e-호조로의 자산자료 전환 추진 부적정

- 기존 복식부회계시스템의 자산자료를 e-호조로 전환하면서 2007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되지 않은 자산자료를 전환하도록 하여 출납이 폐쇄된 후의 자료를 다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기존 복식부회계시스템의 자산자료가 공유재산시스템에 있는 자료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자산자료의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을 종결함으로써 자료전환비용 5억 7,400만원을 낭비

• 시정 의견

- 향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e-호조의 내부통제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주의요구)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⑧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 실적행실적 부진

• 현황

-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 2008년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마무리(5개 사업)와 새 정부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BPR/ISP 및 인터넷 망분리 사업 등을 추진
 - 2008년도 예산현액 1,437억 6,5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전문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

〈2008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44,965	-1,200	143,765	143,765	-	-

자료: 행정안전부

• 주요쟁점

- 전자정부 전문기관의 연례적인 실적행실적 부진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문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에 예산현액 대비 전액 출연(집행률 100%), 정보사회진흥원은 출연받은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상당부분의 이월액 발생
 - 실적행률이 연차적으로 감소 : 2006년 80.5%, 2007년 78.9%, 2008년 69.2%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당초 계획의 재검토, 기추진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마무리사업으로 이월규모가 커졌다고 설명

〈최근 3개년간 전자정부지원 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행정안전부			정보사회진흥원		
	예산현액	집행액(교부액)	집행률	실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2006	282,213	282,213	100%	227,344	54,869	80.5%
2007	287,700	287,700	100%	227,266	60,434	78.9%
2008	143,765	143,765	100%	99,421	44,344	69.2%

자료: 행정안전부

- 정보화 사업의 특성 상 사업 집행이 한번 지연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됨.
 - 예산배정 및 입찰 시기를 앞당기고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각각의 단계마다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2009.8.

9 항공마일리지 사용 미흡

• 항공마일리지 현황

□ 최근 3년간(2006~2008) 정부부처의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은 1.3%

- 적립마일리지 1억 7,633만 마일, 활용마일리지 229만 마일, 미활용마일리지 1억 7,404만 마일, 적립인원 28,271명

〈최근 3년간 정부부처 항공마일리지 활용현황(2006~2008)〉

(단위: 마일, %)

적립마일리지	활용마일리지	미활용마일리지	적립인원	마일리지활용률
176,332,099	2,287,434	174,043,531	28,271	1.3

자료: 각 부처, 2009.6

• 주요 쟁점

□ 실제 관리되고 있는 마일리지 가 GTR(정부항공운송의뢰 :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실적에 근거하여 추정한 값 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

- 최근 3년간(2006~2008) GTR실적에 근거하여 추정한 적립마일리지 값은 8억 8,568만 마일로(현금환산추정치 : 약 240억원), 각 부처 자료를 취한한 마일리지(1억 7,633만 마일)는 이의 20% 수준
- 공무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마일리지 활용 저조

- 각 부처 자료에 의한 마일리지 활용률은 1.3% 수준이며, GTR에 근거하여 추정한 적립마일리지 대비 각 부처의 마일리지 활용률은 0.26%에 불과
-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48%인 24개 기관에서 활용실적이 전혀 없음

• 시정의견

□ 항공마일리지 관리 강화 필요

- 현재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에 의하여 출장자 본인이 'e-사람'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다수의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적극적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필요

-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확대를 위한 여비지급 절차 개선 검토 및 마일리지 사용가능성 확대를 위한 항공사와의 협의 검토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IV」, p.249

[담당] 김민재 예산분석관(788-4642)

1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

• 결산 현황

- 사업기간은 2003~2012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42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계획
 -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908억4,500만원의 예산 중 908억4,600만원이 집행되어 100%의 집행률을 보임

• 주요 쟁점

- 2007년 대비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49.9%, 부상자수는 52.2%가 증가
 - 이러한 증가현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증가정도 로만 원인 파악
 - 2007~2008년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의 증가율이 6.7%(8,429개소→8,999개소)임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수의 증가가 어린이 교통사고건수와 부상자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의 속도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 속도제한의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주정차 금지의 경우 주변지역의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체 주정차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호응도가 낮은 경우가 많음

• 제도개선 사항

-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급격히 증가한데 대해서 다각적인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 등의 적합성 및 보강요인 등에 대한 검토 요구
 - 속도제한과 주정차 위반 등 관련규제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속도제한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자각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요구
 - 미국 등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운행방향도로상에 점멸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신호체계 설치
- 주정차금지 구역설치시 대체주차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제도적인 절차 마련 필요

[담당] 고성철 사업평가관(788-4750)

II U-Korea 선도사업의 유사사업간 중복투자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결산 현황

- U-Korea 선도사업은 'U-City 구축 기반조성사업,'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U-Korea 선도사업 중 'U-City 구축 기반조성사업'의 최근 2년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7	2008
예산	4,700	10,360
전용	-	89

- 주: 1. 세부사업인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조직개편 이전 (구)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8년까지의 예산은 지식경제부에서 집행하였고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이므로 결산현황 집계에서 제외함
2. 전용내역은 U-City 구축기반 조성사업 과제추진을 위해 절감분 8,900만원을 집행한 것임

● 주요 쟁점

-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개연성이 있음
 - 정부가 꼭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지, 수요가 충분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음
 - 국토해양부의 U-City 건설사업, 지식경제부의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이 U-Korea 선도사업과 사업의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추진 시 부처간 긴밀한 조정과 연계 필요

● 제도개선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등의 건설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City 건설 사업 이외의 유비쿼터스 기술 및 U-City 사업들 간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큰 틀에서 전체 유비쿼터스 기술 및 U-City 관련사업 간 조정체계 구축 필요
 - 「유비쿼터스도시 등의 건설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담당] 여차민 사업평가관(788-4751)

12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사업실적 제고 필요

• 결산 현황

-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은 어린이에게 빈발하는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예방법 등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06	11,700	4,000	7,700
2007	11,500	11,500	-
2008	11,500	11,500	-

자료: 경찰청

• 주요 쟁점

- 대전시 교통체험교육센터는 총공사비 343억원으로 2005년 착공, 2007년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06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가 감소되면서 사업추진이 2년 이상 지연
 - 국고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이후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시 예상되었던 사업효과의 달성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경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대전시 교통체험교육센터가 2009년 현재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와 당초 기획하였던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이 38억5,000만원 추가되는 바, 동 금액은 총 공사비의 11.2%를 상회하는 금액이며, 그 외에도 완공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활용도(편익)의 감소효과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제도개선 사항

- 교통안전체험시설 건립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 제고 필요
 - 보조사업 계획시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담당] 정유진 사업평가관(788-4752)

집필진 명단

□ 기획·조정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송병철 (경제예산분석팀장)

조영철 (산업예산분석팀장)

천우정 (행정예산분석팀장)

□ 집 필

담당 분야	성 명
제1부 총량 분석	정상훈
제2부 중점 분석	
1. 국회예산차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오세일
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실태분석	한정수
3.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실태분석	문종열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오세일
5. 경상경비사업비 예산절감 및 활용 실태분석	오세일
6.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분석	김민재
7.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김민재
8.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흡사업 분석	오세일
9. 결산 성과정보 분석	남궁인철
10.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제 민
11. 기금 수익률 분석	정금희
12.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분석	서세욱
13.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서세욱
1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유인규
15. 재정융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황선호
16.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황선호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분석	김경수
18. 특별교부세 지역별 자원배분 내역 분석	김경수
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석	김경수
20.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분석	김경수
21. 유가환급금 분석	정지은
22. 공기업 외화부채 분석	이은경
23. 공기업 지분증권 분석	이은경

담당 분야	성 명
제3부 쟁점사업 분석	
<기획재정>	서세옥, 유인규, 황선호
<지식경제>	전용수, 이화실, 허가형, 윤성식
<국토해양>	양성선, 한정수, 안태훈, 박홍엽
<농림수산식품>	변재연, 박홍엽
<교육과학기술>	장은덕, 전용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이형진
<보건복지가족>	김대철, 김성은, 강상규, 이현정
<환경노동>	강상규, 이진우, 박애린
<여성>	강상규
<국방>	문종열, 이환성
<외교통상통일>	김민재
<정무>	김민재, 유인규, 황선호
<법제사법>	부길환
<행정안전>	오세일, 김경수, 김민재 여차민, 고성철,, 정유진

□ 편집 및 지원

전중인(경제예산분석팀)
 인정은(경제예산분석팀)
 정선미(사회예산분석팀)
 구윤모(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이재량(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엄상미(행정예산분석팀)
 박미현(산업예산분석팀)
 장진규(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이정민(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조혜정(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발 간 일 2009년 9월 14일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디자인 여백(02·2672·1535)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 (TEL 02·788·377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27-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